일제의 일본군성노예범죄와 조선인강제련행진상규명 문헌자료집

사회과학출판사
주체106(2017)

일제의 일본군성노예범죄와 조선인강제련행진상규명 문헌자료집

사회과학출판사
주체106(2017)

차 례

부록

머 리 말

일본제국주의는 지난날 우리 나라를 불법강점하고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씌운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과거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죄악들가운데서도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것은 840만여명의 청장년들을 징병, 징용으로 끌고가 노예로동에 혹사시키고 20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에게 성노예생활을 강요한것이다.

장구한 인류전쟁사의 갈피에도 일제침략군과 같이 수많은 녀성들을 성노예로 전장에 강제로 끌고다니면서 추악한짓을 일삼은 패륜패덕의 군대, 악한의 군대는 일찌기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대형의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부정해나서는 일본정부의 파렴치한 행위는 오늘날 그 절정을 이루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일본의 반동적지배층은 저들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도리여 미화분식하고 정당화하며 그것을 영영 묻어버리려고 분별없이 책동하고있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1권 23페지)

특히 일본반동들은 2015년 12월 남조선괴뢰역적패당과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한 《협상》놀음을 벌려놓고 일본군성노예문제의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을 떠들어댔다.

이것은 옛 조상들의 수법그대로 범죄의 사실을 교묘하게 가리우고 세상사람들을 기만하며 죄악의 책임을 한사코 부정해나서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더우기 남조선의 많은 시민단체들과 인민들의 노력에 의해

얼마전 부산에 있는 일본총령사관앞에 일본군성노예범죄를 온 세상에 낱낱이 고발하는 성노예소녀상이 세워진데 대해 일본반동들이 온갖 멸시적인 폭언을 내뱉으며 성노예상을 당장 없애라고 호통치는가 하면 지어 수상 아베까지 나서서 저들이 이미 《합의》에 따라 돈을 냈으니 남조선도 《합의》를 리행하라고 떠벌인것은 전체 조선민족을 격분시키고있으며 세계 진보적언론의 비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일본반동들은 그 어떤 기만과 회유, 압력과 오그랑수를 써도 과거에 저지른 만고의 강제련행범죄와 성노예범죄의 력사를 절대로 덮어버릴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명심하여야 한다.

이 도서는 과거 일제가 감행한 강제련행범죄와 일본군성노예범죄의 진상을 낱낱이 까밝혀 세계에 일본의 철면피성과 과거죄행을 거부함으로써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 일본반동들의 재침책동을 폭로하며 앞으로 죄악에 찬 일본의 침략사에 대한 연구를 보다 더욱 심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반일의식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목적밑에 편집되였다.

도서에서는 지난 시기 국제회의와 《로동신문》을 통하여 발표된 여러건의 자료들을 내용별, 시기별로 종합체계화하였다.

Ⅰ. 일제의 일본군성노예범죄

1. 조선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 문제대책위원회 고소장

(《로동신문》 1992년 9월 2일부)

최근 일본에서는 과거 일제가 조선녀성들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 녀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강제련행하여다가 《황군》의 성노예로 만든 잔악무도한 범죄행위가 폭로되여 세상사람들의 경악과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일본군성노예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인류력사와 전쟁사에서 있어본적이 없었던 가장 비렬한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이다. 일본군성노예로 끌려갔던 녀성들이 《황군》으로부터 성유린을 당하면서 받은 온갖 수치와 모욕은 인간임을 자부하고 인륜도덕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수수방관할수 없는 비인도적인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당국은 아직도 구일본군에 의하여 감행된 과거의 죄과에 대하여 성근하게 반성하지 않으려 하고있다.

력사에서 교훈을 찾으려 하지 않는것은 사실에 있어서 과거의 죄과를 되풀이하겠다는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로부터 조선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는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 국제기구들, 모든 나라 정부들과 사회단체, 조직들이

일제의 과거죄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으려는 일본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응당한 주목을 돌리고 우리의 행성에서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같은 비인도주의적악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동으로 대처해나가기 위해 이 고소장을 발표한다.

1) 1920년대부터 《황군》내에 보급된 일본군성노예제도

인류력사와 더불어 지배계급들에 의한 침략전쟁은 부단히 계속되였으나 그 어느 전쟁사에서도 녀성들을 전쟁마당에 끌고다니면서 성노예로 삼은 일은 동서고금에 없었다.

《정신대》의 명목밑에 강제련행의 방법으로 수많은 녀성들을 성노예로 만드는것과 같은 악행은 오직 대륙침략에 피눈이 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일제의 《황군》만이 자행할수 있었던 범죄였다.

자료에 의하면 일제는 란잡한 성행위때문에 성병이 만연되였던 1918년의 씨비리파병의 후과로부터 장기적인 침략전쟁수행에서 성병에 의한 전투력감소를 막기 위하여서는 일본군성노예제도를 내와야 하겠다는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일제는 1920년대부터 《황군》내에 일본군《위안소》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1929년에 일본군성노예로 끌려갔던 리경생녀성의 증언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그는 《일제놈들은 조선녀성들을 성노예로 끌어간것이 마치도 중일전쟁이후부터인것처럼 변명하는데 내가 겪은 처참한 운명을 놓고보아도 그것은 1920년대부터였다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한다》고 하면서 《나의 고향은 함경북도 어랑군이다. …내가 12살때인 1929년 8월 어느날 밤이였다. 칼을 차고 장총을 멘 일본경찰놈들이 구장놈을 앞세우고 불쑥 지주집마당에 들어섰다. 놈들은 지주

놈에게 눈짓을 하며 고개를 끄떡이였다.

그러더니 다짜고짜로 내가 자는 사랑채에 뛰여들었다. 놈들의 거센 손아귀에 목덜미를 잡힌 나는 얼이 쑥 빠져나간채 대문밖으로 끌려나와 짐짝처럼 화물자동차에 실리였다. 불의에 당하는 일이여서 나는 소리도 치지 못했고 울지도 못하였다. 먼지구름을 일으키며 마을을 빠져 도망치는 자동차적재함우에서 허우적이던 나는 앞쪽에 무엇인가 서로 엉켜있는것을 가려볼수 있었다. 그것은 짐짝이 아니라 내또래의 처녀애들이였다. 그들 역시 강제랍치된 10대의 소녀들이였다.》고 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나를 포함하여 4명의 소녀들이 또다시 바깥도 내다볼수 없는 유개차에 실려 경상남도 창원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른아침이였다.

거기에는 20여명의 조선인소녀들이 이미 끌려와있었다. …나는 8명의 내또래들과 함께 또 짐차에 실려 철조망을 높이 친 비밀공장에 실려갔다. …비밀화학공장 같았다. …여기서 10대의 소녀들이 일본놈들의 성노리개로 되였다.》고 증언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륙침략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황군》내에서 일본군성노예를 없어서는 안될 하나의 《군수품》으로 리용하는것을 제도화하였다.

이에 대하여서는 일본군성노예로 끌려갔던 김대일녀성이 《나는 일제가 대륙침략에 열을 올리던 1934년부터 일본군이 〈정예부대〉로 자처하던 12사단의 성노예로서 중국땅 곳곳에 끌려다녔다.》고 증언하고있는데서 명백히 알수 있다.

한 일본사람도 《1932년에 상해사변을 계기로 〈황군〉에 의한 강간사건이 빈발했기때문에 부참모장이였던 오까무라 야스지는 각 병단에 성노예들을 두었다.》(《오까무라 야스지대장자료》)고 증언하였다.

《황군》병사들은 중일전쟁으로 중국대륙을 강점한 후 점령지마다에서 부녀자들을 닥치는대로 강간하고 륜간하고는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죽여버리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일본군성노예의 수요를 보장할수 없었던 초기에 《황군》우두머리들은 《사기고무》라는 명목밑에 그와 같은 성폭행을 무제한하게 허용하였다.

그들은 부녀자들을 강간하는 병사만이 《강한 병사》로 될수 있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폭행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고 그 진상을 극력 은폐하였다.

이것은 《황군》안에 기강을 문란케 하고 성병을 만연시켰을뿐아니라 강점지역 주민들의 반일감정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당황한 《황군》우두머리들은 급기야 《위안소》들을 대대적으로 설치하고 그것을 군부가 직접 통제관리하고 운영하게 하였다.

그와 같은 사실은 1992년 1월 10일 쥬오대학의 한 교수가 발굴한 1938년 3월 4일부로 된 군부의 한 문건에 중국주둔 일본군에 성노예강제징집을 통찰할것을 지시한 내용과 주의사항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서 명백히 드러나고있다.(1992년 1월 11일 교도통신)

이리하여 일본군《위안소》는 1937년 중일전쟁발발후 전격적으로 확대되였으며 《황군》이 주둔한 모든 곳에 다 설치되게 되였고 그것은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 계속 유지되였다.

일본정부와 군부는 일본군성노예를 주로 조선녀성들로 충당하는것을 정책으로 삼았다.

그것은 이전 관동군 후방담당 참모였던 하라 젠시로가 《당시 륙군은 새로운 부대가 편성되여 동원명령을 받으면 필요한 성노예를 조선반도로부터 모으게 되여있었다.》고 증언한데서 뚜렷이 확증되고있다.

일제가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쓰게 된것은 식민지였던 조선에서 노예상태에 있었던 녀성들을 징발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 다량으로 끌어갈수 있었을뿐아니라 성병을 막고 군사비밀도 지킬수 있었으며 나아가서는 조선민족말살정책과 결부시켜 1석2조의 효과를 노릴수 있었기때문이였다.

그와 같은 사실은 일본녀성 스즈끼 유꼬가 일본당국자들은 《성노예를 시키면 녀성의 생식능력이 쇠퇴해진다는것을 빈틈없이 계산에 넣고있었던것이다. 이런 계산에 기초하여 생각해낸것이 식민지에서 처녀들을 끌어오자는것이였다. 그렇게 하면 당면하게 성

병을 막을수 있을뿐아니라 식민지민중에게서 민족성을 앗아내기도 매우 좋다는 음모적타산도 작용했을것이다. 바로 여기에 민족적차별이 있고 식민지지배의 본질이 있었다.》[《세까이》(일문) 1992년 9월호]고 까밝힌데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2) 일본군성노예문제는 인류력사에 특기할 반인륜적죄행

일본군부가 일본군성노예제도를 통하여 감행한 범죄는 그 추악성과 야만성에 있어서 나치스를 무색케 하는 비인간적인것이였다.

일제가 감행한 비인간적범죄는 무엇보다도 그들자신이 일본군성노예제도를 내오고 그것을 직접 통찰하고 관리운영한 장본인이며 주범이였다는데 있다.

1944년 5월 중국 광동주둔 나까야마경비대가 소속대원들에게 보낸 군인구락부 리용규정(제1구락부; 식당, 제2구락부; 《위안소》)은 《부대의 부관이 군인구락부의 업무를 감독할것, 부대소속 군의가 군인구락부의 위생에 관한 업무를 담임할것, 부대소속 주계관은 군인구락부의 경리에 관한 업무를 담임할것》(《제규정철, 나까야마대》 1944년)을 규정하면서 리용시간과 리용단가 등을 밝혀놓았다.

이것은 일본군성노예제도의 조직자, 관리운영자가 다름아닌 일본정부이며 군부였다는것을 론박할 여지없이 확증해주고있다.

일제가 감행한 비인간적범죄는 다음으로 수십만의 조선녀성들을 강제련행하거나 유괴하여다가 《황군》의 성노예로 제공했다는데 있다.

일본정부와 군부는 처음에는 직업알선 등 각종 명목으로 조선녀성들을 꾀여가지고 일본군성노예로 충당하였으나 점차 수요가 급증하게 되자 관권을 발동하여 20살안팎의 녀성들은 물론 애기

어머니들과 심지어는 12~13살 되는 미성년 국민학교 학생들까지 닥치는대로 잡아다가 《황군》의 성노예로 제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군성노예로 끌려갔던 김종심녀성은 자기 증언에서 《나는 집이 가난하였던탓으로 이곳저곳으로 팔리워다니면서 지주집 종살이를 하다가 해주에 이르렀다. 그러던 1941년도 다 가던 어느날 해주거리에 낯선 사나이들이 나타나서 인부모집을 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좋은 일자리에 넣어준다고 처녀애들만 꼬였다. 종살이로 지칠대로 지쳤던 나는 그만 그놈들의 속임수에 넘어갔다. 이렇게 속히워서 나는 성노예로서 남방의 최전선에까지 끌려다니면서 성노예생활을 강요당하게 되였다.》고 하였다.

강길순녀성은 《나는 어느날 구장놈을 앞세우고 마을에 나타난 칼을 차고 총을 멘 일본군대놈에게 다짜고짜로 끌리워 23명의 조선처녀들과 함께 부산까지 실려갔다. 거기에는 20살안팎의 조선녀성들이 수백명이나 모여있었다. 일본군장교놈들이 조선녀성들앞에 나서서 〈이제부터 일본군장교들에게 절대복종하라.〉고 을러메고 배에 오르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되여 나는 인도네시아로 끌려가 성노예생활을 강요당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일본정부와 군부가 일본군성노예를 강제련행한 사실은 일본군성노예련행을 담당집행했던 일본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도 명백해졌다.

이전 관동군 후방담당 참모는 《황군》의 성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징발할 계획밑에 비행기로 조선총독부에 날아들어 관권의 지원밑에 징집해갔다고 하였다.

일본군성노예강제련행책임자의 한사람이였던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는 한 신문기자와의 회견에서 조선녀성들을 《정신대》로 징집해다가 《황군》의 성노리개로 만든 일본정부의 죄행을 폭로하면서 《조선인강제련행은 당시 대일본로무보국회가 담당했다.》고 밝히고 자기는 야마구찌현 로무보국회 책임자로 있으면서 조선인 일본군성노예를 강제련행하여가는 노릇을 했다고 실토하고 자기가 직접 지휘하여 강제련행한 일본군성노예만도 1 000명이 넘는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후꾸오까에 있던 륙군서부군사령부가 각 현의 로무보국회들에 내려보낸 극비의 로무동원명령서에는《일본군위문, 조선인녀자모집, 신체건강한자 특히 성병검진을 진행할것》이라고 밝혀져있었다고 하면서 강제련행장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마을에 도착하면 우선 녀성 전원을 길가에 끌어냈다. 도망치면 목검으로 때려눕힌 다음 트럭에 실었다. 비명을 지르는 젊은 어머니를 때려 쓰러뜨리고 2～3살의 어린이가 울면서 따라오면 들어 내동댕이쳤다. 마을은 온통 수라장이 되군 하였다. 이렇게 모은 녀성들을 화물렬차와 배에 짐짝처럼 실어 서부군사령부에 보냈다.》

이러한 증언에서도 명백한바와 같이 일본정부와 군부는 처음부터 일본군성노예들에 대한 강제련행을 주동적으로 계획하고 조직했을뿐아니라 그 수요의 절대다수를 조선녀성들로 충당하였던것이다.

일본 정부와 군부가 일본군성노예로 강제련행한 녀성들의 수가 20만명에 달했다는것은 일본군성노예문제를 추적연구한 학자들의 일치한 견해이며 그의 90%이상이 조선녀성들이였다는것은 이미 공인된 사실이다.

1992년 8월 7일 유엔소수민족차별방지 및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 44차회의《현대형의 노예》문제토의시에 국제교육개발협회 대표는 자기의 연설에서《성노예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기간에 일본〈황군〉에 유괴, 강제련행되여 성노예생활을 강요당한 20만에 달하는 조선소녀들과 녀성들에 대한 문제이다.》라고 하였다.

이전 자민당의 장로였고 중의원 부의장까지 지낸바 있는 아라후네는 선거자들앞에서《조선인 성노예 14만 3 000명이 죽었다. 일본군인이 죽여버렸던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겐다이노 메》(일문) 1972년 4월]

당시 일본군부가 감행한 범죄행위는 또한 일본군성노예들에게 참기 어려운 노예생활을 강요한데 있다.

일본군부는 일본군성노예들에게 왜왕의 명의로《황군》에게 무조건 순종할것을 강요하였다.

심평옥녀성은 처음부터 《황군》장교들이 나타나 《너희들은 이제부터 군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그것이 왜왕을 위하여 본분을 다하는것임을 명심하라. 불복하는자들은 목을 친다고 고아댔다.》고 증언하였다.

리계월녀성은 《그때 놈들은 우리에게 〈대일본제국〉의 〈황군〉에게 봉사하는것은 왜왕에게 〈멸사봉공〉하는 길이라고 지껄여댔다.》고 하였다.

일본 《황군》은 일본군성노예들을 저들에게 순종시키기 위하여 반항하는 일본군성노예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하였다.

윤경애녀성의 증언에 의하면 한번은 한 처녀가 필사적으로 반항하자 놈들은 그를 다섯필의 말에 팔과 다리, 목을 매여 각을 뜯어죽이면서 《너희들도 〈황군〉에게 복종하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죽을것이다.》라고 고아댔다고 하였다.

또 리복녀녀성은 《옆방에 있는 30살가량의 녀성이 놈들이 무리지어 달려들어 릉욕하려는데 응하지 않자 야수들은 버릇을 톡톡히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일본군〈위안소〉에 있는 녀성들을 다 밖에 모이게 하고는 그 녀성을 끌어내다가 나무에 거꾸로 매달고는 굶주린 이리떼처럼 달려들어 총탁으로 마구 때리고 유방을 도려내고 음부에 총창까지 박아 죽였다. 그러면서 놈들은 너희들도 〈황군〉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여버린다고 고아댔다.》고 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한번은 제놈들이 붙잡아온 중국사람의 목을 잘라서 가마에 삶아내서는 머리는 높은 장대에 매달아놓아 모두가 보게 하고 삶은 물은 조선녀성들에게 강제로 퍼먹였다.》고 억이 막혀 말하였다.

《황군》은 저들의 수욕을 채우기 위하여서는 일본군성노예들에게 갖은 추행과 폭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정문복녀성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하루에 30~40명씩 무리지어 달려들었다. 밤에는 7~8명의 장교놈들을 상대해야 했다.》고 증언하였다.

리경생녀성은 윤가성을 가진 소녀는 줄을 지어 달려드는 일본놈들에게 갖은 고통을 다 당하다가 나중에는 질식된채 숨을 거두

었다고 증언하였다.

김대일녀성은 평양이 고향이라고 하는 《하나꼬》라는 녀성이 당장 해산하게 되였는데 《잔인한 다나까라는 놈이 그에게 달려들어 폭행하는 바람에 아이가 류산되고말았다. 다나까놈은 방바닥에 꽂아놓았던 칼을 뽑아 정신을 잃고 쓰러진 〈하나꼬〉의 배를 아래까지 쭉 갈라놓고》 태아를 란도질하는 악귀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김군숙녀성은 《어느날 일본놈들은 옆방에 있던 영자가 저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여 유방을 도려내고 왼팔을 잘라 마당가운데 내버렸다. 나는 그 광경을 목격하는 순간 까무라치고말았다. 그런데 놈들은 〈황군〉에게 불복하는자들을 죽이라는것이 왜왕의 뜻이다, 우리는 군인으로서 명령을 집행할뿐이라고 지껄였다.》고 증언하였다.

일본군성노예들의 대다수는 《황군》의 귀축같은 만행으로 무리죽음을 당하였다. 상해, 싱가포르 등지로 끌려다니며 일본군성노예생활을 강요당한 김대일녀성은 상해의 《위안소》에서 전염병이 돌아 수많은 조선인 일본군성노예환자들이 생겼을 때 놈들은 그곳에 불을 질렀으며 《싱가포르전투에서 패전한 잔악무도한 일제놈들은 그 분풀이로 성노예들에게 총을 마구 란사하였으며 구뎅이에 몰아넣고 수류탄을 터쳐 죽였다.》고 증언하였다.

리보부녀성은 자기가 있던 《일본군〈위안소〉에서만도 30여명중에 5명밖에 살아남지 못하였으니 소문도 없이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죽은 조선녀성들이 그 얼마나 많았겠는가.》고 하였다. 리현숙녀성은 《같이 끌려갔던 19명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6명밖에 없었는데 그나마도 귀국하려고 싱가포르의 해안가를 헤매이다가 다 죽고 2명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고 하였다. 또 정승영녀성은 《놈들은 한주일에 한번씩 검진을 하였는데 병에 걸린 녀성들은 감쪽같이 죽여버리군 하였다. 그리고 죽여버린 수자만큼 조선녀성들을 계속 끌어다가 보충하였다. 나와 함께 끌려갔던 26명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단 4명뿐이였다.》고 증언하였다.

참으로 《황군》이 연약한 조선녀성들을 상대로 하여 감행한 이 만행은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야

만적이며 반인륜적인 행위였다. 일본정부와 군부가 일본군성노예들에게 감행한 만행은 인도에 관한 범죄이다. 국제법적으로 볼때 《뉴른베르그국제군사재판소조례》와 《극동국제군사재판소조례》는 다같이 전쟁전 또는 전쟁중에 일반인에 대하여 감행한 살해나 절멸적인 대량살인, 노예화, 강제이동행위들을 인도에 관한 범죄로 규정하고있다.

실천적으로 이미 1948년에 네데를란드의 헤그군사법정에서 태평양전쟁시기 인도네시아를 강점한 일본군이 네데를란드녀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끌어간것과 관련하여 12명의 《황군》장교들에게 사형을 비롯한 유죄판결을 언도한 전례가 있다.

일본군부가 감행한 범죄행위는 1930년에 체결된 국제인권협약인 《강제로동협약》(일본도 이 협약에 가입)의 기본조항들을 유린한 인권행위이다.

국제적으로 《전쟁범죄와 인류를 반대하는 범죄에 시효를 적용하지 말데 대한 협약》에 따라 인도에 관한 범죄에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되여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최근에 이르러 유엔인권소위원회아래 현대형의 노예에 관한 실무그루빠회의들에서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한 일본정부의 범죄가 단죄되고 배상의 합법적근거가 론의되였다.

우리는 이상의 국제법적근거에 따라 일제가 일본군성노예들에게 감행한 인도적범죄는 시효에 관계없이 철저히 단죄되고 해당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한 현 일본정부의 태도는 인류에 대한 도전행위

일본군성노예문제가 벌써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지도 여러해가 지나갔다.

국교정상화를 위한 조일정부간 제1차회담때부터 우리 공화국정부대표단은 일본정부가 일본군성노예실태를 철저히 조사공포하

고 진심으로 사죄할데 대하여 요구하여왔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그때마다 그것은 민간매춘업자들이 한 소행이였다고 일축하면서 세상사람들을 속이려 하였다.

지난 1월 일본의 한 대학교수에 의하여 일본정부와 군부가 성노예문제를 직접 통찰했다는것을 립증하는 부인할수 없는 문건이 발굴됨으로써 일본정부당국은 마지 못해 일본군성노예문제에 과거 일본당국이 관여했음을 인정하고 정부가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것은 한갖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것이였다.

그렇기때문에 정부의 그와 같은 태도에 대하여 내외여론은 한결같이 비난해나섰다.

리성을 가진 일본사람들은 한결같이 일본군성노예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하여 부끄럽게 여기면서 정부가 옳바른 자세를 가질것을 요구하였다.

일본기자 혼다 쇼이찌는 《빈곤한 정신, 유괴, 살인, 체포, 강간, 륜간—성노예의 실태》라는 제목의 글에서 《일본정부가 이번에 보인 태도는 매번 해대는짓이기는 해도 아연실색할 파렴치하고 비렬한 반국제적인것이였다. 그처럼 공공연히 해댄짓을 물적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군의 관여를 부인하고 모른체 해버리려 했던것이다.

일본인은 이렇게 굉장한 거짓말을 해대고 파렴치성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놓을수 있는 민족이였단 말인가. 나도 이 민족에 속하는 일본인이란 말인가.》고 정부의 태도를 비난하면서 개탄하였다. [《아사히 져널》(일문) 1992년 3월 13일]

일본기자 다베 야스요시와 도이 도시구니는 《랭전이후의 세계에서 국가와 국민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자면 전쟁책임과 전후책임의 배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세계사의 흐름속에서 일본만이 언제까지 고립되여있겠는가.》고 반문하였다. [《아사히 져널》(일문) 1992년 1월 30일]

인권과 인도주의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의 모든 단체들도 일본정부의 부당한 태도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지난 5월 5일에 열린 유엔인권소 위원회아래 현대형의 노예

에 관한 실무그루빠 제17차회의에서 국제교육개발협회 대표는 일본이 1932년에 가입한 국제법인 《강제로동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인권을 일본자신이 유린한것이 바로 배상의 근거로 된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은 그 협약에 규정된 녀성강제로동금지, 어린이, 학생, 46살이상의 남성들에 대한 징집금지 등 대부분의 조항들을 위반하고 조선인남녀들에 대한 노예화를 강요한데 대하여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국내외의 여론과 정당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태평양전쟁이 끝난 때로부터 근 반세기가 되는 지난 7월 6일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발표한 정부의 《조사결과》는 다시한번 세상사람들의 경악과 분노를 자아냈을뿐이였다. 일본정부당국자는 《조사결과》에서 《정부의 관여가 있었다는것이 확인되였다.》고 말함으로써 마치도 정부나 군부가 제3자가 하는 일에 피동적으로 가담했을뿐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와 군부는 한짝이 되여 일본군성노예제도를 주동적으로 계획하고 책정하고 준비하고 집행한 주모자이며 주범이였다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여》와 같은 모호한 말로 얼버무리려는 행위는 사태의 진상을 고의적으로 외곡해보려는 시도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일본정부당국자는 또한 《조사결과》에서 일본군성노예강제련행에 대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강제련행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있다.

그러면서 일본정부당국자는 기자들의 거듭되는 질문에 대하여 《포괄적인 조사는 기술적으로 어렵고 불평등하다.》는 구실밑에 증언청취는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하였다.

일본군성노예강제련행책임자의 한사람이였던 요시다 세이지는 《성노예를 포함한 강제련행관계의 공식기록이나 관계문서는 전쟁이후 내무차관의 지령으로 모두 소각처분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당국이 증언청취를 거부하는것은

일본군성노예문제의 진상조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것으로서 세상사람들을 우롱하는 반국제적도전행위이다.

만일 일본이 국제사회앞에서 진실로 일본군성노예강제련행 진상을 밝히려 한다면 증언청취를 거부할 아무런 리유와 구실도 없다.

일본에는 아직도 일본군성노예문제에 관여했던 수많은 증견자들이 살아있으며 그들중에는 자진하여 과거를 뉘우치고 스스로 증언에 나서고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증언청취를 거부하는것은 일본정부당국에 일본군성노예범죄의 진상을 솔직히 까밝히려는 의지가 없다는것을 보여줄따름이다.

일본정부당국자는 또한 기본조사대상으로 되여야 할 일본군성노예의 인원수는 밝히지도 않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당시의 성노예중에 일본국적이 제일 많았던것은 사실》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일본군성노예의 절대다수를 조선녀성들로 충당하였다는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잔꾀이거나 아니면 아직도 조선인일본군성노예를 《일본국적》으로 치부함으로써 진상을 외곡하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달리는 해석될수 없다.

보는바와 같이 일본정부의 《조사결과》란 고의적으로 진상을 외곡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것으로서 누구에게도 납득이 갈수 없는 극히 형식적인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일본정부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자마자 그것은 내외의 정계, 사회계, 언론계의 한결같은 비난의 대상으로 되였다.

무엇보다도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일본국내에서 정부의 그릇된 처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일본사회당의 녀성인권위원장 다께무라는 정부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미 공개된것에 약간 첨가한것에 불과한것이며 성실한 조사를 해왔다고는 도저히 말할수 없다.》고 하였다.(《마이니찌신붕》 1992년 7월 7일)

《아사히신붕》은 《정부는 어째서 〈관여〉와 같은 모호한 단어를 썼는가?》고 따지고 《문건들을 읽어보면 정부가 유곽을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였다는것이 명백하다. 정부는 어째서 이러한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려 하지 않는가.》고 정부를 추궁하였다.(1992년 7월 8일 교도통신)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왜 자료조사만 하고 청취조사를 하지 않는가?》고 반발하였으며 어느 한 편집위원회가 수집한 자료에도 《군대가 참가하여 강제적으로 징용하였다.》는 증언이 수없이 많다고 하였다.(《아사히신붕》 1992년 7월 7일)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은 《일본정부가 의도적으로 진상규명을 피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요미우리신붕》 1992년 7월 7일)

일본정부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세계적판도에서 일본정부의 반국제적인 처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인도네시아외무성은 1992년 7월 13일 성명에서 《인도네시아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기간에 일본군이 감행한 여러가지 인권침해에 관해 앞으로도 일본정부가 충분한 조사를 할것을 요구》(일본 NHK텔레비존방송 1992년 7월 13일)하였으며 필리핀새진보동맹 총비서 리디 알라한드로는 1992년 7월 8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 자기의 〈황군〉에 봉사하도록 성노예들을 강요한것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일본정부는 입에 침발린 사죄로 이 아시아녀성들이 겪은 고통을 배상할수 없다.》고 하였다.(마닐라발 1992년 7월 8일 신화통신)

네팔의 한 주간지는 《성범죄와 성노예》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제2차 세계대전시기 20만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을 성노예로 끌어다 군대와 일본관리들의 성노리개로 만들었던 사실이 드러나 동북아시아는 분노하고있다. 성노예문제는 일제가 감행한 범죄중에서 가장 큰 범죄이다. 오늘 문명한 일본인들은 수치를 금치 못하고있다. 일본당국은 2차대전시기 감행한 범죄인 낯을 붉힐 성범죄행위에 대해 인류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론평하였다.(네팔주간지 《나야 항끄》 1992년 7월 22일)

미국의 한 신문은 사설에서 일본은 일본군성노예에 대한 책임을 자발적으로 인정한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일본이 아시아에서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하려고 노력하여도 불신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일본정부는 추악한 과거에 대해 사죄하는것을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미국신문 《뉴욕 타임스》 1992년 7월 12일)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는 일본정부가 일본군성노예문제로 곤경에 처해있다고 하면서 일본군이 제2차 세계대전중 직접 《정신대》를 운영하였다는 부인할수 없는 증거물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강제로 녀성들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함으로써 이웃국가들은 물론 일본국내외 여러 계층으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고있다고 전하였다.(《미국의 소리방송》 1992년 7월 10일)

이딸리아의 한 방송은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하여 일본당국이 20만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을 강제련행하여 전대미문의 성유린행위를 감행하고도 저들의 범죄를 똑똑히 밝히려 하지 않고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계속 감추려 한다면 세계인민들이 용서치 않을것이라고 하였다.(이딸리아방송 《치따 아뻬르따》 1992년 7월 15일)

오스트리아의 한 신문은 《전쟁성노예에 대한 일본의 취급과 그 책임을 부인한것은 일본이 전쟁의 잔인성이 로출되는것을 매우 꺼려하고있다는 최근 실례로밖에 되지 않는다.》고 특보하였다.(오스트리아신문 《헤랄드 트리뷴》 1992년 7월 7일)

민주꽁고의 한 통신은 《과거 구일본침략군이 조선녀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감행한 범죄행위는 동서고금에도 찾아볼수 없는 잔악무도한 범죄행위이며 인류의 량심과 도의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행위이다. 일본정부는 조선인민에게 들씌운 불행과 함께 륜리, 례의,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으며 공화국정부에 응당 사죄하고 피해배상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민주꽁고 아자프통신 1992년 7월 20일)

보는바와 같이 세계는 일제가 조선녀성들을 비롯한 아시아녀성들에게 들씌운 비인간적인 만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려 하

지 않는 일본정부의 부당한 태도에 대하여 이구동성으로 비난과 경고를 내리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당국은 세계의 한결같은 비난을 외면하면서 구태의연한 태도로 과거의 죄과를 미화분식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하고있다.

일본정부의 이와 같은 태도는 인도주의를 귀중히 여기는 오늘의 국제사회에서는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반국제적인 도전행위로 된다.

오늘 일본정부당국에 일본군성노예문제를 비롯한 인도에 관한 범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국제사회앞에서 진심으로 사죄하도록 압력을 가하는것은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나서는 인류공동의 과제이다.

우리는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한 일본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더욱 합칠것을 세계의 정의와 량심에 호소한다.

1992년 9월 1일

평 양

2. 청진에서 감행한 일본군의 성노예범죄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로동신문》 주체88(1999)년 8월 24일부]

일본군성노예문제가 세상에 공개되고 그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울려퍼지기 시작한 때로부터 10년이 되여온다.

그 기간 일제의 성노예범죄는 일본군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계획되고 저질러진 인권유린죄라는것이 자료적으로 명백히 밝혀지고 많은 피해생존자들과 목격자, 가해당사자들의 증언에 의하여 여지없이 확증되였다.

간악한 전쟁범죄의 직접적인 조직자, 집행자로서의 일본정부의 책임을 립증하는 사실자료들과 증언자료들은 오늘도 계속 발굴되고있다.

최근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방진동에서는 조선강점 일본군이 설치운영한 《위안소》건물과 놈들에게 잔인하게 학살당한 성노예녀성의 무덤이 처음으로 발견되였다.

조선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는 조선에서 실시한 일제의 성노예범죄의 일단이 또다시 백일하에 드러난것과 관련하여 이 조사보고서를 발표한다.

1) 일본해군《위안소》의 설치경위

해방전 방진리 실태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방진동은 해방전에는 함경북도 경흥군 풍해면 방진리였다. 당시 방진리는 해변가의 전형적인 령세농어촌부락으로서 주민세대는 150호가량 있었다. 절대다수의 주민들은 쪽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와 미역채취 등으로 그날그날을 연명해나갔다. 방진리는 풍해면 소재지로서 1구, 2구, 3구로 나누어져있었는데 1구에는 경찰관주재소, 라진헌병분견대, 면사무소, 우편국이 있었고 2구에는 일본군《위안소》들인 《풍해루》와

《은월루》 그리고 성병검진소가 있었다. 또한 여기에는 《다이쇼》마루라는 화물선을 운영하던 니시무라와 가구업자인 아오야마 그리고 상인인 와따나베라는 일본인가족이 살고있었다. 3구에는 주로 해군장교들의 주택과 관련건물들이 있었다.

로씨야와 중국국경가까이에 위치하고있는 방진과 유진, 라진은 천연적인 항구로서 자연지리적으로 해군요새지로 리용할수 있는 매우 유리한 지대였다. 조선강점직후부터 이 지대에 군사전략상 큰 의의를 부여하여온 일제는 1938년 7월에 있은 장고봉사건을 계기로 대륙침략을 실현하기 위해 방진과 유진에 라진방면 일본해군특별근거지를 설치하고 수많은 병력을 집중배치하였다.

이 일대에 주둔한 대표적인 부대로서는 라진헌병대, 제1선박수송사령부, 선박통신대, 선박포병대, 제39륙상군부대, 관동군 보급감부, 대륙철도사령부(모리다 요시오 저 《조선의 종전기록》 안난도서점 1963년), 라진방면특별륙전대, 라진방면항만경비대, 라진방면통신대(《일본륙해군부대 요람》) 등이다.

일제는 라진앞에 있는 대초도, 소초도에 포대와 영구화점을 구축하고 방진항을 군항으로 전환시켜 경비정을 배비하였다.

놈들은 해군기지건설을 위하여 그 부근에 있던 주민가옥들을 허물고 조선사람들을 추방시켰으며 군용지대주변에 높이 4～5m로 울타리를 치고 철저히 봉쇄하였다.

일제는 포대와 병영, 경비정정박기지건설, 기지부근의 군용도로공사와 창고, 사택 등 부속건물건설에 린근의 많은 농어민들을 강제동원시켰다. 한편 대륙침략의 중요한 전략적공사로서 청라선(청진－라선)철도부설공사에 착공한 일제는 로반공사를 위해 전라도와 경상도지방의 사람들을 《보국대》로 징발하여 가혹한 노예로동을 강요하였다.

이 공사에 끌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추위로 생명을 잃었으며 폭발사고, 추락사고, 굴간락반사고로 중상을 당하거나 희생되였다. 일제는 중상자에 대한 치료대책 하나 세우지 않았으며 불구자는 쓸모가 없다고 함바에서 내쫒았다. 놈들은 죽은 사람들을 관도 없이 집단적으로 매장하였으며 그들의 사망통지서조차 고향에 보내지 않았다.

일제는 해군기지의 군사비밀보장과 관련하여 방진에 다른 지대에 비하여 경찰력량을 4~5배로 증강하였다. 라진경찰서 고등계 형사들은 방진에 정기적으로 출입하면서 일반주민들의 사상동향을 빠짐없이 장악하였다.

《풍해루》와 《은월루》의 설치경위

일제는 방진과 유진에 주둔하고있던 일본해군을 위하여 1930년대 중엽에 《풍해루》와 《은월루》라는 해군전용 《위안소》와 성병검진소를 설치하였다.

《위안소》를 설치한 곳은 주둔부대에서 약 1.5㎞ 떨어진 산골짜기(현재의 방진동 23인민반지대)였다.

당시 그곳에 살고있던 목격자 남구현(79살)은 일본군 《위안소》설치에 대하여 《〈풍해루〉는 1938년에 방진헌병분견대 대장과 해군부대 부대장의 지시와 감독밑에 이전 관동군소속 군속으로 복무하던자가 해군기지에서 건설자재를 공급받아 지었으며 〈은월루〉는 그보다 앞서 1930년대 중엽에 일본의 건설업체인 다께모또구미에 의하여 건설되였다.》고 증언하였다.

《은월루》는 건평이 약 200㎡정도의 단층목조건물로서 현관으로 들어가 오른쪽에는 식당과 취사장이 있고 왼쪽에는 접수 및 대기실과 성노예녀성들의 방들이 있었다.

일제는 군《위안소》들의 매 방에 성노예들을 1명씩 배치하였다. 한방의 크기는 대체로 2.3×1.8m정도로서 2명이 겨우 누울수 있게 되여있으며 방안에는 모포와 베개 등 침구류가 있었다.

현재 이 건물들은 내부구조는 얼마간 변경되였으나 외부는 기본적으로 그대로 보존되여있다.

2) 군《위안소》의 관리운영상황

《풍해루》와 《은월루》의 운영형식과 리용대상

《풍해루》와 《은월루》는 관동군소속 군속으로 복무하던자들이 경영하였다.

《풍해루》와 《은월루》에 대한 항시적인 감시와 통제는 라진헌병대 방진분견대가 하였는데 헌병들은 매일 군《위안소》건물주변을 정상적으로 순찰하면서 사민들이 접근하거나 성노예녀성들이 외출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하였다. 목격자 남구현은《당시 〈풍해루〉와 〈은월루〉건물이 있던 골짜기에는 6~7세대의 조선인농가가 산재해있었는데 놈들은 그 부근에 조선사람들이 어슬렁거리는 것을 보기만 하면 뭇매를 안기군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풍해루》와 《은월루》는 라진방면 일본해군특별근거지에 주둔하고있던 일본해군과 방진에 있던 일본헌병들이 전용으로 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목격자 신락천(69살)은 《해군기지에 주둔하고있던 놈들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일요일에 배를 타고 륙지에 상륙하여 〈풍해루〉와 〈은월루〉에 무리로 밀려들었는데 그때에는 요란한 군화소리로 하여 골짜기가 떠나갈듯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상륙전날에는 헌병분견대가 《풍해루》와 《은월루》일대를 사전에 철저히 순찰하고 봉쇄하였으며 사민들이 그 부근에 얼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였다.

검진정형

성노예녀성들에 대한 검진은 매주 화요일에 해군기지에 있는 일본군의가 직접 검진소에 와서 진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목격자 최구접(84살)은 《〈풍해루〉와 〈은월루〉의 녀성들은 매주 화요일마다 흰위생복에 흰고무장갑을 낀 일본군의의 인솔밑에 사람들의 눈길이 덜 미치는 정해진 오솔길을 따라 집체적으로 검진소로 가군 하였다.》고 말하였다.

검진은 주로 성병의 발병유무를 확인하는것으로서 극히 단순하였는데 검진대에 성노예를 눕혀놓고 음부안을 과망간산칼리움으로 세척해내는 방법으로 하였다.

일본군은 성병의 발병과 전파를 몹시 두려워한데로부터 병사들이 고무주머니를 사용하도록 엄격히 통제하였는바 패전말기에는 고무주머니가 부족하여 이미 쓴것을 세척하여 다시 사용하였으며 이 일은 성노예들에게 시켰다.

이 광경을 목격한 최구접은 《나는 빨래하러 개울에 나갔다가

자주 〈풍해루〉에 있던 녀자들이 그 무엇인가를 씻고있는 모습을 목격하군 하였다. 일본이 패망하면서 우리 집에서 얼마동안 같이 생활한 화자(하나꼬)라는 〈풍해루〉에 있던 녀성의 말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일본군이 녀자들을 대상할 때 리용하였던 고무주머니라는것이였다.》라고 증언하였다.

성병에 걸린 녀성에게는《606호》(노발제놀)주사를 놓거나 그것이 없을 때는 수은을 불태워 쏘이는 등 생명에 위험을 주는 치료방법도 꺼리낌없이 적용하였다.

성병에 걸린 녀성들은 격리시켰는데 그 표시로 출입문에 붙인 사진우에 빨간 딱지를 붙였다.

《위안소》리용질서

해군장교들과 병사들은 대오를 지어 《풍해루》와 《은월루》앞에 도착하여서는 접수에 가서 《입장권》과 고무주머니를 받아가지고 지정받은 호실에 들어가 성행위를 하였다.

일반적으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병사와 하사관들이,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는 장교들이 왔다가군 하였는데 일요일에는 《위안소》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부대로 돌아가는 장교들도 있었다.

상륙일에는 성노예녀성들이 하루 평균 30~40명의 군인들을 대상하여야 하였다. 5~10분 간격으로 련속 군인들이 교체되였다. 이 광경을 목격한 신락천은 《〈풍해루〉의 복도와 마당에는 해군바지를 풀어헤친 군인들이 초조한 기색으로 줄지어 서있었다. 놈들은 먼저 들어간놈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군화로 문을 걷어차기도 하였다. 제볼장을 보고 나오는자가 자기보다 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귀쌈을 쥐여박군 하였다. 방안에는 얼굴을 흰수건으로 가리운 녀성이 알몸으로 죽은듯이 누워있었다. 마치 죽은 송장을 련상케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성노예모집대상과 방법

성노예녀성들은 평균 15~20살안팎의 조선처녀들이였으며 대부분이 강원도를 비롯하여 남쪽에서 끌려온 녀성들이였다.

그들은 모두 헌병들에게 랍치를 당했거나 취직알선과 《녀자

근로정신대》, 돈벌이 등의 감언리설에 속히워 끌려온 조선녀성들이였다.

《풍해루》에는 약 25명, 《은월루》에는 20여명정도의 녀성들이 수용되여있었다.

그들은 《위안소》에 도착한 첫날부터 자기 이름을 빼앗기고 놈들이 지어준 일본이름 례하면 《하루꼬》, 《하나꼬》, 《요시꼬》, 《기요꼬》 등으로 불리웠으며 조선말을 못하고 외출과 서신거래도 금지되였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성노예녀성들은 해빛쪼이기를 하거나 앞에 흐르는 개울에서 어지러워진 고무주머니와 옷을 세탁하기 위해 밖에 나오는것이 고작이였다고 한다.

끌려올 때 입고온 옷은 회수당하고 간딴후꾸(당시의 원피스)와 하오리, 하까마를 입게 하였다.

그들에게는 하루 세끼 보리와 콩깨묵으로 지은 반사발의 밥과 소금국이 차례졌다. 《풍해루》와 《은월루》의 성노예녀성들에게 한달에 한번씩 유진에 있는 해군부대가 식량과 부식물, 고무주머니와 기타 비품을 달구지로 운반공급하였다.

적지 않은 녀성들이 모진 성폭행과 영양실조로 극도로 쇠약해졌다. 황달과 결핵에 걸린 녀성들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들은 앓아누워도 치료를 받지 못하였으며 앓는 몸으로 놈들의 수욕을 채워주어야 하였다.

목격자 김죽순(70살)은 《〈은월루〉안에서는 매일과 같이 군대들에게 구타당하는 녀성들의 애처로운 비명소리와 통곡소리가 그칠새없이 울려나오군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동물이하의 성노예생활에 더는 참을수 없어 남춘자(《미나미 하루꼬》)라는 녀성은 도주하려다가 헌병에게 체포되여 고문으로 반죽음을 당한 끝에 살해되였다. 그의 시체를 가마니에 싸서 향두막(죽은 시체를 운반하는 도구를 보관하는 곳)에 내버린것을 그곳에 살던 남구현을 비롯한 주민들이 발견하고 새벽에 헌병들의 눈을 피해 몰래 묻어주었는데 그 처녀의 무덤이 지금도 남아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시기 바다가에 자주 녀

성들의 시체가 나타나군 하였는데 이것은 일본군이 앓다가 죽거나 살해당한 성노예녀성들의 시체를 바다에 내던졌기때문이라고 한다.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이 림박한 시기에 일본해군놈들은 함선을 타고 일본으로 도주하였으며 버림을 받은 성노예녀성들의 일부는 그곳 마을사람들의 도움으로 일정한 기간 집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몸을 추세우고 고향으로 돌아갔으며 일부 녀성들은 돈 한푼 손에 쥐지 못한채 알거지모습으로 산지사방에 뿔뿔이 흩어졌다.

이에 대하여 목격자 최구접은《일본이 패망한 후 우리 집에는 〈풍해루〉에 있던 화자라는 녀성이 약 6개월동안 머물러있었다.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그의 모습은 실로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얼굴에는 병색이 돌고 몸에 걸치고있는것이란 색낡은 원피스뿐이였다. 그는 나에게 7년동안 치욕을 당하면서도 돈 한푼 손에 쥐여본적이 없었고 개만도 못한 취급만 당했다고 울분을 토하였다.》고 회상하였다.

3) 일본군《위안소》의 전형

청진시 청암구역 방진동에서의《풍해루》와《은월루》의 발견은 침략전쟁수행을 위해 일본군부대가 파견된 곳에는 그 어디에나 군《위안소》가 설치되여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금까지 조사발굴된 자료를 통하여 일본군《위안소》형태로서는;

첫째로, 군이 직접 경영한 군인군속전용《위안소》

둘째로, 형식상 민간업자가 경영하지만 군이 관리통제한 군인군속전용《위안소》

셋째로, 일반인도 리용하지만 군이 지정한《위안소》로서 군이 특별한 편의를 요구한《위안소》가 있었다고 보고있다.

《풍해루》와《은월루》는 철두철미 일본군에 의하여 설치되고

관리운영된 전형적인 군《위안소》이다.

당시 이 일대는 대륙침략을 겨냥한 일본군시설들이 비밀리에 건설되고 수많은 해군무력이 배치되여있던 군사요새지였다.

일제시기 방진은 지도에조차 표시되여있지 않았다.

때문에 일본군은 군《위안소》장소선택문제에 대하여 몹시 신경을 썼다.

일본군은 라진방면 일본해군특별근거지에 대한 비밀이 새여나가는것을 철저히 막기 위하여 방진에 주둔한 부대내에《위안소》를 설치하지 않고 부대위수구역을 벗어나 비교적 통행이 편리하고 주민이 적은 곳(현재의 방진동 23인민반)을 적지로 선택하였다.

일본군성노예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력사학자 김덕호박사는《방진은 청진과는 76km, 라진과는 20km 떨어진 위치에 놓여있으며 라진과 청진을 잇는 철도는 해방후에 완성된것으로서 교통조건은 매우 불리하였고 도시와의 왕래는 거의나 없었다.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반농반어로 겨우 생계나 유지하던 한적한 농어촌에 군〈위안소〉가 설치되게 된데는 이 지역이 일제의 대륙침략을 위한 교두보, 첨단작전지대로서 수많은 일본해군무력이 항시적으로 주둔해있었기때문이다.

일본군은 저들이 개시한 대의명분이 없는 침략전쟁, 승산이 없는 무모한 전쟁에 휴가제도도 없는 장병들을 못박아놓고 장기전에 대치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묘책 즉 성욕을 충족시켜주는 방법으로 군대를 관리통제하기 위하여 방진을 비롯한 주둔지역에 군부직영의 〈위안소〉를 설치하였던것이다.》고 론증하고있다.

방진에는 지금도 당시 일본해군장교용 주택, 군인지정구락부, 감시소와 같은 건물들과 시설물이 남아있다.

당시의 세대수가 불과 150호밖에 안되였던 한적한 농어촌마을에 경찰관이 15명이나 되는 주재소와 7~8명의 인원을 가진 헌병분견대가 있었고 고등계형사가 항시적으로 주둔해있은 사실은 일제가 방대한 해군무력과 시설이 배치되여있는 이 일대의 주민들을 철저히 감시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제반 사실은 일제가 실시한 성노예범죄가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본군이 점령한 중국과 동남아시아, 태평양상의 전선지대에서뿐만아니라 조선을 강점하고있던 일제침략군내에서도 감행되였다는것을 명백히 립증해주고있다.

4) 일본정부의 태도와 책임

일본군이 조선에 군《위안소》까지 설치하고 녀성들을 끌어다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들었어도 그 당시에 사회적물의가 일어나지 않았던것은 바로 우리 나라가 일본군의 군사적강점밑에 놓여있었기때문이였다. 최근에도 청진시 청암구역 방진동에서 일본군 《위안소》건물이 발견된데 이어 일제가 우리 나라에서 703명의 녀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끌어와 동남아시아각지의 일본군전선에 분산배치하였다는 사실을 기록한 《조선군사령부》의 문서가 공개되였다.

력사적사실은 바로 일본이 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조선인민앞에 천추에 용납 못할 인권유린죄를 저질렀다는것을 말해준다.

일본군성노예문제는 일본정부가 깊은 죄의식을 가지고 직접 책임지고 풀어야 할 국가적인 문제이며 법적인 배상문제로 처리되여야 할 문제이다. 지금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물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인권단체들 등 광범한 국제사회계가 일본에 법적책임을 추궁하고 국가적인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아직도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을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매춘행위를 한 사람들》이라고 모독하면서 민간인들로부터 모은 몇푼의 《위로금》을 일부 피해생존자들에게 찔러주는 방법으로 전쟁범죄의 책임을 무마시켜보려고 오그랑수를 쓰고있다.

도이칠란드를 비롯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전패국들은 물론 여러 전승국들까지도 자기들의 전시죄행을 국가적책임으로 인정하고 사죄, 배상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은 1900년대가 저물어가고있

는 이 시각까지도 피로 얼룩진 과거에 대해 성근하게 인정조차 하지 않고있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처사는 국제법적견지에서보나 인륜도덕적견지에서보나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이며 인류량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도전이다. 우리 인민은 구일본제국이 저지른 엄중한 죄과를 력사의 흑막속에 덮어버리고 또다시 반인륜적범죄의 길로 나가려는 일본정부의 그릇된 처사를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다. 일본정부가 침략과 범죄의 력사를 부정하고 책임회피적인 태도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세계인민들의 경악을 자아내는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의 반인륜적범죄에 대한 진상조사사업은 더욱 고조될것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이 저지른 죄과는 더욱더 커지고 그 책임은 무거워질것이다.

조선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일제의 성노예범죄를 폭로하는 력사적사실자료들을 계속 조사발굴하여 그 진상을 만천하에 고발할것이다.

조선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주체88(1999)년 8월 23일

3. 구일본군 조선주둔 라남제19사단에서 감행된 성노예범죄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로동신문》 주체91(2002)년 4월 20일부]

지금 국제사회계는 20세기 인류사를 최대의 집단강간행위로 더럽힌 일본이 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채 새 세기 두번째 해에 들어선데 대하여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과거 조선을 무력으로 비법강점한 일제가 전대미문의 식민지 군사파쑈통치를 실시하면서 일본군성노예제도를 조작하고 20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을 유인랍치하여 《황군》의 성노리개로 만들었으며 그 대부분을 잔인하게 학살하였다는것은 이미 세계가 공인하고있는 력사적사실이다.

조선에서의 일본군성노예제도에 대한 진상은 이미 피해생존자들과 목격자들의 증언 특히는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방진동에서 발굴된 《위안소》건물과 일본군에 의하여 잔인하게 학살된 성노예녀성의 무덤 등을 통하여 여지없이 확증되였으며 그 진상을 립증하는 력사적자료들과 증거물들이 세기를 이어 계속 발굴되고있다.

최근 함경북도 청진시 라남구역 풍곡동에서는 구일본군 조선주둔 라남제19사단이 관리운영하였던 《위안소》건물자리가 또다시 발견되여 우리 인민들을 경악케 하고있다.

조선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는 일제가 조선에서 감행한 성노예범죄를 립증하는 《위안소》건물이 또다시 발견된것과 관련하여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한다.

1) 구일본군 조선주둔 라남제19사단의 정체

함경북도 청진시 라남구역은 해방전에 함경북도의 소재지였다.

해방전에 라남에는 조선인민혁명군과 유격근거지를 《토벌》하

기 위하여 두만강과 압록강을 미친듯이 넘나들던 악명높은 일제의 조선주둔 라남제19사단이 둥지를 틀고있었다.

일제는 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자마자 조선군대를 완전히 해산하고 일본에서 침략군대를 점차적으로 끌어들여 라남제19사단과 경성제20사단을 편성하였으며 이 부대들을 통합하여 《조선군》을 조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1989년 일본에서 출판된 《조선군개요사》에는 《제19사단은 대정5(1916)년 5월부터 대정8(1919)년 2월까지의 사이에 완성되고 사단사령부를 라남에, 보병련대를 회령, 라남, 함흥에 두었으며 보병련대의 일부를 두만강연안에 분파하여 국경경비를 맡게 하고 공병련대를 회령에, 기마, 포병의 두 련대를 라남에 배치하였다.》고 기록되여있다.

라남제19사단은 조선강점기간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중국동북지방의 광활한 지역을 작전지대로 정하고 전략상 국경경비와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토벌》작전, 나아가서는 대쏘침략 및 방어작전을 기본으로 하였다. 특히 이 사단은 간도대토벌, 조선인민혁명군과 그 군사전략적거점인 유격근거지를 소멸하기 위한 《토벌》작전에 가담하여 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은 물론 무고한 인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반인륜적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조선군》사령관인 제19사단장 중장 다까시마 도모다께는 간도대토벌로 알려진 대학살때 《인민들의 폭동을 진압한다》는 구실밑에 1920년 10월초부터 12월사이에 이소바야시, 아즈마 두 소장들이 통솔하는 혼성부대 및 기무라지대를 간도성 훈춘현 극자가룡정촌에 파견하여 6 000여호의 살림집들을 파괴, 소각하고 3만여명의 무고한 조선인민을 가장 야수적인 방법으로 살해함으로써 말그대로 간도땅을 불바다, 피바다로 만들었다.

또한 1935년 4월에 룡정촌에 파견된 라남제19사단 이께다 류끼찌대좌가 통솔하는 간도림시파견대는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악착스러운 추격작전과 유격근거지에 대한 검질긴 《토벌》작전을 벌리면서 전대미문의 대학살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이처럼 당시 라남은 가장 잔인하고 포악무도한 일제침략군 조선주둔 제19사단 사령부를 비롯한 방대한 무력이 집중된 군사도시였다.

라남《위안소》의 설치경위

일제는 조선강점시기에 당시 라남시 풍골(현재 청진시 라남구역 풍곡동 18인민반부터 22인민반까지)에 《위안소》를 설치하였다.

풍골은 라남시내에서 3㎞정도 떨어진 소나무로 뒤덮인 산골짜기에 있다.

풍골입구에 들어서면 길이 약 50m의 도로가 놓여있는데 이 도로의 좌우에는 여러동의 《위안소》들과 진료소, 목욕탕, 장교용 2층짜리 《위안소》, 일본인경영자의 주택 등이 있었다.

일본군부는 조선주둔 라남제19사단편성당시부터 여기에 일본군을 대상으로 하는 유곽을 건설하게 하고 일본인업자가 그것을 운영하게 하였으며 1930년대 중엽부터 저들의 침략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이 골안에 장교 및 병사용《위안소》들과 진료소들을 갖춘 하나의 《위안소》부락을 형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목격자 김일영(74살, 평양시 만경대구역 거주)은 《나는 어릴 때 신문배달을 하면서 자주 풍골〈위안소〉부락에 드나들었다. 여기에는 수십동의 〈위안소〉가 있었는데 한동에 20～40여명씩 조선녀성들이 끌려와 치욕스러운 성노예생활을 강요당하였다.

〈위안소〉경영자로 현재 내 기억에 남아있는것은 기시가와라는 퇴역중위뿐이다.

해방후에 우리 집에는 서울에서 끌려왔던 안순자라는 녀성이 며칠 와있었다. 그는 풍골〈위안소〉에서의 생활이 인간이하의 성노예살이였다고 개탄하고있었다.》고 증언하였다.

풍곡동에는 현재도《위안소》와 목욕탕으로 쓰인 건물, 일본인경영자가 사용한 주택, 2층짜리로 보아지는 장교용《위안소》건물의 기초자리 등이 그대로 남아있다.

2) 일본군《위안소》의 관리운영상황

풍골《위안소》의 운영형식과 리용대상

이 《위안소》는 주로 일본군이 리용하였으며 대체로 일본인업자들이 군부의 승인을 받아 제각기 만들어 운영한것이였다.

이에 대하여 목격자 박창룡(75살, 함경북도 청진시 라남구역 거주)은 당시 부모들이 일본인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였다고 하면서 《그때 나는 너무도 배가 고파서 풍골에 자주 드나들며 음식찌꺼기를 주어먹군 하였다. 내가 자주 드나든 곳이 바로 오꾸무라라는 성을 가진 일본사람이 1937년경부터 운영하던 〈위안소〉였다. 여기에서는 대체로 20여명의 녀성들이 성노예생활을 강요당하였는데 조선녀성들이였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목격자 김옥순(87살, 함경북도 청진시 라남구역 거주)은 《꽃을 팔면서 근근히 살아가던 나는 한 녀인의 소개로 풍골의 중간지점에 꾸려진 일본사람이 경영하는 〈위안소〉에 들어가 청소부노릇을 하게 되였다. 그때 성노예와의 접촉은 일체 금지되여있었는데 〈위안소〉건물의 칸수로 보아 거기에는 대체로 40여명정도의 녀성들이 끌려와있었다고 추측되며 그 〈위안소〉가 이 골안에서 가장 큰것이였다.》고 증언하였다.

풍골《위안소》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경찰관파출소 순사들과 고등계형사들이 하였으며 일요일에는 헌병대가 동원되고 군인들이 보초를 서서 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목격자 박창룡은 《풍골입구에는 파출소가 설치되였고 4~5명정도의 순사들이 감시하였으며 헌병들이 말을 타고 하루에 3~4번정도 그 부근을 순찰하면서 엄격히 통제하였다.》고 하였다.

목격자 김옥순은 《내가 청소부노릇을 하던 〈위안소〉에서 일본군인들은 저들과 맞다들린 사람들이 얼굴만 쳐다보아도 마구 때리군 하였다. 그때 일본군대한테서 매맞은 후과로 지금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머리에도 상처자리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였다.

이 《위안소》는 보통날에는 일본의 민간인들도 리용하였으나 일요일만은 장교로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군대들만이 리용하였다.

《위안소》운영시간은 보통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였으며 일요일은 철야로 운영하였다.

이에 대하여 목격자 박창룡은 《풍골〈위안소〉에는 드문히 사민들도 드나들었지만 라남제19사단의 군대들이 거의나 전용으로 리

용하였다. 특히 일요일이면 군대들이 뻐스정류소처럼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당시 풍골《위안소》에서 성노예생활을 강요당하였던 녀성들은 평균 15~30살정도의 조선처녀들이며 그들 대부분이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등 남쪽에서 끌려온 녀성들이였다.

그들은 모두가 헌병에 랍치되거나 취직알선과 돈벌이 등 감언리설에 속아 끌려온 녀성들이였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풍골《위안소》에는 200명의 녀성들이 끌려와 치욕스러운 성노예생활을 강요당하였다고 한다.

《위안소》의 구조 및 리용질서

풍골에는 20여동의 《위안소》건물이 있었는데 대체로 산자집이였다.

오꾸무라가 경영한 《위안소》에는 20여명의 조선녀성들을 수용하고있었는데 현관으로 들어가 접수실이 있고 량쪽으로 복도가 놓여져있었으며 복도량쪽에 방들이 줄지어있는 량동식건물이였다.

목격자 김옥순이 청소부로 있던 《위안소》는 현관에 들어서면 접수실이 있고 복도 량쪽에 방들이 있었는데 풍골에서 제일 좋은 건물로서 주로 장교들만이 리용하였다.

또한 ㄱ자모양으로 된 단층목조건물의 《위안소》도 있었다.

이에 대하여 목격자 최효순(77살, 함경북도 청진시 라남구역 거주)은 1943년에 징병장을 받아 회령에 주둔하고있던 라남제19사단소속 제7489군부대 1소대 2분대에 끌려가 징병살이를 하게 되였다고 하면서 《나는 1944년 5월과 1945년 봄에 련락임무를 받고 풍골〈위안소〉에 직접 들어가보았다. 간판이름은 잘 생각나지 않으나 현관에 들어서니 접수실앞에 20명정도의 녀성들의 사진이 붙어있었고 그밑에 〈모모꼬〉, 〈하나꼬〉, 〈기꾸꼬〉 등 이름이 적혀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풍골《위안소》의 방크기는 2.5㎡였으며 성노예들에 대한 검진은 1주일에 한번씩 라남시내에 있던 륙군병원 군의들이 와서 하고 매독에 걸렸을 때에는 륙군병원에 후송하였다고 한다.

성노예들의 참상

풍골《위안소》에 끌려온 조선녀성들은 그야말로 노예나 다름이 없었다. 그들은 일체 조선말을 할수 없었고 외출도 금지되였으며 《위안소》규률에 복종하여 생활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본군의 성폭행에 의하여 살해되거나 치욕스러운 성노예생활에 못이겨 자살하는 녀성들도 적지 않았다.

목격자 박창룡은《풍골에 있던 녀성들가운데는 자기들의 치욕스러운 생활에 환멸을 느껴 자살하는 사람들도 자주 있었다.

어느날 나는 철길에서 갈기갈기 찢어진 성노예의 시체를 발견하고 전만방을 비롯한 5~6명의 동무들과 함께 주어다 가마니에 싸서 그 주변산속에 묻어준 일도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목격자 최효순은《내가 〈위안소〉에 갔을 때 〈모모꼬〉라는 녀성은 나에게 일본군대들이 달려들면 막 죽을 지경이라고 자기 속을 털어놓았다. 내가 1945년 봄에 두번째로 그곳에 갔을 때 일이다. 녀성의 울음소리가 들려와 그곳에 가보니 한 성노예녀성이 도주하려다가 그만 군대들에게 붙잡혀 되게 얻어맞고있는것이였다.》고 하였다.

3) 조선에서 실시된 일제의 성노예제도

일찌기 조선에서 극비밀리에 조작실시된 일제의 성노예제도는 일제의 대륙침략전쟁준비 및 수행과정에 더욱더 정책화되였다.

특히 조선을 군사전략상 대륙침략의 교두보로 삼은 일제는 강점초기부터 중국과 쏘련을 침략할 목적으로부터 조선에 방대한 무력을 끌어들임으로써 조선의 이르는 곳마다에는 수만명을 넘는 일본침략군이 주둔하게 되였다.

일제는 이미 1918년에 있은 씨비리침략전쟁기간에 장병들속에서 만연된 성병으로 전투력이 감소되여 쓴 참패를 당하였다.

이러한 심각한 교훈으로부터 일제는 새로 도발하는 침략전쟁에서 저들의 병력손실을 막고 점령지들에서 강간과 략탈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치안》을 유지하는것을 필수불가결의 문제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일제침략군은 제19사단의 수천명의 병력이 주둔하고있던 라남에도 병사들의 《사기제고》, 《성병방지》, 《치안유지》라는 구실밑에 일본군 《위안소》를 설치하였던것이다.

풍골《위안소》는 형식상 민간업자들에 의하여 운영되였지만 철저히 군부가 관리통제한 일본군 《위안소》였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분석해보면 당시 라남시내에도 이미 유곽이 존재하였지만 그 하나만으로는 수천명을 넘는 장병들의 성욕을 충족시킬수 없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지형상 풍골은 라남제19사단의 위수구역으로서 일반사민들이 가기 힘든 곳이였다.

특히 풍골《위안소》입구에 파출소를 설치하고 헌병들이 순찰을 강화하는 등 《위안소》부락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엄격히 진행한 사실은 일제가 이 지대에 상당한 정도로 신경을 도사리고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과거 일제에 의하여 일본군성노예로 끌려가기 전에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체험자 누총녀(72살, 평안남도 평성시 거주)는 《나는 1944년부터 해방될 때까지 평안남도 평원군 검산면에 있던 학교에서 호출장을 받은 마을처녀들 20여명과 함께 일본어는 물론 주사놓는 방법과 붕대감는 방법 등 간단한 처치법, 제식동작을 비롯한 군사훈련 특히는 남녀간에 성교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증언하였다.

제반 사실은 일제의 성노예제가 일제침략군의 발길이 미치기 시작한 조선에서부터 극비밀리에 실시되였으며 대륙침략수행과정에 더욱더 정책화되고 조직적으로 감행되였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4) 일본의 태도와 립장

일본은 전후 반세기가 지나고 새 세기에 들어와 두번째 해를 맞는 오늘 이 시각까지도 과거에 저지른 미증유의 집단강간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천인공노할 인권침해죄를 력사의 흑막속에 묻어버리려고 갖은 권모술수를 쓰고있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일본의 반동지배층들이 《국민기금》을 계속 고집하면서 일본군성노예사실을 완전히 삭제하고 침략전쟁을 미화분식한 력사교과서를 편찬하며 과거 일제에 의한 강제련행 및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의 일본입국을 가로막아나서는 등 과거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이미 거덜이 난 《랍치의혹》문제를 들고나와 우리를 함부로 걸고들고있는것이다. 특히 지난해(2001년)에 일본군성노예피해자 15명이 미국의 워싱톤련방지방법원에 일본당국의 공식사죄와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여 집단소송한데 대해 일본정부가 관할권과 면책특권 등을 구실로 기각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미국정부와 합세하여 이 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해 비렬하게 책동한 사실을 상기시키지 않을수 없다.

이것은 과거청산에 대한 현 일본정부의 그릇된 태도와 립장의 또 하나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

이러한 일본의 무분별한 행위의 리면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여 과거죄행을 덮어버리고 그 청산을 회피하며 나아가서 재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음흉한 기도가 숨겨져있다고밖에 달리 생각할수 없다.

지난해(2001년) 12월말에 네데를란드의 헤그에서 진행된 일본군성노예제를 재판하는 녀성국제전범법정최종판결식에서는 성노예범죄의 주범인 왜왕 히로히또와 범행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현 일본정부에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인정하고 철저히 사죄, 배상할것을 요구하는 판결문이 채택되였다.

일본이 지난날 조선인민에게 감행한 성노예범죄는 물론 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를 비롯한 모든 반인륜적범죄 역시 엄연하게 국가적 및 국제적범죄이므로 이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지는것은 국제법상요구이며 국제관례이다.

도덕적으로 남에게 해를 주었으면 그 잘못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는것이 도리이다.

이것을 무시하고 회피하는 나라는 국제적신뢰를 받을수 없다.

21세기는 정의와 진리, 지성과 도덕을 인류문명의 보편적기준

으로 삼는 세기이다.

새 세기에 들어선 오늘 일본이 진정으로 세상사람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사회의 한 성원으로 떳떳하게 살아나가기를 바란다면 하루빨리 과거청산에 대한 용단을 내려야 할것이다.

만일 일본당국이 오그랑수로 계속 시간을 끌면서 과거청산을 무한정 회피하려 한다면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인민들의 규탄의 목소리는 그만큼 더욱더 높아질것이다.

조선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일본의 과거범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며 세계 여러 나라의 진보적이며 량심적인 단체 및 인사들과 굳게 련대하여 일본의 과거청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것이다.

조선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주체91(2002)년 4월 18일 평양

4. 이전 일본군성노예 생존자 박영심의 피해실태와 관련한 진상 조사보고서

[《로동신문》 주체93(2004)년 1월 17일부]

우리 강토와 민족을 피바다에 잠그고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던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한 때로부터 60년이 되여온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오늘까지도 일본군성노예범죄와 강제련행범죄를 비롯하여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남긴 상처에서는 여전히 진한 피가 흐르고있다.

아래에 일제의 가장 악랄하고 추악한 일본군성노예범죄희생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장의 사진이 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이 사진의 주인공들은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44년 9월 일제에 의해 총폭탄이 우박치듯 쏟아지는 중국-먄마국경일대 최전선에까지 끌려가 일본군성노예생활을 강요당하다가 련합군에 포로된 조선녀성들이다.

사진에서 오른쪽끝에 고통스러운 얼굴로 힘겹게 서있는 임신한 녀성이 바로 현재 강서군에 살고있는 박영심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와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수많은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이 생존해있지만 박영심은 성노예시기의 생동한 사진자료가 남아있고 그가 성노예였다는것을 립증하는 당시의 문서들과 목격자들이 현존해있는것으로 하여 일본의 과거청산운동을 벌리고있는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있다.

조선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는 최근에 박영심이 일본군에 끌려다니며 성노예생활을 강요당한 중국의 남경과 운남 등지에 피해당사자를 포함한 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중국과 일본의 전후 배상문제연구자, 활동가들과 함께 그의 피해상황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하였다. 아래에 그와 관련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한다.

1) 일본군성노예로 끌려가게 된 경위

박영심은 1921년 12월 15일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가난한 탄부가정의 맏딸로 태여났다. 당시 일제의 학정아래 신음하던 조선의 로동자, 농민의 가정이 다 그러하였듯이 그의 가정도 그날그날을 풀죽으로 연명해가는 매우 빈곤한 살림을 하였다. 철도 들기 전에 어머니를 잃은 그는 어려운 집살림을 돕기 위해 14살 어린 나이에 양복점 심부름군으로 들어가게 되였다.

온갖 천대와 구박속에서 3년이 지난 1939년 8월 어느날 양복점에 한 일본인순사가 찾아왔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박영심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하루는 어깨에 별 2개를 달고 옆구리에 긴칼을 찬 왜놈순사

가 찾아와 돈벌이가 좋은 일자리가 있으니 함께 가자고 하면서 무작정 나를 끌고갔다. 그때 옥경이라는 22살난 처녀도 함께 끌려갔다. 순사에게 끌려 평양역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이미 20살안팎의 조선처녀들이 15명정도 모여있었다. 그들도 모두 나처럼 아무 내막도 모르고 속히워 끌려온 녀성들이였다.》

그들은 거기서 유개화차에 실려 일본군의 삼엄한 감시를 받으며 중국으로 끌려갔다.

일본군은 녀성들을 끌어가는동안 서로 말도 못하게 하고 변소에도 보내지 않으면서 그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엄하게 통제감시하였다. 박영심은 이렇게 죄인취급을 받으며 기차와 배, 자동차를 갈아타면서 중국 남경에 설치된 일본군《위안소》로 끌려갔다.

이때부터 그의 치욕스러운 일본군성노예생활이 시작되였다.

2) 남경에서의 일본군성노예생활

1937년 7월 로구교사건을 조작하고 중국을 침략한 일제는 그해 11월 상해를 점령한 후 상해파견군과 제10군으로 중지나방면군을 편성하고 남경으로 진격하였다.

12월 13일 남경을 포위점령한 일본군은 이때부터 2개월간에 걸쳐 무자비한 살륙전을 벌리면서 중국군포로들은 물론 일반주민들을 대량적으로 학살하고 부녀자들을 강간하는 등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일제는 이 시기 남경과 그 주변에서만도 수십만의 무고한 중국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는데 일제가 남경을 점령한 첫 한달동안에만도 부녀자들에 대한 강간사건이 2만여건이나 일어났다고 한다.

특히 녀성들에 대한 대량적이고 비인간적인 강간행위로 하여 병사들속에서 군기가 문란해지고 성병이 만연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바빠맞은 일본군부당국은 군《위안소》라는 《합법》적인 강간장소를 설치하여 병사들의 성욕을 만족시켜주는 방법으로 일본군

의 전투력과 치안을 유지하려고 꾀하였다. 일제는 1938년 2월 중지나방면군을 중지나파견군으로 개편하고 그 사령부를 남경시에 배치하였으며 상해와 남경전역에 20만의 대병력을 주둔시키는 한편 《위안소》들을 대대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현재까지 남경에서 발견된 《위안소》는 40여개에 달한다.

박영심이 끌려간 곳은 중지나파견군사령부로부터 불과 500m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된 순수 조선녀성들만 끌려와있는 《위안소》였는데 당시 자료에는 리제항《위안소》로 기입되여있다. 현재 시민들의 주택으로 리용되고있는 이 건물은 원래 양보경이라는 중국인이 경영하던 려관이였는데 남경을 점령한 일본군이 그것을 강제로 몰수하여 저들의 《위안소》로 만들었던것이다.

리제항《위안소》는 여러동의 2층짜리 벽돌집들로 이루어졌으며 박영심이 끌려간 곳은 2호동건물이였다. 조사한데 의하면 2호동은 건평이 2 200여㎡로서 당시로서는 비교적 큰 건물이였으며 여기에는 30여개의 방들이 있었다.

조사단은 당시 박영심이 성노예생활을 강요당한 2층 19호실에 들어가보았다. 박영심은 60여년전 바로 이 방에서 자신이 당하던 치욕에 대하여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위안소〉에 도착하자 놈들은 우리에게 일본기모노를 입히고 머리도 일본식으로 잘라버리고는 나에게 〈우따마루〉라는 일본이름을 달아주었다. 그리고는 우리들을 한사람씩 따로따로 방에 밀어넣었는데 얼마 지나서 왜놈군대가 방에 들어오더니 미친듯이 달려드는것이였다.

내가 몸부림치며 반항하자 그자는 짐승같은 소리를 지르며 마구 때리고 치다가 나중에는 군도를 목에 대고 죽여버리겠다고 날뛰였다. 그바람에 군도에 베여 목에서 선지피가 흘러 온몸을 적시였다.

우리는 이런 짐승같은 놈들을 하루에도 20~30명이나 치르어야 하였는데 조금이라도 반항하거나 공손하지 않게 대하면 놈들은 마구 폭행을 가하였으며 나중에는 머리끄뎅이를 잡고 질질 끌어다가 처벌방에 처넣군 하였다.》

박영심도 이 처벌방에 몇번이나 갇히웠는데 그가 있던 19호실의 맞은켠 옆방 웃층에 다락식으로 만든 처벌방은 지금도 옛날

그대로 남아있었다. 일본군은 성노예들을 여기에 끌어다가는 천정기둥에 매달아놓고 때리거나 밥도 주지 않고 며칠동안 캄캄한 방에 가두어두었다고 한다.

당시 《위안소》의 바로 뒤집에서 살면서 성노예들의 생활을 직접 보아온 목격자 침령(76살, 중국 강소성 남경시 리제항 거주)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나는 자주 우리 집 2층베란다에서 창문을 통해 성노예들의 방을 건너다보군 하였다. 일본군인들은 녀성들의 방에 들어오면 군도와 옷을 벗고는 녀성들에게 달려들군 하였다. 한번은 일본군인이 성노예를 마구 때리는것을 보았는데 그 녀성은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였다. 〈위안소〉에는 낮에는 대체로 병사들이 오고 밤에는 장교들이 왔는데 병사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다.

성노예들은 밖에 나오거나 창밖을 내다보지 못하였으며 일반 사민들은 절대로 〈위안소〉안에 들여보내지 않았다. 일본헌병들이 때때로 〈위안소〉에 나타나 그 운영정형을 알아보고 사민들을 단속하군 하였다.》

당시 《위안소》앞에서 잡화점을 경영하고있던 목격자 양수영(96살, 중국 강소성 남경시 리제항 거주)은 《〈위안소〉안에는 많은 조선녀성들이 끌려와있었다. 군인들은 낮에 이 주변에서 술을 마시며 돌아치다가는 〈위안소〉로 들어가군 하였다. 거기서 녀성들의 비명소리가 자주 들리군 하였는데 〈위안소〉에는 녀자들에게 벌을 주는 방이 있어 말을 듣지 않거나 새로 온 녀자들은 반드시 이 방에 가두어넣고 질을 들인다고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박영심은 남경에서 이런 비인간적인 일본군의 성노리개생활을 3년동안이나 강요당하였다.

3) 폭격속에서도 강요된 성노예생활

박영심이 성노예로 끌려다닌 로정은 그대로 일제의 침략전쟁 확대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1941년 12월 8일 진주만을 공격하고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제침략군은 침략열에 들떠 동남아시아로 계속 전선을 확대해나가면서 1942년 2월에 싱가포르를 함락하고 그해 3월에는 먄마의 양곤에 상륙하였다. 일제는 전선이 확대되자 성노예들에 대한 대대적인 남방이송을 조직하였는데 박영심도 바로 이 시기에 먄마로 끌려가게 된것이다. 이 시기 상해와 싱가포르를 거쳐 먄마의 양곤에 도착한 성노예들은 1 000여명에 달하였는데 일본군은 거기서 성노예들을 20～30명씩 조로 나누어 먄마각지의 일본군부대들에 배속시키였다. 박영심은 남경에서 함께 끌려간 조선녀성들과 함께 중국국경에서 얼마 멀지 않은 먄마의 라시오로 끌려갔다.

이곳에는 일제의 먄마방면군 제15군 제56사단의 경비본부가 있었다. 박영심은 여기서 잇가꾸로라는《위안소》에 들어가《와까하루》라는 일본이름으로 불리우면서 또다시 성노예생활을 강요당하였다.

이에 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라시오에서는 주로 보병과 땅크병들을 상대해야 하였다. 싸움마당에서 거칠어질대로 거칠어진 놈들이 술까지 처마시고 달려들 때의 고통이란 이루 말할수 없었다. 남방의 넓은나무잎우에 모포 한장을 깐 자그마한 방에서 하루종일 왜놈군대에 시달리다나면 저녁에는 일어나앉을 기운도 없었다. 그러나 저녁에는 저녁대로 또 장교놈들을 치르어야 하였는데 놈들은 조금만 제 비위에 맞지 않아도 머리끄뎅이를 잡아 흔들고 발로 걷어차군 하였다. 그때 나는 짐승보다 못한 자신의 처지가 한스럽고 고향생각, 부모생각이 간절하여 눈물만 흘리였다. 그렇다고 우리는 거기서 도망칠수도 마음대로 죽을수도 없는 신세였다.》

라시오에서 1년남짓 지나자 일본군은 다시 박영심을 비롯한 10여명의 성노예들을 먄마와 국경을 접하고있는 송산으로 끌어갔다. 송산에는 일제 먄마방면군 제15군 제56사단의 보병제113련대와 야포병제56련대 3대대가 중경에로의 물자수송을 차단하기 위하여 진지를 구축하고 주둔해있었다. 그러나 1944년 6월부터 운남원정군(중미련합군)이 송산을 포위하고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일본군은 100여일동안의 격전끝에 전멸하고말았다. 일본군은 여기 송

산의 깊은 산골짜기에까지 성노예들을 끌어다놓고 성《봉사》를 강요하였을뿐아니라 부상병들을 치료하고 군복세탁과 취사 등 온갖 잡다한 일까지 다 시켰다.

박영심은 그때 이미 임신된 상태에 있었다. 《위안소》를 리용하는 일본군인들은 피임기구를 사용하는것이 의무화되여있었지만 녀성들의 건강이나 위생문제같은것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수욕을 채우는데만 급급한 일본군인들에 의해 성노예들이 임신되는 일이 드문히 나타나군 하였던것이다.

박영심은 여기서 임신된 몸으로 병사들의 시중에 내몰리고 폭격에 쫓기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우의 사진이 바로 1944년 9월 송산을 점령한 련합군에 포로되여 찍히운 사진이다.

당시 만마주둔 미군병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던 신문인 《라운드 앞》(1944년 11월 30일부)은 이 사진에 대해 소개하면서 《4명의 조선인성노예들은 함께 포로된 일본인녀성(35살)의 관할밑에 있었다. 그들은 일본군병사들을 〈위안〉하는 일외에도 병사들의 옷을 빨고 밥을 지으며 방공호안을 청소해야 하였다. 그 녀성들은 돈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고향에서 편지도 받지 못하였다.》고 썼다.

또한 련합군에 포로되여 송산전선에서 살아남은 이전 일본군병사 하야미는 당시 송산에 있던 조선인성노예들에 대하여 회상하면서 《와까하루》로 불리우던 22살난 녀성의 본명이 박영심이였으며 련합군이 촬영한 사진에 찍힌 조선인성노예들중에서 임신한 녀성이 바로 《와까하루》라는데 대해서와 곤명포로수용소에서도 그를 여러번 보았다는데 대해 확인하였다.

4) 구원되게 된 경위

조사단은 이번에 격전의 흔적이 력력히 남아있는 송산에서도 조사사업을 진행하였다. 전투가 있은 때로부터 60년이 되여오지만 아직도 일본군의 진지와 폭탄구뎅이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1944년 6월 송산을 완전포위한 운남원정군은 일본군에 맹렬한 공격을 가하였다. 일본군진지는 식량도 떨어지고 매일같이 계속되는 포격과 폭격으로 시체들과 부상자들만 늘어나는데다가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병사들속에서 전염병까지 만연하여 그야말로 지옥을 련상케 하였다.

원정군의 공격으로 일본군이 차지하고있던 진지는 하나둘 함락되고 마쯔야마진지, 니시야마진지, 요꼬마따진지 등 몇개의 진지밖에 남지 않았는데 일본군은 여기까지도 성노예들을 끌고다니였다.

1944년 9월 7일 마지막으로 견지하고있던 요꼬마따진지에 몰켜든 일본군은 성노예들을 방공호에 몰아넣고 집단적으로 학살하였다. 송산격전에서 겨우 살아남은 이전 일본군인 요시다께가 전후에 확인한데 의하면 상관의 명령에 따라 성노예들을 방공호에 몰아넣고 그속에 수류탄을 던져 죽였다는것이였다.

이것은 박영심이 방공호를 뛰쳐나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만행이였다.

박영심은 자기가 살아남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나는 그때 방공호에서 일본군이 군기를 태웠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를 듣고 일본군이 졌다는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몇명의 동무들과 함께 방공호를 뛰쳐나왔다. 일본군은 항상 우리에게 련합군에 붙잡히면 죽인다고 말해왔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피해 산속에 숨어있었다. 그러다가 며칠만에 강가로 나왔는데 바로 거기서 중국군병사들에게 포로되게 되였다.》

조사단은 그때 박영심을 비롯한 4명의 조선인성노예들을 찾아낸 중국인 리정조(76살, 중국 운남성 보산시 룡릉현 거주)를 만나 그의 증언을 청취하였다.

《그때 17살이던 나는 중국군대를 따라다니며 그들의 일손을 도와주고있었는데 그날은 2명의 중국군인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수무천가로 나왔었다. 이때 강가에서 몇명의 녀성들과 1명의 일본군인을 발견하였다. 우리가 소리를 치며 총을 쏘자 일본군인과 녀자 1명은 강에 뛰여들었다. 그러나 장마철에 물이 몹시 불어나있었고 물살이 세서 물에 뛰여든 녀성은 강을 건느지 못하

고 떠내려가다가 나무가지에 걸리였다. 달려가보니 이미 죽어있었다. 남은 녀자들을 데리고 올라오던 우리는 강냉이밭에 누워있는 또 1명의 녀성을 발견하였다.

그는 임신된 상태였는데 배가 몹시 고팠는지 강냉이를 뜯어먹고있었다. 나는 그에게 중국군은 녀자들을 죽이지 않고 집에 돌려보내준다고 안심시킨 다음 강냉이밭에서 그를 데려내왔다. 그가 몹시 힘들어하기때문에 내가 옆에서 부축해주었다. 그때 녀성들이 배고파 하기에 우리 집에 데려다가 밥을 먹인 다음 그들을 중국군대가 주둔해있는 곳까지 데리고갔다. 데려가는동안 임신된 그 녀성은 출혈을 하여 다리로 피가 흘러내렸으며 얼마 걷지 못하고 자주 쉬군 하였다.》

이번 조사길에서 박영심은 자기를 구원해준 리정조로인과 60년만에 상봉하였으며 《위안소》자리와 심문받던 장소 등을 확인하였다.

포로된 박영심을 비롯한 4명의 녀성들은 련합군의 심문을 받은 후 보산에 있는 포로수용소를 거쳐 인차 곤명포로수용소로 이송되였다.

당시 련합군에 의해 작성된 일본군성노예들에 대한 심문자료에는 박영심의 이름과 나이, 조선에서 끌려온 날자 등이 정확히 기록되여있었다.

박영심은 포로수용소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태아는 배속에서 이미 죽어있었다고 한다. 곤명포로수용소에서 1년 반가량 있으면서 조국해방을 맞이한 그는 인천까지 배를 타고 나와 서울과 청단을 거쳐 1946년 봄에야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였다.

치욕스러운 과거생활을 생각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것이 부끄러웠지만 죽어서도 가고싶었던 곳이기에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그는 말하였다.

*　　*　　*

일제에 의해 조국으로부터 수만km 떨어진 중국과 먄마의 산속을 끌려다니며 5년동안이나 강요당한 비인간적인 성노예생활은

그를 영원히 아이를 낳을수 없을뿐아니라 심장판막과 방광염 같은 고치기 어려운 질병에 시달리는 페인으로 만들었으며 일제침략자들의 더러운 성노리개생활을 강요당하였다는 수치감과 울분으로 하여 한생을 정신적고통속에 살게 하였다.

더우기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을 모독하면서 사죄와 배상을 회피하고있는 일본당국과 우익반동들의 처사는 박영심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가슴에 더 큰 상처를 입히고있다.

조사단은 이번에 중국 남경과 운남성의 등충현, 룡릉현 등 지난날 일제가 강점했던 지역들에서 일본군부가 직접 설치하고 조선녀성들을 끌어왔던 수많은 《위안소》들을 확인하였으며 그곳에서 우리 녀성들이 당한 처참한 피해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할수 있었다. 현지주민들은 한결같이 수많은 조선녀성들이 일본군성노예로 끌려와 갖은 모욕과 학대를 다 받으며 성노예생활을 강요당한데 대하여 증언하였다.

조선녀성들이 끌려간 곳은 중국뿐이 아니다. 일본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먄마, 괌도 등 일제침략군의 발길이 가닿는 곳마다에는 그 어디나 《위안소》가 설치되였고 거기로 20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이 일본군의 성노리개로 끌려갔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이러한 엄청난 인권유린범죄에 대하여 전후 반세기가 훨씬 지나도록 사죄와 배상은커녕 그 진상조차 똑똑히 밝히지 않고있으며 우익정객들을 내세워 《민간업자들의 행위》이라느니, 《녀성들이 돈을 바라고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느니 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온갖 비렬한 언동을 서슴지 않고있다.

박영심의 피해실태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일본군성노예범죄는 철저히 《위안소》의 설치와 운영, 녀성들의 모집과 이송 등 모든 것을 구일본정부와 군부가 직접 책임지고 제도화하여 조직적으로 실시한 20세기 최대최악의 반인륜적인 국가범죄이다.

국제법적으로 《인도에 대한 죄》등 기본인권과 관련한 범죄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은 전쟁법규와 국제인도법원칙에 따라 구일본국의 과거죄행에 대해 법적, 도덕적책임을 인정하고 철저히 사죄배상하여야 할 국제법적의무를 지니고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이미 수십년전부터 도이췰란드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들이 과거에 자국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력사적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하고있으며 이것은 하나의 시대적추세로, 국제적흐름으로 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면전에서 저들의 범행을 뻔뻔스럽게 외곡은폐하고 침략과 범죄로 가득찬 과거를 공공연히 미화분식하는 일본의 처사는 초보적인 량심도 체면도 없는 비도덕적인 행위가 아닐수 없다.

아시아의 이르는 곳마다에는 아직도 일제의 피비린 만행을 폭로하는 피해자들과 목격자들, 증거물들이 그대로 남아 일본의 과거범죄를 낱낱이 고발하고있다. 이 력사의 증견자들이 있는 한 일본당국은 과거청산의 책임에서 절대로 빠질수 없다.

만일 일본당국이 앞으로도 계속 피해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국제적도의를 무시하고 끝끝내 과거청산을 회피하는 길로 나간다면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인민들의 규탄과 배격을 면치 못할것이며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일본당국은 이제라도 과거청산에 대한 그릇된 자세와 립장을 버리고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모든 반인륜범죄행위에 대하여 성근하게 반성하고 그 진상을 깨끗이 밝히며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충분한 사죄와 배상을 하여야 한다.

조선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주체93(2004)년 1월 16일 평양

5.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련대 협의회 제2차회의에 제기한 조선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 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주체93(2004)년 5월 21일]

20세기 일본에 의해 저질러진 참혹한 중대인권유린범죄들이 제대로 심판되지 않은채 세기를 넘어 벌써 60년을 가까이 하고있다.

그동안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피해각국의 관련단체들과 활동가들, 피해자들의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력사의 흑막속에 묻혀있던 일본의 반인륜범죄행위들의 진상이 일정하게나마 밝혀지게 되였다.

또한 유엔인권위원회와 국제로동기구를 비롯한 권위있는 국제기구들과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의 연구와 보고를 통해 일본의 과거인권유린범죄들의 국제법적위법성과 국가적책임이 명백히 밝혀지게 되였으며 일본정부가 그 책임리행을 위한 실천적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는 강력한 권고도 여러차례 나왔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국제기구들의 거듭되는 권고와 피해자들의 요구에 로골적인 무시와 랭대로 대응하면서 저들의 범죄를 씻으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있으며 어떻게 해서나 과거청산을 회피하기 위해 끈질기게 책동하고있다.

과거 일본이 우리 나라를 무력으로 불법강점하고 전대미문의 포악무도한 식민지군사통치를 실시하면서 조선인민에게 강요한 불행과 고통을 생각할 때 이것은 너무도 파렴치하고 오만한 행동이 아닐수 없다.

천문학적수자를 헤아리는 경제적착취와 문화재략탈은 말할것도 없고 혹심한 정치적박해와 로동력수탈, 민족정신말살 등 조선민족이 입은 인적, 물적, 정신적손실은 인류력사에 전무후무한것이였다.

그가운데서도 자기나름의 취미와 의사에 따라 선택하게 되는 옷차림과 머리단장, 생활방식에서까지 인간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

리를 빼앗고 840여만의 조선청장년들을 강제로 랍치련행하였으며 100여만을 학살하고 20만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어가는 등 일제가 저지른 수다한 인권유린행위는 인류력사에 존재한 모든 범죄행위들을 훨씬 릉가하는 특대형의 반인륜범죄인것이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일제가 수많은 악법들을 조작개정해가면서 합법화, 조직화, 제도화하여 감행한 이 인권유린행위들이 대부분 집단적인 학살과 탄압, 살인적인 고역을 동반한것으로써 민족멸살이라는 엄청난 목적을 추구하였다는것이다.

특히 일제는 일본군성노예제도를 최대한 리용하여 조선녀성들을 대량적으로 분산와해 및 살해하며 산아능력을 파괴함으로써 조선민족의 증가를 억제하고 종당에는 통채로 없애버리려 하였다.

이로부터 일제는 중일전쟁 훨씬 이전시기부터 조선반도 각지에 일본군 《위안소》들을 설치하고 조선녀성들을 저들의 성노예로 만들었으며 성노예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해나가는데서 조선을 주요한 성노예공급원천지로 삼았다.

여기서 일본군성노예제도실행에서 조선이 어떤 위치와 역할을 강요당하였는가에 대해 몇가지로 언급하고저 한다.

1) 조선반도는 일본군성노예제도실시의 시범단위

이미 8세기이전부터 창녀들이 출현하여 16세기에 공식 유곽을 설치한 일본에서는 추업이 당당한 업종으로 번성해왔으며 그의 해외진출도 적극 장려되여왔다.

명치시기에 유명한 학자였던 후꾸자와 유끼찌가 《일본인민의 해외이주 식민사업의 발전에 따라 단신으로 부임하는 남성에게 쾌락을 주기 위해 창부가 필요하다.》, 《해외 각지에 주둔하는 병사들의 기를 화하게 하기 위해서는 창부가 필요하다.》고 말한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남성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 그를 위한 창부를 파견하는것이 필수적이고 응당한것으로 간주되여왔다.

더우기 1918년 씨비리출병시 수천명의 일본군인들이 문란한 강간행위로 성병에 감염되여 전투력이 크게 약화되였던 쓰디쓴 경험에서 일본군부는 군인들의 성욕처리를 위한 전용《위안시설》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였던것이다.

이로부터 일본군이 상시적으로 주둔해있은 조선반도에서는 일찍부터 일본군전용의《위안소》들이 출현하게 되였다.

1904년 로일전쟁을 일으키고 10여만에 달하는 방대한 침략무력으로 전 조선반도를 점령한 일제는 로일전쟁이 끝난 후에도 무력을 철수시키지 않고 계속 주둔시키면서 이를 배경으로 조선의 주권을 강탈해냈다.

1916～1919년에 일본군 제19사단과 제20사단으로《조선군》을 편성하여 조선의 방방곡곡에 수만명의 침략군을 고착, 배치한 일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조선통치의 실력적요소》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무력을 계속 증강하여 1936년 8월말까지 7개 사단에 해당한 병력을 주둔시키였다.

자료에 의하면 태평양전쟁말기까지 조선반도에는 무려 29만 4 000여명에 달하는 일본군이 주둔해있었으며 이외에도 수십수백만에 달하는 일제침략군이 조선반도를 통과하여 전선으로 파견되여갔다.

이와 함께 일제는 조선인민을 가혹하게 탄압하기 위하여 조선에 그물같은 헌병, 경찰망을 꾸려놓았는데 1910년 9월에 1만 6 840명의 헌병경찰이 있었다면 1922년에 와서는 헌병을 제외한 경찰만 하더라도 2만 772명에 달하였다.

일제는 장기간의 해외주둔과 침략전쟁에 시달려 거칠어지고 타락한 이 수십만의 일본군인들을《위안》하기 위하여 조선각지에 군《위안소》들을 설치하고 조선녀성들을 성노예로 만들었던것이다.

최근년간 우리 나라의 함경북도에서 이전 일본군《위안소》건물들이 련이어 발견되였는데 특히 2002년에 라남구역에서 발견한 풍골《위안소》는 일제의 조선주둔 라남제19사단이 리용한것으로서 1920년대말에 설치된것으로 보아진다.

여러동의《위안소》와 함께 진료소, 목욕탕까지 갖춘 이《위안소》부락은 외형상 일본민간인이 관리하는것으로 되여있었으나 실지로는 군부에서 그 감독, 통제를 맡아하였다.

당시 이《위안소》부락에서 잡일을 하던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풍골《위안소》는 라남제19사단의 위수구역안에 설치되여있어 일반사민들의 출입이 드물었으며 《위안소》입구에 파출소를 설치하고 헌병들이 엄격히 감시하였다고 한다.

또한 1주일에 한번씩 륙군병원 군의들이 직접 와서 성노예들에 대한 성병검진을 하였으며 병에 걸린 녀성들은 륙군병원에 후송하였다고 한다.

여기에 끌려왔던 성노예들은 대체로 15~30살정도의 조선녀성들로서 모두가 직업알선, 돈벌이꾀임에 속아 끌려온 녀성들이였다.

1920년대에 일본군《위안소》는 조선주둔 경성제20사단의 관할지역인 경상남도 창원군에도 있었다.

일본군성노예피해자 리경생은 12살 나던 1929년에 마을 구장이 끌고온 일본헌병에 의해 창원군에 있는 군수공장에 끌려가 공장구내의《위안소》에서 일본군인들을 상대로 성봉사를 강요당하였다.

일본군은 그가 16살 나던 해에 임신을 하자 수술하여 태아를 없애버렸을뿐만아니라 다시는 임신하지 못하도록 자궁까지 들어냈다.

또한 피해자 정옥순도 1934년부터 량강도 혜산에서 일본군성노예생활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1920년대 조선에 설치된《위안소》들에서 벌써 정기적인 성병검진을 실시하고 헌병들과 경찰들이《위안소》를 감시, 통제하였으며 구장과 같은 행정단위의 책임자들이 성노예런행에 관여하였다.

또한 이곳의 성노예들 역시 하루에 수십명의 군인들을 치르면서 대가란 전혀 받지 못했으며 임신을 하면 강제로 수술당하고 반항하면 목숨을 빼앗기는 등 인간이하의 가혹한 학대와 폭행을 당하였다.

제반 사실은 조선반도에서 일본군《위안소》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설치운영되였으며 모든 면에서 제도적행위로서의 명백한 성격과 체계를 갖추고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제는 1932년 상해사변 훨씬 이전시기부터 조선반도에서 일본군《위안소》들을 설치운영하면서 군성노예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확인하고 그를 보충완성해나갔으며 여기서 얻은 경험에 기초하여 성노예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해나갔던것이다.

2) 조선반도는 일본군성노예의 공급원천지

일본군성노예제도를 유지확대해나가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역시 성노예원천이였다.

일제는 그 인적원천지로서 바로 저들의 파쑈독재의 활무대로 무제한한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 되고있던 조선반도를 택하였던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당시 일제는 우리 나라를 강점하자마자 서울에 경무총감부를 두고 13개 도에 도경무부, 매개 군과 면에는 물론 주요지점들에까지 헌병대 및 경찰서, 헌병 및 경찰파출소를 수천개나 설치하였는데 1923년에 벌써 5 543개의 경찰 및 헌병기구망이 가동하면서 조선인민의 일거일동을 엄격히 감시통제하고있었다.

또한 조선총독부는《경찰즉결제》를 조작하여 경찰들에게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자들을 자의대로 즉시에 처분할수 있는 특권을 주었으며《조선형사령》과《태형령》,《태형집행요령》,《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을 비롯한 각종 폭압법규들을 조작공포하고 조선인민을 닥치는대로 탄압처형하였다.

일제가 파쑈악법과 폭압기구들을 동원하여 감금한 조선인이 1918년에는 447만 8 873명이였다면 1919년에는 574만 6 597명, 1922년에는 583만 6 643명에 달하였다.

1930년현재 조선에서 형무소 1㎡당 평균 재감인원이 3명이였는데 같은 시기에 일본이 0.4명, 대만이 0.5명이였다는것을 고려해볼 때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의 폭압체제가 얼마나 가혹한것이였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일제의 이러한 파쑈적폭압속에서 조선반도는 말그대로 철창없는 감옥, 인권불모지로 변화되였으며 조선인민에게는 인간으로서의 그 어떤 권리도 존엄도 자유도 허용되지 않고 오직 일본제국주의에 복종할 의무만이 강요되였다.

더우기 일제의 가혹한 경제수탈정책으로 조선인민의 생활에서 빈궁화가 촉진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특히 농촌에서 류랑걸식자와 빈농민, 령세민이 급증하였는데 이것은 일제에게 있어서 조선녀성들을 손쉽게 그리고 다량적으로 끌어갈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되였다.

일제는 이 풍부한 성노예원천지에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 《녀자정신대근로령》을 비롯한 파쑈악법을 휘두르며 헌병과 경찰, 현역군인, 사기협잡군까지 총동원하여 수십만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의 비참한 성노예로 끌어갔다.

지난해(2003년) 11월 우리 나라의 일본군성노예피해자 박영심은 중국을 방문하여 60여년전 자기가 일본군성노예로 끌려다닌 남경과 운남의 《위안소》들을 찾아보았다.

박영심피해자는 그 피해실태를 립증해주는 객관적인 문서자료들과 사진, 증거물, 그를 목격한 증인이 현존해있는 유일한 피해자이다.

지금도 중국 강소성 남경시 리제항에는 박영심이 《우따마루》로 불리우면서 치욕스러운 성노예생활을 강요당한 《위안소》건물이 60여년전 그대로 남아있으며 운남성 등충현 송산에는 굶주림과 공포, 출혈의 고통으로 수무천가에 쓰러져있는 그를 구원해준 리정조로인이 건재해있다.

박영심은 17살 나던 해에 일본군에 련행되여 중국의 남경과 얀마의 라시오 다시 중국 운남성 송산의 최전연으로 끌려다니며 1944년 9월까지 성노예생활을 강요당하였다.

박영심의 발자취를 따라 중국의 여러곳을 찾는 과정에 우리는 남경은 물론 운남성 등충현의 유등촌과 화순화교촌, 룡릉현, 보산시 등 이르는 곳마다에서 조선녀성들이 끌려와있던 일본군 《위안소》건물들을 볼수가 있었다.

지금까지 여러 문서들과 피해자들의 증언에서 조선녀성들이

일본군성노예로 끌려간 지역으로 밝혀진 곳은 조선에서 경흥, 웅기, 혜산, 라남, 함흥, 풍산, 부산, 창원이며 중국에서 홍콩, 마카오, 베이징, 상해, 남경, 광동, 장춘 등 50여개 지역, 일본에서 오끼나와, 오사까, 히로시마, 구마모또, 아오모리, 시즈오까, 와까야마, 나고야, 혹가이도 등 10여개 지역, 인도네시아에서 쑤마뜨라, 쑤라바야, 쟈와섬, 할마에라, 먄마의 양곤, 라시오, 미트키나, 대만의 기룽, 창화, 기고를 비롯하여 싱가포르, 싸할린, 캄보쟈, 필리핀, 파푸아뉴기니아, 꾸릴렬도, 싸이빤섬, 괌도, 니코바르 등으로서 그야말로 일제침략군이 전개된 모든 전선과 주둔지역을 다 포괄하고있다.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수많은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이 있지만 조선녀성들처럼 일제침략군의 발길이 미치였던 모든 지역에 대규모적으로 끌려간 례는 도저히 찾아볼수 없다.

일제는 군부와 행정당국안에 세워진 정연한 체계와 보급경로를 따라 조선녀성들을 저들의 전선각지와 주둔지로 분산배치하면서 모자라는 성노예들을 현지의 녀성들로 충당하였던것이다.

조선반도가 일본군성노예공급원천지였다는것은 일제가 조선녀성들을 상대로 일본군에 대한 《위안》을 강요하는 성교육을 진행한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우리 나라의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살고있는 누충녀는 자신이 겪은 체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나는 1944년부터 해방될 때까지 평안남도 평원군 검산면에 있던 학교에서 호출장을 받은 마을처녀들 20여명과 함께 일본어와 간단한 부상병처치법, 제식동작을 비롯한 군사훈련을 받았으며 이때 남녀간이 성교를 하는 방법을 교육받았다. 놈들은 부끄러워하는 우리들에게 일본병사들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며 병사들이 요구할 때에는 서슴없이 몸을 바쳐야 한다고 하면서 여러가지 성교방법과 위생관리 등에 대해 강의해주었다.》

누충녀의 체험은 일제가 임의의 시각에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동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일본군의 요구에 무조건 복종하는 정신을 강제주입시켰으며 이 사업을 전시동원을 위한 교육시설들에서 공공연히 진행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태평양전쟁을 도발하고 수백만의 조선남성로력을 징병과 징용으로 끌어간 일제는 녀성들마저 전쟁마당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1943년 《녀자학도병》과 《녀자근로정신대》동원을 결정하고 1944년에는 《녀자청년특별련성소》를 개설하여 녀성들에게 필요한 훈련을 주도록 하였다.

또한 간호원양성소와 같은 교육시설들을 꾸려놓고 조선녀성들이 전쟁마당에 나가 일본군을 위해 복무하도록 부상병간호법과 제식훈련 등을 강요하였는데 누충녀는 바로 이 간호원양성소에서 성교육을 받았다고 볼수 있다.

성교육을 함에 있어서도 일제는 왜왕과 《대의명분》을 위해서는 녀성의 정절도 서슴없이 바쳐야 한다는 반동적인 일본식성륜리를 체계적으로 주입하여 그들이 일본군의 성적강탈을 응당하고 숙명적인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려 하였다.

일제가 조선녀성들에게 군사훈련을 준다고 하면서 성교육을 배합한데는 그들을 간호부와 같은 로무자로 사용하면서도 필요하면 어느때든지 성노예로 전환시켜 일거량득의 효과를 얻으려 한 교활한 타산이 숨어있었다고 볼수 있다.

실지로 피해자들중에는 처음에 간호부를 하다가 성노예로 넘겨지거나 간호부가 되는줄 알고 속히워 끌려간 례가 적지 않으며 또한 낮에는 일본군의 잡일을 하고 밤에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성봉사를 강요당한 피해자들도 있었다.

조선에서 일본군성노예로 끌려간 녀성들은 20만에 달한다.

그중에서 살아돌아온 녀성들은 그의 몇백분의 일도 되지 않으며 그마저도 《위안소》에서 도망치거나 전쟁의 혼란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일제는 저들 병사들의 건강을 위하여 성병대책은 세우면서도 성노예들의 건강이나 생명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으며 정황이 위급해지면 성노예들을 보호한것이 아니라 가차없이 소멸처리해버리였다.

일본군성노예제도를 통하여 조선민족말살을 추구한 일제에게 있어서 조선인성노예들은 사용이 끝나면 모두 처분해버릴 소모품에 지나지 않았던것이다.

3) 우리 나라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의 현 실태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이 짓밟힌 존엄과 명예를 회복시켜줄것을 요구해나선 때로부터 10여년이 흘렀다.

그때는 60～70대이던 피해자들이 이제는 모두 70～80대가 되였으며 더우기 가슴아픈것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원한을 풀지 못한채 세상을 떠난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공개증언에 나섰던 피해자들중 60%가 이미 사망하였으며 생존해있는 피해자들도 태반이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이다.

앞으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소원은 일본정부로부터 똑똑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여 가슴속에 쌓이고 쌓인 원한을 풀고 수치와 혐오감에서 벗어나는것이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이 받은것은 사죄와 배상이 아니라 거듭되는 모욕과 배척뿐이며 이것은 그들에게 정신적고통을 더해주고있다.

조사에 의하면 세상을 떠난 우리 나라 피해자들의 사망원인가운데서 제일 많은 비률을 차지하는것은 뇌출혈을 비롯한 뇌질환과 암 등의 불치의 병이였다.

1993년 7월에 사망한 리복녀와 1995년 5월에 사망한 김복순, 1998년 3월에 사망한 윤경애와 2000년 4월에 사망한 리경생의 사망원인이 모두 뇌질환이였으며 1993년 5월에 리현숙이 유선암으로, 1998년 2월에 리춘화가 자궁암으로 사망하였다.

살아있는 피해자들가운데서도 박영심이 여러해전에 뇌혈전을 앓았으며 곽금녀는 지난해(2003년)에 자궁암진단을 받았다.

이것은 녀성으로서 인간으로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수치와 모욕을 당하였다는 정신적고통이 발병의 근원으로 되고있으며 또한 과거청산을 회피하는 일본당국의 파렴치한 태도가 피해자들의 생명을 줄이고있다는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있다.

2000년에 뇌혈전으로 사망한 리경생은 림종을 앞두고 자신의 일생을 망쳐놓은 일본에게서 단 한마디의 사죄도 듣지 못하고 가

는것이 원통하여 눈을 감지 못하겠다고 몇번이나 외웠다고 한다.

또한 1998년 12월에 사망한 정옥순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라도 일본이 사죄하고 배상을 하면 자기 무덤에 와서 알려달라는것을 유언으로 남겼다고 한다.

지난해 말 함경남도 청진시 라남구역에서 살고있는 김철순이 자기의 일본군성노예피해를 공개해나섰다.

김철순은 16살에 중국 봉천(지금의 장춘)에 있는 일본군부대에 끌려가 성노예생활을 강요당하였다.

3년동안의 성노예생활과정에 뇌타박으로 한쪽눈이 실명되고 자궁이 파렬되는 등 페인이 되다싶이 한 그는 생의 많은 시간을 병원침대에서 보냈다.

특히 그의 왼팔 웃부분에는 스미노라는《위안소》경영자의 이름이 크고 선명하게 입묵되여있는데 그는 이것때문에 일생을 팔을 드러낸 옷을 입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울가봐 항상 신경을 쓰면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한다.

그는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과거를 밝히지 않고있던 자기가 어떻게 되여 공개증언에 나서게 되였는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지난 시기 나는 여러 성노예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으면서도 나의 과거를 공개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공개했댔자 일본이 저렇게 아무런 사죄와 배상도 하지 않고있는데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차라리 말하지 않는편이 더 낫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일본반동들이 성노예력사를 화장실력사라고 하더니 요즘은 우리 나라를 〈범죄국〉으로 몰아대면서 마치 저들이 무슨 큰 피해자이기나 한듯이 떠들어대는것을 보고는 분통이 터져오는것을 도저히 참을수 없었다. 도대체 일본이 누굴더러 〈범죄자〉라고 하는가.》

그의 말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과거청산을 회피하고있는 일본당국의 파렴치한 처사는 피해자들에게 분노와 울분을 덧쌓아주고있으며 더우기는 아직 과거를 공개하지 않고있는 사람들의 입을 봉하게 하는 근본원인으로 되고있다.

피해자들은 일본이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지 않는 한 자신

이 당한 수치와 모욕은 벗겨지지 않으며 자신들은 영원히 더럽혀진 녀자로 남아있을것이라고 여기고있다.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한 일본당국의 책임회피 이것은 곧 피해자들에 대한 또 다른 가해행위로서 지금 이로부터 새로운 피해가 계속 발생되고있다.

* * *

청산되지 않은 범죄는 새로운 피해를 낳고있으며 리행하지 않은 책임은 또 다른 범죄의 근원으로 되고있다.

일본당국이 하루빨리 자기의 법적책임을 인정하고 리행할 때만이 범죄의 악순환을 끝장내고 피해자들을 고통의 나락에서 구원할수 있다.

피해자들에게 남은 생이 이제는 시간을 다투고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력사앞에, 정의앞에 빚진 마음으로 살게 될것이다.

6. 제13차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련대회의에 제기한 조선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 문제대책위원회 보고

[주체104(2015)년 5월 22일]

2015년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때로부터 70년, 일본이 패망한 때로부터 70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날 일제의 침략과 략탈로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당한 아시아인민들은 물론 국제사회는 일본이 비록 늦은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잘못된 과거를 성근하게 인정하고 사죄하며 옳바른 길에 들어서기를 기대하면서 패망 70년을 맞이하는 일본의 태도를 주시하여왔다.

그러나 일본당국자를 비롯한 집권층은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대신 오히려 범죄력사를 외곡하며 유치하고 치졸한 말장난으로 국제사회를 우롱하면서 뻔뻔스럽게 놀아대고있다.

최근년간 일본군성노예범죄와 관련한 일본의 태도에서 특징적인것은 정부당국과 우익세력이 한덩어리가 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일본군성노예범죄의 본질을 가리우고 범죄를 왜소화, 백지화하는데 총력을 집중하고있는것이다.

일본군성노예범죄의 본질을 가리우고 그것을 백지화하려는 일본의 책동에서 주목되는것은 우선 일본사회에서 일본군성노예범죄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부정하는 움직임이 대폭 강화된데서 찾아볼수 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1993년에 발표된 고노담화는 구일본군의 성노예범행을 인정하지 않고있던 일본정부가 아시아각국에서 피해자들이 속출되고 범죄에 대한 구일본군의 관여를 보여주는 당시의 공문서들이 발견되면서 국제사회의 추궁이 강화되자 마지 못해 《사죄와 반성의 심정》을 표명하면서 불충분하게나마 일본군부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한것으로서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립장으로 국제사회에 인식되여있다.

지난 시기에 일본의 우익세력이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부정하는 망발을 하여 사회적으로 여론화될 때마다 일본정부는 고노담화를 유지한다는 립장을 밝히면서 겉으로나마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하여 인정하고있는듯이 분칠해왔다.

그러나 2006년 제1차 아베내각의 출현과 때를 같이하여 고노담화에 대한 재검토, 부정론이 급격히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였다.

2007년 1월 자민당의 보수파의원들로 구성된《일본의 전도와 력사교육을 생각하는 모임》이 수상관저의 요청을 받고《고노담화 재검토》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아베수상은 이해 3월 1일 고노담화에서 정의한 일본군성노예범죄의《강제성은 뒤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담화부정론에 로골적으로 키질을 하였다.

아베수상은 제2차 아베내각이 구성된 직후인 2013년 2월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구일본군이)사람을 강제로 끌어가는것과 같이 인가에 들어가 성노예로 만들었다는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없다.》는 망발을 하여 세계여론을 또다시 휘저어놓았다.

또한 고노담화에 대한 공격이 날로 강화되는 속에서 지난해 3월 스가 요시히데 내각관방장관은 정부안에 고노담화를 검토하는 부서를 설치하겠다고까지 공언하였다.

고노담화에 대한 우익세력의 공격은 보다 집요하고 악질적으로 자행되고있다.

일본우익세력의 대표적인물인 사꾸라이 요시꼬는 고노담화가 성노예녀성들을 강제로 련행해갔다는 객관적자료도 전혀 없이 주변나라와의 관계를《고려》한《선의》에서 나온것으로서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강제련행의 움직일수 없는 증거로, 일본비난의 기둥으로 되고있다고 여론을 오도하고있다.

또한 도꾜그리스도대학 교수 니시오까 쯔또무는《고노담화에 있는 권력에 의한 강제련행은 확인되지 않았다》는것을 명기한 새로운 관방장관담화를 내야 한다고까지 력설하였다.

고노담화부정행위야말로 일본군성노예제의 강제성을 거세하여 그 죄악성을 약화시키고 범죄를 백지화하며 성노예범죄에 대한 국제적인식을 뒤집어엎으려는 음흉하고 파렴치한 력사말살행위이다.

일본군성노예범죄의 본질을 가리우고 그것을 백지화하려는 일본의 책동에서 주목되는것은 또한 성노예 《날조설》을 대대적으로 류포시키고있는것이다.

지금 도꾜지방재판소에는 《아사히신붕》에 대한 집단소송이 3건이나 제기되는 등 《아사히신붕》에 대한 우익세력의 공격이 극심해지고있다.

요컨대 《아사히신붕》이 패망전 로무자보국회의 성원으로서 조선녀성들을 강제련행하여 성노예로 만들었다고 한 요시다 세이지의 《거짓증언》을 제멋대로 가공하여 성노예강제련행 《허위보도》를 날리고 소화13(1938)년 3월 4일부 륙군성에서 파견군에 보낸 통첩 《군위안소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건》의 내용을 알아보지도 않고 건명만으로 성노예모집에 관한 군의 관여를 선전함으로써 성노예강제련행을 기정사실화하였다는것이다.

그러면서 성노예들은 높은 수입을 바라고 전장에까지 나간 합법적인 상업성노예로서 일본군대좌수준의 높은 급료를 받았는데 그것이 무슨 성노예인가고, 성노예가 녀성들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라면 모든 나라의 군대가 비난의 대상으로 되여야 하며 세계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있는 매춘행위도 모두 문제시되여야 할것이라고 하면서 성노예문제야말로 《아사히신붕》의 《허위보도》에 의해 《날조》된것이라고 강변하고있다.

2013년 5월 일본유신회 공동대표인 하시모또 오사까시장이 《성노예제도가 군대의 규률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였다》고 한 망발이나 2015년 4월에 있은 아베수상의 《인신매매피해자》발언은 우익세력의 성노예《날조》설과 맥락을 같이하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일본군성노예생활을 강요당한 녀성들이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것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 전장에 나간 《매춘부》들이며 이러한 현상은 세계전쟁사에서 흔히 볼수 있은 보편적현상으로서 노예도 아니고 범죄도 아니라는것이다.

지금 일본우익세력은 《아사히신붕》의 《허위보도》설, 성노예 《날조》설을 널리 광고하면서 성노예범죄의 강제성을 폭로한 량심적인 기자, 학자들을 《매국노》로 타매하고있다.

비록 《아사히신붕》의 상층부가 언론기관으로서의 사명감도 존

엄도 다 줴버리고 우익세력의 압력에 겁을 먹고 저들의《오보》를 인정하는 추태를 보이기는 하였지만 일본군성노예제가 구일본의 관권과 군권에 의해 수립, 유지된 일본의 반인륜적국가범죄라는것은 수많은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증언, 구일본군의 관련문서들에 의해 명백히 증명된 움직일수 없는 사실이다.

일본군성노예범죄의 본질을 가리우고 그것을 백지화하려는 일본의 책동에서 주목되는것은 또한 력사교과서에서의 성노예문제취급에서 여실히 나타나고있다.

일본군성노예범죄가 아시아피해국들과 국제기구들의 조사, 연구에 의해 그 진상이 밝혀지고 특대형의 인권유린행위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게 되면서 1997년부터 일본의 중학교력사교과서들에도 성노예문제가 기술되기 시작하였다.

한편《새 력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일본의 전도와 력사교육을 생각하는 모임》등 우익단체들은 일본정부당국의 적극적인 후원밑에 교과서에서의 성노예문제기술을 반대하는 깜빠니야를 대대적으로 개시하였다.

성노예표현이 삭제된 2002년 중학교력사교과서가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이래 교과서에서의 성노예문제삭제는 급속히 추진되였다.

2004년 11월 나까야마문부과학상이《(력사교과서에서) 최근에야 겨우 성노예라든가 강제련행이라는 소리가 줄어들어 정말 좋다.》, 2005년 3월 문부과학성 시모무라 정무차관이《아이들의 성장과 발달단계를 고려해볼 때 중학생들이 사용하는 력사교과서에 성노예라는 표현을 넣는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한 망발들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일본정부당국의 적극적인 후원과 엄격한 통제밑에 지난 10여년사이에 일본의 중고등학교 력사교과서에서 일본군성노예에 대한 기술은 완전히 삭제되였다.

지금 일본의 현행교과서들에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하여 기술된것은 단 한책도 없다.

력사교과서에서의 성노예범죄의 삭제는 과거의 반인륜적범죄를 부정하고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당국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일본군성노예범죄의 본질을 가리우고 그것을 백지화하려는 일본의 책동에서 주목되는것은 또한 국제적으로 널리 퍼지고있는 일본군성노예문제에 대한 추궁과 대일비난을 막기 위한 책동이 눈에 뜨이게 강화된것이다.

지난 2007년에 미국회에서 성노예관련결의안이 채택되고 련이어 네데를란드와 카나다, 유럽동맹 등의 국회에서도 류사한 결의안들이 나오면서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추궁이 더욱 고조되였다.

일본은 여기서 응당한 교훈을 찾은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전면대결에로 나가고있다.

2014년 8월 요시다증언을 비롯한《아사히신붕》의 성노예보도에 대한《검증》후 우익세력은 이제부터는 대외정보전이 기본이라고 저들의 활동방향을 밝히였다.

《〈아사히신붕〉의 성노예보도에 대한 독립검증위원회》위원장 나까니시는《아사히의 강제련행선전이 미국신문에 영향을 주고 그때문에 미국각지에서 성노예기림비가 설치되고 력사교과서의 기술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재미일본인들에 대한 차별과 박해 등을 초래하고있다.》고 강변하였다.

미국회하원에 성노예관련결의안이 제출된 때로부터 그 채택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막후공작을 맹렬히 벌려온 우익세력은 2013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의회 등에서 성노예관련결의안이 상정되자 그 통과를 막기 위해 100여통의 전자우편을 주의회의원들에게 보내는 소동을 일으켰다.

2014년 2월에는 성노예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를 재판에 제소하고 자유권규약위원회, 녀성의지위위원회 등 유엔인권기구들에서 열리는 회의들에 참가하여 성노예범죄를 부정하는 선전활동을 벌리였다.

우익세력은 일본군성노예문제의 국제화가 재외일본인들에 대한 박해와 차별을 낳고있다고 민족주의감정을 자극하면서 재외일본인들을 반성노예운동에로 사촉하고있다.

2014년 12월에 쌘프런씨스코와 로스안젤스에 이어 2015년 3월 로스안젤스에서《아사히신붕》제소와 관련한 재미일본인들의 집회

를 벌려놓은것이 그 실례이다.

우익세력뿐아니라 일본정부도 성노예범죄를 가리우기 위한 대외활동에 적극 나서고있다.

일본정부는 2014년 10월《위안부》를 성노예로 지적한 당시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이였던 라디카 쿠마라스와미에게 보고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또한 성노예문제를 력사교과서에 기술한 미국의 매그로힐출판사에 성노예기술수정을 요구하고 하와이주재일본령사관은 이 교과서의 집필자인 하와이대학 하버드준교수에게 원고수정을 요청하였다.

뿐만아니라 미국주재 일본대사관과 령사관들의 홈페지에《이른바 력사문제를 배경으로 한 박해와 폭언 등 피해를 당한분, 구체적인 피해정보를 가지고있는분들은 아래의 주소에 련락, 상담해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림으로써 마치도 일본군성노예문제가 재미일본인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낳고있는듯이 의도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있다.

일본군성노예범죄의 진상을 뒤집어엎으려는 일본우익세력의 책동은 위험계선을 넘어서고있다.

극우익인물들인 만화가 고바야시 요시노리와 작가 가미사까후유꼬는《10년전에 성노예가 없었다고 하면 모두매를 맞았겠지만 적어도 이 10년동안에 상황은 크게 변하였다. 지금의 정치가들, 외교관리들도 앞으로 10년동안에 세계의 여론을 바꾸겠다는 의지로 달라붙어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우익세력의 속심을 그대로 드러내보인 망발이라고 할수 있다.

일본의 국수주의세력이 력사의 정의, 국제사회의 보편적가치와 륜리를 또다시 모욕하는것을 허용할수 없다.

국제사회는 일본의 극단한 일본군성노예부정행위, 력사말살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Ⅱ.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범죄

1. 구일본륙군의 농경근무대에서 감행된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로동신문》 주체94(2005)년 2월 1일부]

과거 일제가 우리 나라에 대한 군사적강점기간에 감행한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는 그 형태와 방법, 기간과 규모에 있어서 인류전쟁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중대한 인권유린범죄이다.

조선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는 2003년말에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의 일부에 해당되는 42만여명의 명단을 입수하여 공개한바 있다.

당시 일본의 정부당국과 기업들에 의하여 작성된 이 명단은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의 진상을 해명하는데서 중요한 자료로 되고있다.

우리는 최근에 이 명단을 분석조사하는 과정에 구일본륙군의 농경근무대에 강제련행되여 노예로동을 강요당한 피해당사자들을 찾아낸것과 관련하여 이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한다.

1) 구일본륙군 농경근무대의 정체

1894년의 청일전쟁도발을 계기로 시작된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는 태평양전쟁을 계기로 더욱 단말마적으로

감행되였다.

일본의 전쟁광신자들에 의한 침략전쟁의 계단식확대는 막대한 인적 및 물적자원의 소모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일본국내의 병력과 로동력은 고갈상태에 빠지게 되였다.

구일본륙군은 바로 이러한 시기에 일본국내의 부족되는 식량을 자체로 생산할 목적으로 농경근무대라는것을 조작하였다.

일제는 징병의 명목으로 수많은 조선청년들을 일본에 끌어다가 여기에 배속시켜놓고 경작지개간을 비롯한 고된 농사일에 마소처럼 내몰았다.

이에 대하여 일본《아사히신붕》2003년 3월 15일부에 게재된《조선인 징병하여 식량증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는《태평양전쟁말기인 1945년 4월 조선반도에서 징병된 조선인병사들을 식량증산 등에 동원시켰다는것을 보여주는 구일본군의 전보문을 오사까부의 고등학교 교원이 발견하였다. 그것은 자활대, 농경근무대라고 불리우는 부대들에 조선에서 병사들을 보내오는것과 관련한 내용이였다.

…

전보문은 1945년 4월 8일에 구일본륙군이 기안한것이였다. 조선인강제련행에 대하여 연구하는 교원은 그것을 2002년 9월에 일본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에 보관되여있는〈조선군기밀작전일지〉에서 발견하였다.》고 씌여져있다.

그 전보문에 의하면 당시 구일본륙군은 서부(규슈지방)군인원 1만 5 700명, 각 군관구 자활대인원 1만 7 000명, 농경근무대인원 1만 3 000명 등 4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청장년들을 일본으로 끌어갔으며 그들에게 무기대신 삽, 괭이 등을 주었다고 한다.

지난해(2004년)에 입수, 공개된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명단에는 구일본륙군의 제3, 4, 5농경근무대에 끌려갔던 7 000여명의 조선청장년들에 대한 자료도 들어있는데 그들은 1945년 봄경에 평안북도와 평안남도, 황해도, 함경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등 조선반도의 거의 모든 지역들에서 끌려간 청년들이였다.

자료를 통하여 당시 한개의 농경근무대가 7개 중대로 편성되였으며 한개 중대에 대체로 250여명의 조선청장년들이 배속되여

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 명단에 대한 분석조사과정에 우리는 제3농경근무대명단에 《우메노부 다이한》이라는 일본이름으로 기입되여있는 사람이 평양시 대동강구역에서 살다가 2004년 12월에 사망한 피해자 진태범(1925년 8월 23일생)이며 제4농경근무대명단에 《가네무라 치린》이라는 일본이름으로 기입되여있는 사람이 현재 평양시 중구역에 살고있는 피해자 김치린(1924년 3월 11일생)이라는것을 확인할수 있었다.

2) 농경근무대에서 감행된 일제의 조선인 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

지난날 일제에 의한 조선인강제련행은 피해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강제성을 띠고있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말기에 일제의 악독한 법률적장치에 의하여 조선청장년들에 대한 징용, 징병은 완전히 의무화되였다.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조선청장년들이 징용, 징병으로 끌려가 노예로동에 내몰리고 일본군 군인, 군속생활을 강요당하였다.

일제는 피해자 김치린을 1945년 1월초에 평안남도 순천군(당시)에서, 피해자 진태범을 같은 해 3월에 경기도 안성군(당시)에서 징병으로 끌어갔는데 그들에게는 다같이 《국가총동원법》이라는 악법이 적용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김치린은《1945년 1월초에 경찰관주재소의 왜놈순사와 구장이 징병령장을 가지고와서 나를 면사무소로 끌어갔다. 오후에 나를 포함한 12명의 청장년들이 순천역에 도착하니 그곳에는 이미 300여명의 청장년들이 끌려와있었고 일본경찰들이 그들을 삼엄하게 감시하고있었다. 일제는 양덕방향에서 도착한 12차량의 화차에 우리들을 나누어태워 떠나보냈는데 헌병들이 화차입구에 서서 우리들을 감시하였다. 우리는 그날 저녁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사동에 주둔하고있던 제44부대로 끌려갔다.》

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진태범은《1945년 3월 어느날 밤 10시가 넘었는데 경찰관주재소의 왜놈순사와 면서기가 우리 집에 나타나서 징병령장을 내보이면서 래일 오전에 군청으로 오라고 하였다. 환갑에 가까운 아버지와 큰어머니를 비롯한 온 집안식구들이 통곡을 하는통에 우리 집은 초상난 집같이 되였다. 나는 도망치고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지만 그러다가 붙잡히는 날이면 죽음을 면할수 없게 될것이고 붙잡히지 않는다 해도 나때문에 온 가족이 왜놈들에게 탄압을 받게 될것이므로 그럴수도 없었다. 이튿날 군청에 가니 다른 5명의 청년들이 이미 끌려와있었다. 일본군 소위의 인솔밑에 안성역에서 기차를 탄 우리는 이틀만에 함경북도 라남에 있는 제19사단으로 끌려갔다.》고 증언하였다.

일제는 조선청장년들을 이렇게 조선국내에 주둔하고있는 일본군부대들에 강제로 끌고가서는 신병훈련을 강요하였다.

피해자 김치린은 일본륙군 제44부대에서 2개월간, 피해자 진태범은 라남제19사단에서 한달동안 신병훈련을 받았다.

일제는 조선청년들에게 일본군병사들이 입던 허줄하고 다 해진 군복을 갈아입히고 오전과 오후에 각각 3～4시간 제식훈련을 시켰다.

신병훈련기간 조선청년들에게 차례진것은 적은 량의 납작보리밥과 국, 무우절임 세쪼박이 전부였다고 한다.

일제는 신병훈련을 받은 조선청장년들을 일본국내의 여러 지방에 끌어가 가혹한 농사일을 강요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김치린은《1945년 4월 3일 이른아침 놈들은 갑자기 우리를 집합시키더니 평양역으로 끌고가 이미 대기하고있던 12차량의 군용렬차에 분승시켰다. 차칸바닥에는 가마니를 깔았고 창문은 밖을 내다볼수 없게 가리워져있었으며 헌병 2명이 문턱에 앉아 우리를 감시하였다. 왜놈들이 차칸에 너무도 많은 강제련행자들을 태우다나니 우리는 서로 잔등을 대고 쪽잠을 자야 했고 위생실에도 제대로 갈수가 없어 오줌을 깡통에 받아 창문밖으로 뿌리군 하였다. 평양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1주일 걸렸는데 놈들은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들을 관부련락선에 태우고

시모노세끼로 향하였다. 왜놈들은 일본 야마구찌현 시모노세끼에 도착한 2 000여명의 청장년들에게 보리밥 한덩어리씩 나누어주고는 다시 군용렬차에 태우는것이였다. 시모노세끼를 떠난 기차는 오랜 시간 달렸다. 어느 한 역에서 상등병 두놈의 인솔밑에 나를 포함한 30여명의 청년들은 내리게 되였다. 인솔자를 따라 역전에서 1시간가량 걸어서 우리가 도착한 곳이 바로 아이찌현 헤끼까이군 이사미무라 노다지구라고 부르는 농촌부락이였다. 여기에서 왜놈들은 우리를 제4농경근무대에 배속시켜 노예로동을 강요하였다.》고 말하였다.

피해자 진태범 역시 일제에 의하여 1945년 4월말에 신병훈련을 끌내고 부산에서 1 000여명의 조선청년들과 함께 일본 규슈로 끌려갔으며 그중 200여명은 다시 군용렬차를 타고 5월초에 혼슈의 도찌기현 나스노하라라는 곳에 당도하였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제3농경근무대에 배속되여 고역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증언하였다.

일제는 조선청장년들에게 비인간적인 로동을 강요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김치린은《놈들은 새로 도착한 우리를 노다소학교의 어느 한 방에 들이밀었는데 그곳은 너무도 어지러워 돼지우리와 같았다.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면 3~4명씩 조별로 15분정도 걸어서 농장에 나가 허리 한번 펴지 못한채 일해야 하였으며 저녁에도 늦게야 돌아왔다. 이 부락에서는 콩, 보리와 벼로 2모작을 하였다. 우리는 도착하여 인차 보리를 수확하였고 그후에는 모내기를 하여 벼농사를 지었다. 또한 괭이로 참대밭을 개간하여 논밭으로 만들거나 물길을 파는 작업에도 내몰렸다. 놈들은 자주 작업장을 돌면서 우리가 제대로 일하고있는가를 감시하였다. 그리고 그날 작업과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마구 때리군 하였다. 하루는 내가 너무 힘들어 작업도중에 허리를 폈는데 그것을 본 왜놈 상등병이 나에게 달려들어 구두발로 마구 차고 곤봉으로 허리를 때렸다. 결국 그 후유증으로 나는 지금도 허리와 오른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있다. 놈들은 조선사람들끼리 이야기도 하지 못하게 하였고 혼자서 외출하는것도 금지시켰다. 우리들

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여 기아상태에서 마소와 같이 일하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증언하였다.

일본에서 출판된 도서인 《소화 옛이야기》에는 《제4농경근무대가 노다의 쇼후꾸절간에 주둔한것은 1945년 3월 4일부터였다. 이 부대의 사명은 기본식량으로 되고있는 고구마를 급속히 대량적으로 증산하며 만일의 경우 무선전신이사미송신소에 대한 경비를 서는것이였다. 1945년 5월 초순에 조선인병사 30명정도가 입대하였기때문에 노다소학교 남쪽 교사의 3개 교실에 분산배치되고 도서실에 하사관들이 들었다.》고 기록되여있다.

피해자 진태범은 《내가 속한 제3농경근무대는 소나무수림지대에 자리를 잡고있었는데 수림의 직경이 80리라고 하였다. 우리는 도착한 다음날부터 벌목작업에 내몰렸다. 두아름이 넘는 소나무를 도끼와 2인용쇠톱으로 벌목하여 20리밖에 목고로 운반하고 그 자리에 감자와 고구마를 심었다. 부대에는 조선사람이 약 200명 있었는데 소대장 등 일본군인들이 작업을 감독하였다. 재향군인들은 나이가 40살가량 되는 일본인들이였는데 그들은 소대장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아 우리에게 일을 시키면서 순전히 감독만 하였고 일은 거의다 조선사람들이 하였다. 썩은 콩깨묵을 먹고 고된 로동에 시달리다나니 사람들은 뼈만 앙상하게 남고 자주 허기져서 쓰러지군 하였다. 그때마다 왜놈들은 배고프면 실컷 먹여주겠다고 하면서 쓰러진 조선사람들을 질질 끌고가서 뜨물통우에 거꾸로 매달아놓고 머리를 그안에 처박았다. 너무 힘들어서 좀 쉬려고 하면 놈들이 달려와 회초리로 답새기고 군화발로 걷어차며 마구 때려서 죽거나 병신이 된 사람이 수없이 많았다. 놈들은 매일과 같이 조선사람을 때렸다.》고 증언하였다.

이외에도 구일본륙군이 농경근무대에 조선청장년들을 수많이 끌어가 노예로동을 강요한 사실을 립증하는 자료들이 적지 않게 발견되였다.

2003년 4월 23일 일본의 《아끼다사끼가게》신문에 게재된 《아사마이의 조선인농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1882년에 아끼다현 아사마이에 탁아소로 세워진 《아사마이깡은고》라는 건물이 태평양

전쟁시기에 일본군의 병영으로 리용되였다고 하면서《병영에 있던 80명은 조선인병사들이였고 일본인장교는 5명이였다. 이 병졸들은 농병과 같이 매일 쥬고야벌판에서 식량증산을 위한 개간에 종사하였다. 20명정도의 소대인원을 1렬횡대로 정렬시키고 각자에게 괭이를 주어 땅을 뒤집어놓으면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였다. 저녁에는 모두가 주린 창자를 안고 돌아갔다. 이렇게 쥬고야벌판이 개간되였지만 그곳은 토양의 산성이 너무 강했기때문에 화물자동차로 석탄을 여러대분 실고와서 뿌린 다음 콩을 심었으나 가을에는 종자량만큼도 걷어들이지 못하였다.》고 지적되여있다.

이 기사에는 또한 아끼다현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의 조사에 의하여 히라까마찌 아사마이에 조선에서 청장년들이 끌려와 개간지에서 농사일을 강요당하는것을 본 목격자를 찾아냈다는것이 씌여져있다.

제반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말기에 일제가 조선에서 수많은 청장년들을 닥치는대로 일본에 끌고가 인간이하의 노예로동을 강요하였으며 일제의 강제로동범죄가 단순히 공장이나 건설장만이 아니라 농업에까지도 미치였다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3)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은 중대한 인권유린범죄

과거 일제가 조선청장년들을 저들의 군인, 군속으로 침략전쟁터와 죽음의 고역장에 끌고가 군노예, 로동노예로 만든것은 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에 해당된다.

이에 대하여 일본변호사련합회가 2002년 10월 25일에 일본정부에 제출한《조선인강제련행, 강제로동인권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한 조사보고서》에는《강제련행이라는 용어에서의 강제라는것은 육체적 및 정신적강제를 포함하는것으로서 이 개념은 늦어도 19세기말에는 국제적으로, 20세기초에는 국내적으로도 확립되여있었다.》고 하면서 조선인강제련행의 내용으로서《①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한 로무동원계획 및 국민동원계획실시에 의한 조선으로부

터의 로무동원, ② 국민징용령에 의한 일본국내에로의 로무동원, ③ 군인, 군속, 〈녀자근로정신대〉, 성노예로서 모든 전시동원을 포함하며 1939년이전에 진행된 유괴 등의 행위에 의한 결과도 해당된다.》고 지적되여있다.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는 국제사회의 정의와 도리를 심히 파괴하고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한 인도에 대한 죄, 노예범죄에 해당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죄로 된다.

이로부터 일본정부는 마땅히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그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실천적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있다.

1999년 8월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채택된《무력분쟁시에서의 조직적강간, 성노예 및 노예제류사관행에 관한 최종보고서》는 구일본국에 의하여 산생된 성노예문제, 강제로동문제와 함께 군인, 군속문제를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일본정부에 이 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지난 기간 군인, 군속문제를 비롯한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의 공정한 해결을 요구하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법률단체들의 결의와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의 전후처리문제가 다국간조약과 2국간조약에 따라 이미 해결되였다는 항변을 고집하면서 전후 60년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국가적책임을 회피하고있다.

최근년간 일본당국은 구일본군의 군인, 군속으로 끌려갔던 몇몇 재일외국인피해자들에 대한《위문금지급》놀음으로 군인, 군속문제를 어물쩍해서 넘기려 하는가 하면 840만여명의 조선인강제련행범죄, 랍치범행 등 반인륜적과거범죄에 대하여《실정법상 배상근거》가 없다고 계속 우겨대고있다.

지어 일본우익반동들속에서는 이러한 범죄가《사실무근거한》것이라고 하면서 조선사람들이 스스로 일본에 건너간것처럼 력사적사실을 외곡날조하는 망언까지 튀여나오고있으며 일본에서 진행되는 증언집회와 추도모임들에 참가하려던 우리 강제련행피해자와 희생자유가족들의 일본입국을 여러차례 공공연히 차단하는 행위까지 꺼리낌없이 자행하고있다.

더우기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현 일본정부가 패망한지 60년이 되는 이 시각까지도 일제의 반인륜적범죄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우리 나라의 과거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해 한번도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았고 한푼도 배상하지 않고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강제련행피해자들과 유가족들속에서는 과거의 중대인권유린범죄에 대한 법적, 도덕적의무를 외면, 부정하면서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으로 둔갑해보려고 갖은 오그랑수를 쓰고있는 일본당국의 철면피하고 비렬한 태도와 립장에 대한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있다.

2002년 11월에 진행된 제155차 일본국회 결산행정감시위원회에서 후생로동성대신 관방심의관은 일본정부가 보관하고있는 조선인강제련행과 관련한 명단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구일본군에 재적하였던 조선반도출신의 군인, 군속과 관련해서는 구륙해군에서 인사관계자료를 넘겨받은 후생로동성에서 각 륙군부대의 명부인 부재명부 14만 3 211명, 해군군인의 개인별군인리력서원표 2만 1 433명, 해군군속의 개인별군속신상조사표 7만 9 348명분을 등록하고있다. 그 등록자는 24만 3 992명이다. 그리고 후생로동성에서는 이러한 구륙해군자료이외에 이른바 조선인징용자 등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소 등에서 작성한 명단 32건을 보관하고있으며 그 등록자는 10만 7 911명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이 답변 하나만 놓고보더라도 일본정부가 조선인강제련행과 관련한 35만 1 903명의 명단을 보관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패망한 때로부터 60년세월 구일본군에 의해 강제련행되였던 우리 피해자들의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았을뿐아니라 일제의 다른 반인륜범죄와 관련한 수많은 문건들과 자료들을 은페시키고있다.

일본정부가 조선인강제련행과 관련한 명단과 문건들을 계속 숨기면 숨길수록 그에 대한 우리 인민의 진상조사사업은 더욱더 고조될것이다.

올해 2005년은 일제에 의해 망국적인 《을사5조약》이 날조된지 100년, 일제가 패망한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올해를 저들의 과거의 침략과 범죄의 력사를 청산하는 중요한 계기로 여기고 조선인강제련행범죄를 비롯한 과거의 중대인권유린범죄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규명하고 그 사실들을 전면공개하며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모든 과거피해자, 희생자유가족들에게 하루빨리 성근하게 사죄, 배상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것이다.

조선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진보적단체들과 굳게 련대하여 일제의 반인륜적과거범죄에 대한 진상조사사업을 계속 심화시키고 그를 폭로단죄하며 우리 과거피해자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활동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갈것이다.

조선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주체94(2005)년 1월 31일 평양

2. 일본의 고베제강소주식회사에서 감행된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로동신문》 주체97(2008)년 3월 9일부]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를 립증하는 자료와 문건, 증언자료들은 세기를 이어 오늘도 계속 발굴되고있다.

조선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에서는 일제의 군사적강점시기에 강제련행되였던 조선인피해자들과 관련한 명단에 기입되여있는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찾기 위한 조사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 일본의 고베제강소주식회사 본사공장에 강제련행되여 노예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을 찾아내고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의 일단을 자료적으로 립증한것과 관련하여 이 보고서를 발표한다.

1) 일본 고베제강소주식회사에 강제련행되였던 우리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경위

일본에서 활동하고있는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은 1972년부터 북남조선과 일본, 미국 등에서 해당 단체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조사활동을 하는 과정에 일제의 군사적강점시기에 강제련행되였던 조선인피해자들과 관련한 42만 7 129명의 명단을 입수하였다.

이 명단에는 과거 일제가 강제련행하였던 조선인피해자들중 태평양전쟁발발을 전후하여 징용, 징병, 《근로정신대》, 일본군성노예 등으로 끌려간 일부 피해자들이 포함되여있으며 《우끼시마》

마루침몰사건의 피해자들과 원자탄피해자들도 들어있다.

이들이 강제로 끌려간 지역을 보면 조선국내와 홋가이도, 효고현, 후꾸오까현, 나가사끼현, 사가현, 히로시마현, 아끼다현을 비롯하여 일본전역은 물론 중국과 필리핀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태평양상의 작은 섬들까지 포함되고있다.

명단에는 피해자들의 이름과 난날, 본적지 및 련행장소, 사망날자 등이 일본어로 기입되여있다.

조선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는 2003년말에 이 명단을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으로부터 넘겨받아 국내에 공개하였으며 2004년부터 이에 대한 번역사업을 한데 따라 각 도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들의 방조를 받으면서 공화국북반부출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있다.

일본도서인 《조선인강제련행조사의 기록》(효고편)에는 《1946년 6월과 7월 일본후생로동성 근무국은 제337호 〈조선인로무자에 관한 조사의 건〉이라는 통달을 지방장관(지사)들에게 보내여 전국의 근로처를 통하여 관하 공장, 기업소들에서 전시중의 조선인로무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의하여 당시 1만 3 477명의 조선사람들이 효고현에 있는 120여개의 공장, 기업소들에 강제련행되였는데 그가운데서 413명의 조선사람들이 고베제강소주식회사 본사공장에 끌려가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다고 기록되여있다.

우리는 조사과정에 고베제강소주식회사 본사공장에 끌려갔던 413명중 당시의 평안북도에서 강제련행된 사람이 140여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였다. 또한 이 명단 30권-1(효고현) 23페지의 《우메모도 산떼이》라는 사람이 현재 평양시 중구역에 살고있는 홍찬정(1926년 4월 20일생)이고 《가네다 메이규》와 《시라가와 뵤소》라는 사람들이 량강도 김형직군에서 살다가 사망한 김명규(1922년 9월 10일생), 백병송(1926년 7월 13일생)이며 22페지의 《가네야마 세이고》라는 사람은 《조선인강제련행조사의 기록》(효고편)을 통하여 김성호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2) 일제의 강제련행과 고베제강소주식회사에서 감행된 강제로동범죄

일제에 의한 조선인랍치, 강제련행범죄는 중일전쟁에 이어 태평양전쟁을 계기로 단말마적으로 감행되였다. 광란적인 전쟁은 일본의 막대한 인적 및 물적자원의 소모를 초래하고 국내의 병력과 로동력을 고갈상태에 빠지게 하였는데 당시 자료에 의하면 일제는 1944년에만 하여도 206만 8 284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을 징용, 징병으로 끌어가려고 획책하였다. [《전쟁책임연구》(일문) 제51호 50페지]

《전쟁책임연구》 제51호에는 《조선에서 징용동원대상으로 된 17살부터 40살사이의 남자인구는 390만 5 230명이므로 실질적으로 2명중 1명이라는 계산으로 된다. 1944년에만 하여도 17살부터 40살사이의 로동력인구의 약 50%에 달하는 사람들을 동원하려 하였던것이다.》고 씌여져있다.

일제는 침략전쟁에서 부족되는 로동력을 조선사람들에 대한 랍치, 강제련행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일제는 모집, 관알선(정부알선)의 방법으로 강제련행을 대대적으로 감행하였으며 조선사람들에 대한 징용, 징병을 완전히 의무화하였다.

일제의 강제련행은 회유와 기만, 체포와 랍치 등 육체적 및 정신적강제를 결합한 수법으로 감행되였으며 고베제강소주식회사 본사공장에 끌려간 청장년들의 경우도 결코 례외가 될수 없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김성호는《1943년 11월 어느날 촌장이 보내여 면사무소에 갔더니 마에다 시게사부로라고 하는 왜놈상급장교와 2명의 군인이 와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일본 고베제강소에 데려갈 인원을 모집하러왔다고 하면서 거기에 가면 징병에 나가지 않아도 되니 일본에 가라고 거듭 내리먹이였다. 나는 뿌리치고 도망치고싶었지만 우리 집안에 큰 화가 미칠것이 두려워 응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때 왜놈들의 설득이란 한갖 형식에 불과하였지 실제로는 강제였다. 그해 11월말 일제는 후창군(당시)에서만

도 100여명에 달하는 청장년들을 경찰소로 끌어갔다.》고 하였다.

일제는 조선에서 강제련행한 청장년들을 조선국내에서 일정한 견습과 훈련을 주어 일본으로 끌어갔다.

피해자 홍찬정은 40명의 청장년들과 함께 송림에 있던 겸이포제철소(당시)에 끌려가 약 1주일동안 작업현장에서 무보수강제로동을 강요당하였다고 하면서 《그후 왜놈들은 우리를 부산항으로 끌고가 관부련락선에 태웠다. 련락선에는 이미 1 000명정도의 조선사람들이 타고있었다. 시모노세끼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기차에 태워 고베제강소로 끌고갔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김성호는 100여명의 청장년들과 함께 강원도의 륙군련병소에 끌려가 약 3개월간 군사훈련을 강요당하였다고 하면서 《일제는 1944년 3월초에 그곳 련병소에 와있던 1 000여명에 달하는 청장년들을 관부련락선에 태워 시모노세끼항까지 끌어갔다. 그들가운데서 500명은 규슈방면에, 나머지 500명은 간사이방면으로 끌고갔으며 나를 포함하여 후창군에서 온 사람들은 고베제강소에 넘기였다.》고 하였다.

일제는 랍치, 련행한 조선청장년들을 강제수용소에 가두어넣고 노예적규률을 적용하였으며 가혹한 로동강도와 로동시간을 강요하였다.

피해자 홍찬정은 《고베제강소에 도착한 우리들을 판자로 만든 합숙에 들이밀었다. 우리의 대렬 및 생활을 감시, 통제한것은 나까무라라는 일본군 오장이였다. 다음날 나까무라는 아침일찍 전원을 깨우고 식사가 끝나기 바쁘게 우리를 제강소로 끌고갔다. 나는 제강소에서 용해공으로 일하였는데 뜨거운 로앞에서 하루에 14～16시간씩 일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왜놈들은 조금이라도 일손이 더디거나 저들의 비위에 맞지 않으면 덮어놓고 우리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년 남짓한 기간 이러한 노예생활이 매일 반복되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고베제강소에서의 강제로동기간에 휴식은 일체 없었으며 외출은 철저히 금지되고 로임이란 한번도 손에 쥐여보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차례진 하루 식사량은 한줌밖에 안되는 콩밥이나 납작보리밥, 콩깨묵에 절인 무우 몇점이 전부였다고 증

언하였다.

또한 피해자 김성호의 증언에 의하면 일제는 고베제강소에 끌고간 조선청년들을 매일 2교대제로 위험한 작업에로 내몰았으며 조선사람들은 아무런 로동안전시설이나 로동보호대책도 없는 무시무시한 고역장에서 혹사당하고 각종 사고와 고문, 미군의 공습등으로 하여 죽기가 일쑤였다.

피해자 홍찬정은 《어느날 나는 조선사람들에게 못된짓을 하는 오장 나까무라에게 된매를 안긴것으로 하여 헌병대감옥에 끌려가 8개월동안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다. 고문때문에 죽은 동료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 어디에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것이 없다.》고 하였다.

피해자 김성호의 증언에 의하면 일제의 패망직전에 자기와 함께 일하던 25명의 동료들이 일본해군에 징병으로 끌려가 오끼나와전선에서 전원이 무리죽음을 당하였다고 한다. 또한 1945년에 들어와 고베지구에 대한 미군의 대공습으로 하여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희생되였다고 하면서 일제가 패망하였을 때에는 고향에서 함께 강제련행되였던 100여명가운데서 50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상의 증언과 조사과정을 통하여 당시의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에 일본군부가 깊숙이 관여하고있었다는것과 태평양전쟁말기에 감행된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범죄의 특징을 찾아볼수 있었다.

그것은 첫째로, 1938년의 《국가총동원법》공포이후 일제가 조선사람들을 가장 많이 강제련행해갔던 곳이 주로 광산, 탄광이였다면 태평양전쟁말기에는 일본에서의 《결전》을 앞두고 국내의 군사기지건설장과 군수품제조공장들에 집중적으로 끌어간것이며 둘째로, 일제가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초기에는 주로 남부의 조선사람들을 강제징발해갔다면 태평양전쟁말기에는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랍치, 련행해간것이며 셋째로, 강제련행된 사람들이 인간이하의 노예로동과정에 각종 사고와 고문, 영양실조와 질병, 미군의 공습 등으로 억울하게 죽은 조선인희생자들의 유골이 일본땅에 마구 내버려지게 되였다는것이다.

3)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은 특대형랍치행위, 중세기적인 노예로동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는 그 방법과 내용, 형식에 있어서 중세기적인 노예사냥, 노예로동을 방불케 하는 특대형의 인권유린범죄로 된다.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이라는것은 일제가 19세기말부터 20세기 중엽까지 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한 기간 조선사람들을 온갖 악랄한 방법으로 랍치, 징발하여 죽음의 침략전쟁터와 고역장들에 내몰아 전쟁노예, 로동노예, 성노예로 만든 행위의 총체라고 말할수 있다.

일제는 1894년에 조선에서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인 거류민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많은 병력을 우리 나라에 들이밀어 청일전쟁을 일으켰는데 당시 청나라군대를 공격한다는 구실밑에 군수물자수송과 군사도로건설에 조선사람들과 우마차를 강제적으로 동원시켰다.

일제는 조선을 강탈하기 위하여 로일전쟁기간에만도 수십만의 조선사람들을 군수품수송과 철도부설 등 공사장에 끌어가 무보수강제로동을 강요하였다. 로일전쟁후 일제는 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전대미문의 군사파쑈통치를 실시하면서 조선에서의 강제련행을 국가정책으로 내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국가기구와 악법들까지 동원하여 인적략탈에 더욱 광분하였다.

일제는 조선강점기간 무려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을 닥치는대로 랍치, 징발하여 침략전쟁터들과 고역장들에 총알받이, 로동노예로 내몰았고 20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끌어가 가혹한 성폭행을 하였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일제가 조선강점기간에 실시한 강제련행방법가운데서 가장 전형적인 방법의 하나가 랍치였다는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기간에 진행된 피해자들에 대한 증언조사에서 이미 밝혀졌을뿐아니라 최근년간에 입수된 일본정부와 기업

들의 공식문건과 자료들에 의해서도 뚜렷이 립증되고있다.

일본도서인 《전시기 식민지통치자료》 제7권에는 일본내무성이 1944년에 조선에서 진행한 주민동향 및 읍, 면행정상황과 관련한 보고서가 편집되여있는데 여기에는《징용과는 별도로 다른 모든 방법에 의한 출동도 랍치와 같은 상태이다. 그것은 만약 사전에 이것을 알리면 모두 도망치기때문이다. 그래서 야간습격, 유괴등 각종 방책을 취하여 인질적인 략탈, 랍치를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있는것이다.》고 씌여져있다.

또한 일본 도다건설회사가 발행한 《사보》(1942년 9월 25일부)에는 1942년 8월 12일 일본후생로동성에서 진행된 회의와 관련한 기사가 게재되였는데 여기에는《(조선)반도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랍치하여 주로 군관련공장들에서 일을 시켰다.》, 《어쨌든 강제적으로 끌어와 가혹한 로동을 강요하기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도주자가 나왔다.》고 기록되여있다.

《혹가이도와 조선인로동자－조선인강제련행실태보고서》(1999년 70페지)에는 일제가 1944년 5월에 조선에서 혹가이도에 100명을 강제련행해올데 대한 지시를 내린것과 관련하여 《…군청직원, 경찰서 및 면직원을 총동원하여 잠자는 곳을 습격하거나 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리유에 관계없이 련행하는 등 상당히 무리한 방법을 취하여 22일의 출발날자에 겨우 맞추어 84명에 대하여 령장을 교부하고 수송시키는 사건이 있었음》이라고 서술되여있다.

이외에도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감행한 강제련행이 사실상 랍치였다는것을 인정하는 자료와 문건들은 많다.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죄로서 일본정부는 마땅히 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일본당국은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을 비롯한 반인륜적범죄의 력사에 대하여 옳바로 반성하고 사죄하며 배상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있으며 오히려 그 죄악의 력사를 은페, 정당화하면서 저들의 과거범죄청산의무를 털어버리기 위해 오그랑수를 쓰고있다.

일본정부는 조선인강제련행범죄, 랍치범행 등 반인륜적범죄에 대하여 《실정법상의 배상근거》와 《증거》가 없다고 우겨대고있으며 특히 2007년 3월 웰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조일관계정상화실무그루빠회의에서 일제의 과거죄행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수 없다고까지 공공연히 떠벌이였다.

강조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일본정부가 패망한지 반세기이상이 지난 오늘까지도 가장 큰 피해국인 우리 공화국과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았고 한푼도 배상하지 않았을뿐더러 오히려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는것이다.

일본당국은 우리에 대한 과거청산은 안중에도 없이 더는 존재하지도 않는 《랍치문제》를 계속 집요하게 들고나와 6자회담앞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해보려고 책동하고있으며 그것을 구실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력을 보다 강화하고있다.

또한 일제가 감행한 조선인강제련행범죄의 직접적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말살하기 위하여 광분하고있다.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문제는 그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정신적 및 육체적고통이 과거에 이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있는것으로 하여 더는 미룰수 없는 초미의 인권문제, 인도주의적문제로 되고있다.

일본정부는 하루빨리 과거의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에 대한 법적책임을 인정하고 살아있는 피해자들은 물론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사죄하고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일본정부는 강제련행범죄와 관련한 자료들과 문건들을 시급히 전면공개하고 그 진상을 책임적으로 밝혀야 하며 범인들을 찾아내여 국내외의 해당한 재판소들에서 형벌을 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을 당장 걷어치우고 사회앞에 그리고 후대들에게 과거력사의 진실을 옳바로 알려주기 위한 교육사업을 진행하여 침략과 범죄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것을 실천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것이다.

일본이 21세기에도 과거범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2중, 3중의 죄를 범하게 되며 그것은 후대들에게 더욱 무겁게 가해지게 될것이다.

조선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련대협의회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진보적단체들과의 련대와 련합을 강화하여 일제의 반인륜적범죄에 대한 진상조사를 계속 심화시키고 그를 폭로단죄하며 우리 강제련행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피맺힌 원한을 풀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다.

조선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주체97(2008)년 3월 8일 평양

3. 과거 일본의 《아소탄광》에서 감행된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로동신문》 주체98(2009)년 7월 26일부]

지금 국제사회계는 일본당국자들이 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를 비롯하여 과거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감행한 천추에 용납 못할 반인륜적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있는데 대하여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 유가족협회는 최근 일본수상 아소 다로의 조상들이 경영한 《아소탄광》에서 지난날 수많은 조선사람들에게 노예로동을 강요한 관련자료와 피해사실들을 확인한것과 관련하여 이 조사보고서를 발표한다.

1) 아소가문에 의하여 감행된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실태

일본의 아소세멘트주식회사가 자기 회사의 연혁을 소개할 목적으로 1975년에 발행한 도서인 《아소백년사》에는 아소그룹계렬기업들의 창설경위와 팽창과정 등이 서술되여있다.

아소가문은 일찌기 조선을 대륙침략의 병참기지, 군사교두보로 전변시키기 위한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책동에 적극 가담하여 우리 인민들을 착취하고 우리 나라의 무진장한 자연부원을 략탈해가는데 앞장섰다.

침략전쟁물자확보에 절실히 요구되는 석탄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던 그 시기 아소그룹의 창업자라고 할수 있는 아소 다끼찌(당시 일본수상의 증조할아버지)는 규슈지방의 지꾸호탄전들

을 개발하여 막대한 돈을 긁어모았으며 탄광뿐아니라 점차 철도, 금융부문에까지 촉수를 뻗치였다.

그는 1927년에 일제의 조선총독부로부터 당시 서산군 안면면의 6 000여정보의 산림을 사들여 안면도림업소를 개설한 후 8 000여명의 섬주민대다수를 로무자로 고용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와 그는 당시 김화군 원동면에 있던 금광산(269만 8 000평)과 안변군 서곡면에 있던 보성금광산(294만 5 000평)을 헐값으로 매수하고 로무자들을 가혹하게 부려먹으며 막대한 리윤을 짜냈다.

그의 손자인 아소 다가요시는 1934년에 할아버지로부터 아소광업주식회사 사장직을 넘겨받은 후 탄광과 광산개발, 세멘트공장, 철도, 발전소건설 등에 손을 뻗치면서 기업규모를 확대하였으며 조선에서 고률리윤을 추구하기 위해 날뛰였다.

그는 1943년에 김화군의 원동금광산을 원동광업소로 개칭하고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고역에로 내몰았다.

아소가문은 1920년대초부터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저들의 탄광들에 끌어다가 가혹한 노예로동을 강요하였다.

일본잡지인 《전쟁책임연구》 제51호에는 《…1928년 1월현재 〈지꾸호지방조선인주재조사〉에는 조선사람이 가장 많은 곳은 미쯔비시계렬탄광이며 〈아소탄광〉도 앞자리에 있었다.》고 씌여져있다.

아소광업주식회사에서는 후꾸오까현 지꾸호지역과 사가현에 많은 탄광들을 가지고있었는데 이를 《아소탄광》이라고 불렀다.

일제는 아시아대륙에 대한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전선이 더욱 확대되는데 따라 부족되는 로동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일본으로 끌어갔으며 로무동원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조선사람들에 대한 강제련행을 기본수단으로 하였다.

1939년 가을부터 태평양전쟁도발직전인 1941년까지에만도 일본의 탄광들에 끌려간 조선사람의 수는 5만 8 000여명에 이르렀으며 그가운데서 《아소탄광》이 집중된 후꾸오까현 지꾸호지역에 강제련행된 조선사람의 수는 2만 1 000여명이나 되였다.

1939년부터 1945년사이에 후꾸오까현 지꾸호지역의 탄광들에만도 15만명이상의 조선사람들이 강제련행되였으며 《아소탄광》에도 적지 않은 조선사람들이 끌려갔다.

일본후생로동성 근무국이 1946년에 작성한 《조선인로무자에 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후꾸오까현과 시가현내의 《아소탄광》에는 1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이 강제련행되였다.

아소광업주식회사는 구일본정부와 공모결탁하여 1920년대초부터 여러 형태의 모집이라는 간판밑에 조선사람들을 《아소탄광》에 끌어갔으며 《국가총동원법》공포이후에는 관알선(정부알선), 징용 등의 방법으로 강제련행, 랍치해갔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김무봉은 《나는 일제에 의하여 1938년 5월에 후꾸오까현 〈아소탄광〉에 끌려가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막장에서 갖은 고통을 당하였다.》고 증언하였다.

1939년 당시 일본석탄광업련합회 리사회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아소탄광》에서 로무담당자들이 조선인강제련행에 직접 관여한데 대하여 《아소계렬의 아따고탄광에서 로무주임을 한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오래동안 조선에서 순사를 하면서 조선말을 할수 있는 사람을 로무담당자로 선정하였으며 조선의 어느 지역에서 로동자들을 모집할수 있는지 현지조사도 하게 하였다.

그러한 준비에 따라 경제동원이 시작되면 〈아소탄광〉에서는 매우 순조롭게 조선사람들을 모집할수 있었다고 한다. 조선총독부와도 관계를 가지고 란폭한 방법으로 조선사람들을 끌어왔다고 한다.》고 폭로하였다.

《아소탄광》에서는 조선에서 끌어온 청장년들에게 노예로동을 강요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무봉은 《우리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하루 14시간이상이나 갱안에서 혹사당하였다. 우리에게 차례진 식사란 보리로 만든 주먹밥 한덩어리뿐이였다. 조선사람들은 대체로 갱안에 들어가 굴진과 채탄 같은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였다.

1940년말 갱안에서의 락반사고로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죽었다.》고 증언하였다.

당시 산나이탄광의 일본인 로무계원은 《채탄작업은 조선사람들이 하였다. 아침에 늦게 나가는 사람이 6시, 일찍 나가는 사람이 새벽 3시경이였고 퇴근은 밤 10～11시, 늦을 때에는 새벽 1시경이였으니 결과적으로 잠자는 시간은 2～3시간정도였다. 조선에서 끌려온 청장년들은 탄광합숙에서 살았다. 죠와료라는 합숙이 5동 있었는데 한개 동에 150명씩 들이밀어 모두 750명이였다.

합숙에서는 물론 일터, 거리에 나갈 때에도 그들을 감시하였으며 경찰과 헌병까지 개입하여 로동강도를 높이였다. 큰 기업은 조선에 직접 가서 로동자들을 끌어왔다.》고 실토하였다.

《아소탄광》에서는 조선사람들에 대한 민족적멸시와 학대행위를 강화하면서 그들을 아무런 로동안전담보도 없는 위험한 갱안에 들이밀어 혹사시켰는데 이로 하여 수많은 청장년들이 갱안에서 억울한 죽음을 강요당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 아따고탄광에 근무하였던 한 일본사람은 《첫 교대로 들어간 탄부들은 갱에서 나오자마자 그날 밤에 또다시 채탄작업에 내몰리웠다. 전쟁이 확대되자 우리 아따고탄광에도 헌병들이 와서 작업에로 내몰았다. 갱내에는 조선사람뿐이였다.》고 말하였다.

후꾸오까현 현청문서에 편집된 《극비, 1944년 3월 이입반도인 로무자에 관한 조사표, 특별고등과》라는 문건에는 1944년 1월말 당시의 조선인강제련행자료와 관련한 도표가 있다.

도표에 의하면 후꾸오까현에서 조선청장년들이 가장 많이 끌려가있은 곳이 《아소탄광》으로서 그 수는 7 996명이며 그중 도주자는 4 919명이고 사망자는 56명이라고 기록되여있다.

《아소탄광》계렬의 하나인 요시구마탄광에서는 1936년 10월 25일 갱내에서 화재사고가 일어나 조선사람 24명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참사가 빚어졌다.

이에 대하여 당시 재일조선인이 발행하고있던 《민중시보》에는 《…위험한 로동에서 생계의 길을 찾으며 형언할수 없는 로동강도와 한심한 로동조건밑에서 노예와 같이 일하고있던 사람들이

죽었다.

유가족들은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 요시구마탄광내의 화재는 지난 25일 30여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아직까지 생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15명에 달하였다.》고 씌여져있었다.

이외에도 남조선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하여 확인된 60여명의 피해생존자들의 증언을 비롯하여《아소탄광》에서 강요된 노예로동의 실태를 립증하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자료들은 적지 않다.

지난날 아소가문이 탄광뿐아니라 세멘트와 철도, 전력 등의 기업들을 경영하고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아소그룹의 공장, 기업소들에 강제련행된 조선사람들의 수는 더 많았을것으로 추산된다.

이상의 증언과 자료들을 통하여 아소가문이 조선에서 다량의 목재와 금을 비롯한 자연부원을 략탈해갔을뿐아니라 일제의 조선총독부와 공모하여 1만여명의 조선청장년들을 강제련행하고 혹사시키였으며 그로 하여 많은 조선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2) 과거청산에 대한 아소가문의 태도와 립장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은 구일본정부와 군부가 모든 권한을 총발동하여 감행한 범죄로서 중대한 인도에 대한 죄, 노예범죄, 전쟁범죄로 된다.

법적시효에 관한 국제관습법과 성문법에는 기본인권과 관련한 범죄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혀져있다.

구일본의 책임은 국가의 권리와 의무계승의 국제법적원리에 따라 계승정권인 현 일본정부에 그대로 이전되고있다.

따라서 구일본정부와 공모하여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한 일본기업들의 후신회사들도 마땅히 그에 대한 법적, 도의적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일본정부와 기업들은 과거에 저지른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에 대하여 오늘까지도 인정도 청산도 하지 않고있으며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고 정당화하면서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이러한 책동에 앞장서 날뛰고있는것이 바로 현 일본수상 아소 다로이다.

아소그룹의 창업자인 아소 다로의 증조할아버지 아소 다끼찌는 1911년부터 1925년까지 《대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 의원으로서 일제의 대조선침략정책작성에 깊이 관여하였으며 1921년부터는 일본석탄광업련합회 회장으로서 제국주의침략세력들과 결탁하여 식민지조선에서 인적, 물적자원을 닥치는대로 빼앗아간 악착한 략탈자, 흉악한 군국주의자였다.

아버지인 아소 다가요시 역시 선대의 전철을 밟아 일본의 식민지파쑈통치시기에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랍치련행하여 억압, 착취하였으며 일제가 패망한 후에는 조선인랍치만행에 대한 응당한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았을뿐아니라 오히려 미국을 등에 업고 우리 인민에게 갖은 못된짓을 일삼은 추악한 자본가, 반공보수분자였다.

그로 말하면 1949년부터 8년간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장인이자 제2차 세계대전후 조선에 전승국의 지위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이전 수상이였던 요시다 시게루와 함께 1951년 9월에 미국을 행각하여 《쌘프런씨스코강화조약》과 《일미안보조약》을 체결하는데 적극 가담한자이다.

특히 그는 1950년대초 미제가 일으킨 3년간의 조선전쟁시기에 일본전토가 미군의 출격기지, 병참기지, 수리기지로 제공된 기회를 리용하여 석탄을 비롯한 전략물자들을 팔아 막대한 치부를 하였다.

바로 이 군국주의가문의 피줄을 이은 아소 다로는 1979년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때로부터 수상자리에 올라앉은 오늘까지 자기 가문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반인륜적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추구하면서 조선민족배타주의정신이 꽉 들어찬 국수주의자로서의 정체를 낱낱이 드러

내놓았다.

그는 2003년 5월 31일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으로 있을 때 도꾜대학에서 강연을 하면서 창씨개명은 조선사람들이 스스로 요구한것이라느니, 조선말도 일본사람이 배워준것이라느니 하면서 력사를 부정하는 터무니없는 망발을 줴쳤다.

외상직에 있을 때인 2005년 12월 일본국회 참의원《오끼나와 및 북방령토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그는 민주당출신의원이 앞으로 아소광업주식회사에서 감행한 조선인강제련행과 관련한 자료들을 제출할 의향이 있는가고 질문한데 대하여 《그것은 지난날의 자료로서 〈국가총동원법〉시대의 일이다. 앞으로 관계자료가 있는지 조사하려고 생각한다.》고 하고는 지금까지 그 결과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

그는 2005년 11월 26일 가나자와시에서 진행된 강연에서 당시 수상 고이즈미의 야스구니진쟈참배문제와 관련하여 그에 대해 말하는것은 중국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뿐이라느니 뭐니 하는 망발을 줴쳐 일본의 침략력사를 극구찬양하는 우익정치가로서의 정체를 다시금 드러내놓았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수상의 승인과 묵인밑에 과거범죄사실이 력사교과서에서 삭제, 외곡되고 전범자들이 《렬사》로, 《영웅》으로 떠받들리우고있다.

지난(2008년) 4월에는 수상이 직접 특급전범자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구니진쟈에 봉납을 하고 그뒤를 이어 국회의원 87명이 무리지어 그곳에 몰려가 참배놀음을 벌리는 추태를 부리였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수상이 선두에 나서서 《랍치문제 및 핵문제, 미싸일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반공화국압살책동과 반총련탄압소동에 광분하고있는것이다.

올해(2009년)에 들어와서만도 그는 유럽행각시에 과거 일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반성은 한마디도 없이 《랍치문제》를 들고나와 또다시 우리를 악랄하게 비난하였는가 하면 우리 공화국의 2차핵시험이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되며 동북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현저한 해를 끼치는것》으로 되기때문

에《결코 용인할수 없다》는 악담을 퍼부었다.

최근 아소 다로를 비롯한 일본당국자들은 우리의《핵 및 미싸일문제》를 걸고 대조선《단독제재》를 결정하고《선제공격》이니 뭐니 하고 떠드는가 하면 핵무장화를 비롯한 군비증강책동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조상들이 이루지 못했던《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해보려고 미쳐날뛰고있다.

죄는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으며 은폐한다고 하여 무마될수 없다.

일본의 과거청산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과거 일본이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모든 인적, 정신적, 물적피해에 대해 철저히 사죄하고 배상해야 하는 문제로서 조일관계에서 기본을 이루는 문제이다.

그것은 또한 일본이 유엔헌장에 못박혀있는 적국의 오명에서 벗어나 국제적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 문제는 오늘 일본이 운운하는 인권과 문명, 인도주의와 법치의 진가를 검증하는 시금석으로 되고있다.

수상 아소와 일본의 정부, 기업들은 마땅히 과거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모든 반인륜적범죄행위들에 대하여 그 진상을 명백히 조사, 공개하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철저히 사죄, 배상하며 희생자들의 유해를 모두 찾아 유가족들의 희망에 따라 그들의 고향과 가족들이 사는 곳에 안장하고 그와 관련된 범죄자들을 찾아내여 책임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본사회에 군국주의사상과 민족배타주의감정을 고취하는 비렬한 책동과 반총련탄압소동을 걷어치우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합법적해외동포조직인 총련의 활동과 조선인강제련행범죄의 가장 비참한 피해자이며 그 후손인 재일동포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일본당국자들은 군국주의적망상에서 벗어나 시대착오적인 력사외곡과 군국화책동을 당장 그만두고 아시아와 세계인민들과의 신뢰구축에 나서야 한다.

2010년은 일본이 패망한지 65년이 되는 해이다.

과거 징병, 징용으로 끌려가 인간생지옥에서 노예로동을 강요

당한 피해자들은 물론 반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도 일제에 의해 강제련행된 혈육들의 생사여부를 모르는 유가족들을 비롯한 전체 조선인민의 일본에 대한 적개심과 복수심은 극도에 이르고있다.

아소는 과거 조선인강제련행, 랍치만행을 비롯한 반인륜적죄행을 저지른 범죄자의 후예로서 이에 대한 법적, 력사적, 인륜도덕적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고 시간이 더 가기전에 그 해결을 위한 정치적용단을 하루빨리 내려야 할것이다.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 유가족협회는 앞으로도 세계 여러 나라의 진보적단체들과의 련대와 련합을 강화하여 일제의 반인륜적범죄를 폭로단죄하고 그 해결을 요구하는 투쟁을 보다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다.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 유가족협회
주체98(2009)년 7월 25일 평양

4. 일본의 미쯔비시중공업주식회사 고베 조선소에서 감행된 조선인강제 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로동신문》 주체98(2009)년 8월 21일부]

지난날 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한 일본은 관권과 군권, 기업들을 총발동하여 조선청장년들에 대한 강제련행과 강제로동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조선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는 최근 일본의 미쯔비시중공업주식회사(당시) 고베조선소에서 강제련행되여 노예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을 찾아낸것과 관련하여 이 조사보고서를 발표한다.

1) 구일본정부와 대기업체들이 감행한 조선인강제로동실태

일본에는 일제가 저지른 일본군성노예와 강제련행범죄 등을 검토하고 관련자료들을 널리 소개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전쟁책임자료쎈터가 있다.

이 단체의 기관지 《전쟁책임연구》 제51호(2006년)에는 《조선인강제로동전국일람표가 작성됨으로써 약 1 550개소의 강제로동현장을 확인하였다. 그외에도 강제로동이 있었다고 볼수 있는 현장은 많지만 현시점에서 력사자료와 증언 등으로 확인할수 있는 곳은 약 1 550개소인것이다. 조사가 추진된다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것이다.》고 씌여져있다.

규슈북부지역과 혹가이도에 각각 10만명이상의 조선사람들이 끌려간것을 비롯하여 일본의 거의 모든 지역의 공장, 기업소, 탄

광, 광산들과 발전소, 군사기지건설장 등에 강제련행된 조선사람들의 수는 헤아릴수없이 많다.

이 고역장들은 대다수가 미쯔비시중공업주식회사를 비롯한 일본의 대기업체들에 의하여 관리운영되고있었다.

《전쟁책임연구》 제51호에는 《미쯔비시광업은 아래의 탄광, 광산들에 6만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을 련행하였다. …발전소공사와 지하공장건설에서는 2 000～3 000명이 련행된 일도 많다.》고 씌여져있다.

일본 시즈오까현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의 조사에 의하면 미쯔비시중공업주식회사에 강제련행된 조선사람들의 수는 탄광 및 광산부문에 약 6만명, 중공업을 비롯한 다른 부문들까지 포함하면 10여만명으로 추산될수 있다고 한다.

조선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는 일제강점시기에 강제련행되였던 조선인피해자들과 관련한 42만 7 129명의 명단에 기초하여 공화국북반부출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있다.

조사과정에 미쯔비시중공업주식회사 고베조선소에 끌려간 공화국북반부출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증언을 립증하는 여러 자료들을 확인할수 있었다.

일본도서인 《조선인강제련행조사의 기록》(효고편)에는 1946년 6월 일본후생로동성이 발표한 《조선인로무자에 관한 조사결과》가 편집되여있는데 그에 의하면 1 984명의 조선사람들이 미쯔비시중공업주식회사 고베조선소에 징용으로 끌려가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다고 한다.

이번 조사과정에 고베조선소에 끌려갔던 1 984명중 대부분이 당시의 평안북도와 평안남도에서 강제련행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였다.

또한 이 명단 30권－3(효고현) 202페지의 《나까가와 쯔루》라는 일본이름으로 기입된 사람이 삼석구역 장수원동에 살고있는 황보학(1923년 5월 21일생)이고 238페지의 《야마모또 진도꾸》와 274페지의 《아오야마 운가꾸》라는 사람들이 삼석구역 장수원동에서 살다가 사망한 김인덕(1923년 2월 5일생)과 리운학(1920년

8월 4일생)이며 이 명단에는 없지만 고베조선소에 《오까무라 세이우》라는 일본이름으로 강제련행되였던 사람이 삼석구역 성문 1동에서 살다가 사망한 로정우(1923년 1월 28일생)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2) 미쯔비시중공업주식회사 고베조선소에서 감행된 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

미쯔비시중공업주식회사에서 1905년에 설립한 고베조선소는 일제가 아시아대륙에 대한 침략전쟁을 개시하면서 기업규모가 더욱 확대되였다.

일본에서 1957년에 발행된 고베조선소의 설립경위와 팽창과정을 편집한 출판물인 《신 미쯔비시고베조선소 50년사》에는 구일본정부와 군부가 1940년 3월에 고베조선소를 해군이 직접 관리하는 공장으로 지정하였다고 하면서 《…중요산업종사자외에 징용, 조선청소년의 징용, 학도동원, 〈녀자근로정신대〉, 특유기능자로 결성된 봉공대 등에 의하여 전쟁이 끝날 당시 종업원수는 3만 1 000명에 달하였다.》고 씌여져있다.

이 조선소는 1944년 1월 17일 군수회사로 지정되여 침략전쟁수행에 필요한 군수품생산을 다그쳤는데 1937년에 종업원수가 9 000여명이였다면 태평양전쟁말기에는 그 수가 약 4배로 늘어났다고 한다.

이것을 놓고도 일제가 침략전쟁을 태평양지역에로 확대하면서 각종 함선을 얼마나 긴박하고 절실하게 요구하고있었는가를 알수 있다.

일제는 태평양전쟁말기에 부족되는 로동력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선에서 수많은 청장년들을 일본의 각지에 끌어갔다.

고베조선소에도 수천명의 조선청장년들이 끌려가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다.

일본에서 1973년에 출판된 고베조선소가 자리잡고있던 와다미

사끼지역의 력사를 수록한 도서인 《와다미사끼의 력사》에는 고베조선소의 합숙관리원으로 근무한바 있는 노마 야스오가 쓴 《마이꼬호꼬꾸료(합숙이름)의 추억》이라는 제목의 글이 편집되여있는데 여기에는 《…전역이 확대되는데 따라 내지(일본)에서는 로동력이 점차 고갈되였으므로 미쯔비시중공업 고베조선소에서도 조선의 북쪽지역 사람들을 징용으로 보충하게 되였으며 마이꼬호꼬꾸료가 그들을 수용하는 합숙으로 전환되였다. …조선의 북쪽에서 온 사람들은 신체검사에 합격된 힘이 센 남자청년들로서 내지에 처음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대다수였다.》고 씌여져있다.

일제의 이 련행은 랍치와 유괴, 관권과 군권에 의한 강요 등 육체적 및 정신적강제가 결합된 방법으로 감행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리운학은 《1944년 8월 어느날 밭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니 구장이 징용령장을 주며 다음날 아침 주재소 앞마당에 모이라고 하였다. 어떻게 하면 징용을 피할수 있겠는가 생각하였으나 나대신 우리 가족들중 다른 사람이 가지 않으면 안되고 또 부모들이 피해를 당할수 있으므로 도망칠 생각을 단념하였다. 평양에 가보니 이렇게 모여온 사람이 수천명이나 되였다. 우리는 전용차에 실리여 부산으로 갔는데 차량만도 18개나 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황보학은 1944년 8월에 징용령장을 받았다고 하면서 《평양역에 도착하니 우리 평안도에서만도 2 000여명이나 되는 청장년들이 모여있었다. 칼을 찬 순사들이 철저히 감시하면서 나다니지 못하게 하였다. 우리들은 하루만에 부산으로 갔다.》고 하였다.

피해자 로정우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1944년 중엽에 구장의 조카대신 징용으로 일본에 갔는데 일제는 평양에서 그를 포함하여 여러 지방에서 강제련행하여온 1 000여명의 청장년들을 싣고 경상도의 어느 한 역에서 또 1 000여명을 기차에 태워 부산으로 끌고갔다.

일제는 부산에 도착한 이들을 외진 섬에 끌고가 검진하고 몸소독을 시킨 다음 관부련락선에 태워 일본 시모노세끼로 끌어갔다.

피해자 황보학은 《부산에서 시모노세끼까지는 8시간 걸리는 배길이였는데 우리는 짐짝처럼 선창에 처박히여 제대로 먹지도 못

하는데다가 파도가 심하여 모두가 게우고 설사하고 쓰러져있다나니 선창은 그야말로 짐승우리를 방불케 하였다. 한 동료가 고통속에 몸부림치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어느새 일본놈 여럿이 그를 끌어내다 바다에 던져버렸다. 모자와 팔에 미쯔비시표식을 단 감독들이 전기간 우리를 감시하였다. 인원점검을 할 때마다 2 000명이 다 있다는것을 확인하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하였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일제는 강제련행한 조선청장년들을 선창에 몰아넣고 먹을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시모노세끼에 도착하자마자 기차에 갈아태워 고베조선소로 끌어갔는데 그들은 전기간 순사나 사복경찰, 감독 등의 삼엄한 감시를 받았다고 한다.

일제는 강제련행, 랍치한 조선청장년들을 강제수용소와 같은 곳에 가두어넣고 살인적인 작업조건에서 오랜 시간의 중로동과 중세기적인 노예규률을 강요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황보학은 《일제는 고베조선소에 도착한 우리들을 합숙에 들이밀었다. 들어가보니 바닥에서는 곰팡내가 물씬물씬 나고 빈대가 많아 도무지 잠을 잘수가 없었다. 숙소는 작업장으로부터 1.5km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기차로 통근하였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간단히 요기한 다음 기차에 올라야 하였다. 군대식으로 소대, 중대, 대대를 편성하고 류동할 때에는 대렬을 지어야 하였다. 죄수처럼 앞가슴에 명판을 달고 번호로 통용되였는데 숙소와 통근길, 작업장의 어느 구간에서나 항상 철저한 감시속에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이 조선소에서는 수천t급의 잠수함과 1만t급의 전투함선, 2만t급의 운반선 등 각종 함선을 건조하였다고 하면서 《작업도중 잘못하거나 오작을 내면 일본인감독들은 늘 가지고다니는 손바닥만큼 널직하고 한발정도 되게 길다란 가죽채찍으로 사정없이 후려치고 발로 차군 하였다. 제일 힘들고 어려운 작업들은 조선사람들에게 시켰는데 굵은 쇠못을 불에 달구어 선체의 안쪽과 바깥쪽에서 때리는 작업은 매우 위험하였다. 손바닥너비만 한 널판자우에서 하는 작업이였는데 허공중에서 까딱 잘못하면 여라문길 되는 바닥에 떨어져 죽게 된다. 사고는 매일과 같이 났는데 사망자와 부상자가 없는 날이 없었다. 우리 평안도에서 2 000명정도 끌려갔

는데 돌아온것은 500명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로정우는《공장에서는 3주일동안 노예처럼 복종하는 훈련을 주고서야 작업장에 내몰았다. 하루 12∼14시간씩 일하였는데 식사라는것은 콩깨묵, 납작보리 등에 쌀알 몇알이 드문드문 섞인것이였다. 로임이란 없었고 앓아도 치료를 해주지 않았다.》고 하였다.

《조선인강제련행조사의 기록》(효고편)에는 당시 미쯔비시중공업주식회사 고베조선소아래 수송회사 사원의 증언도 있다.

그는《제1차로 2 000명, 제2차도 2 000명의 조선사람들이 련행되였다고 들었다. …청년들은 평안도에서 왔다고 말하였다. …충분한 식사도 제공받지 못하고 굶주림에 시달렸을것이다.》고 실토하였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1945년에 들어와 고베시에 대한 미군의 공습이 자주 진행되였다.

일본사람들은 안전한 방공호를 만들어놓고 그안에 들어가있었지만 조선사람들은 대피할 곳이 없어 기총탄과 소이탄, 폭탄파편에 맞아죽었다.

이상의 증언과 조사과정을 통하여 고베조선소에 2차에 걸쳐 평안북도와 평안남도, 경상도 등 여러 도들에서 4 000여명의 청장년들이 강제련행되였다는것, 평안북도와 평안남도의 2 000여명의 청장년들가운데서 가혹한 강제로동과 각종 사고, 미군의 공습 등으로 희생됨으로써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 수백명밖에 되지 않았다는것, 구일본정부가 1939년부터 조직적으로 감행한 조선인강제련행범죄에 일본기업들이 깊숙이 관여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3)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의 주범은 구일본정부, 공모자는 일본기업체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의 책임은 구일본정부와 함께 일본의 대기업체들에도 있다.

그것은 첫째로, 당시 일본의 대기업체들과 경영단체들이 정부에 조선인강제련행정책을 책정하고 추진시킬것을 요구하였기때문이다.

일제가 중일전쟁을 도발한이후 로동력부족이 심각하게 제기되였던 일본의 대기업체들과 경영단체들은《조선인로무자의 집단적이입》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가 1939년 7월 《국민징용령》을 공포함으로써 대기업체들과 경영단체들은 조선청장년들에 대한 련행을 법적으로 담보받게 되였다.

강제련행방식에는 모집, 관알선(정부알선), 징용 등이 적용되였는데 그 어느것이나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가 동반되였지만 대기업체들과 경영단체들이 관여하지 않고서는 집행자체가 절대로 불가능하였다.

《전쟁책임연구》제7호에는《모집은 …〈로무동원계획〉등에 기초하여 실시된 련행방식으로서 그 특징은 기업의 신청에 따라 모집지역, 인원, 기간은 조선총독부에서 할당하고 모집활동 그자체는 기업이 책임지고 진행한다는 점이였다. 관알선은 1941년도의 〈로무동원실시계획에 의한 조선인로무자의 내지이입요강〉등에 기초하여 1942년 2월부터 실시된 련행방식으로서 그 특징은 〈종전의 민간일반모집에 의한 집단이입을 더욱 발전시켜 로무자공급을 조선총독부 및 지방청에 이행시킴으로써 각 출신지별로 대렬을 편성시킨 점〉이였다. …노예사냥을 담당한것은 행정과 경찰, 조선로무협회였지만 조선사람들의 〈이입〉을 신청하고 징발된 조선사람들을 일본과 싸할린, 남방지방에 련행한것은 기업의 로무계였다. 징용은 도지사의 이름으로 징용령장을 보내며 특정한 시일에 군청까지 나오도록 명령하였는바 징병과 같이 강제력을 가지고있었다.

…징용의 경우에도 매개 기업의 징용신청이 불가결의 조건으로 되여있었다.》고 씌여져있다.

둘째로,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로 끌려간 조선청장년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 민족차별을 실행하는것이 바로 일본의 대기업체들과 경영단체들이였기때문이다.

당시 일본의 대기업체들과 경영단체들에서는 정부가 날조한 각종 악법들에 따라 조선청장년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대오의 조직, 집단숙식, 작업감독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선인로무자지도요강》과 같은 폭압적인 규정들을 조작하였으며 조선사람들에 대한 제재방법을 정한 《특별지도법》이라는것까지 만들어놓고 강제련행된 조선사람들에게 식염주사, 경찰서감금 등 갖은 제재와 형벌을 가하였다.

일본석탄통제회 로동부가 작성한 《탄광로무통계표》에 의하면 1943년 4월현재 일본각지의 주요 탄광 179개 사업소에 끌려간 8만 3 299명의 조선사람중에 채탄, 굴진 등 갱내에서 힘든 로동에 종사한 사람은 92.3%를 차지하였다고 한다.(《전쟁책임연구》 第7호 49페지)

이 한가지 사실을 보아도 일본의 기업들이 조선사람들에 대한 민족적차별을 얼마나 강화하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

셋째로, 일본이 패망한 후에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에 관여한 일본의 대기업체들이 그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미지불금조차 전혀 반환하지 않고있기때문이다.

《전쟁책임연구》 제7호에는 《1946년 10월 12일 일본후생로동성은 〈조선인로무자 등에 대한 미지불금 기타에 관한 건〉이라는 통첩을 발표하고 미지불금을 공탁으로 처리하도록 관계기업체들에 지시하였다. 공탁의 법적근거로 된 민법 제494조에 〈공탁자는 지체없이 공탁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업체들은 그 의무를 리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조선인로동자와 유가족들은 미지불금이 공탁된지도 알지 못하였으며 공탁후 10년이 지나자 공탁금에 대한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그 시효가 소멸되고말았다. …〈미지불금공탁보고서〉에는 본인의 본적지가 밝혀져있으며 적어도 유가족과 가족들의 거주지가 명백하였다. 일본정부의 지시에 따라 강행된 미지불금에 대한 공탁은 공탁이라는 구실밑에 미지불금을 동결시키고 몰수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았다.》고 씌여져있다.

넷째로, 일본의 대기업체들이 강제련행에 관여한 증거자료와

문건들을 소각, 은페하였으며 일본의 방방곡곡에 내버려져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에 대한 아무러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있기때문이다.

구일본정부와 군부가 기업과 공모결탁하여 저지른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와 그 연장선상에서 감행된 조선인학살만행은 국제법은 물론 일본국내법에도 저촉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죄로서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지난 기간 조선인강제련행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요구하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법률단체들의 결의와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의 전후처리문제가 이미 해결되였다는 주장을 계속 고집하고있다.

일본의 대기업체들은 당시 조선인강제련행이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하여 국가로부터 강제동원인원을 할당받은데 불과하고 그들을 부당하게 취급한 일이 없으며 미지불금을 공탁소에 《공탁》하였기때문에 일체 채무가 없다는 등의 궤변들을 들고나오고있다.

특히 일본의 재판소들에서 미쯔비시계렬 기업체들을 상대로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였지만 관련기업체들은 그 사실을 인정조차 하지 않고있으며 시효가 끝났다느니 이제는 다른 회사로 되였다느니 하는 등 여러가지 구실을 대면서 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오그랑수를 쓰고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미쯔비시중공업회사를 비롯한 대기업체들이 정부와 우익보수세력들과 한덩어리가 되여 과거청산을 거부하면서 력사외곡과 군사대국화책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는것이다.

일본의 대기업체들은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를 한사코 《미싸일발사》로 몰아붙이면서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증대시키고 《선제공격》이요 뭐요 하면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는 일본당국의 범죄적책동에 적극 가담하여 일본의 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미쯔비시중공업회사가 지난해부터 일본정부의 부추김밑에 요격미싸일 《PAC－3》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항공 《자위대》에 배

비하기 시작한것을 비롯하여 조선재침책동에 적극 가담하고있는것이 그 집중적인 표현이다.

일본정부와 기업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과거의 태평양전쟁전야를 방불케 하고있다. 력사는 공정하고 엄정한 재판관이다.

인류에게 악행을 가한 범죄자들은 어느때든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것이다.

일본정부와 대기업체들은 지난날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강제련행, 강제로동범죄를 비롯한 모든 반인륜적범죄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그의 진상을 전면적으로 조사공개하며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철저히 사죄하고 배상하여야 한다.

조선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주체98(2009)년 8월 20일 평양

5. 일본 도꾜에 끌려가 미군의 공습에 의하여 희생된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진상조사보고서

[《로동신문》 주체97(2008)년 5월 25일부]

과거 일제가 저지른 침략전쟁의 불길속에서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였다.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 유가족협회는 지난날 일제의 악독한 강제련행만행으로 하여 조선사람들이 일본 도꾜에 끌려가 고역에 시달리는 과정에 미군에 의한 공습으로 무리죽음을 당하였다는 사실이 자료적으로 립증된것과 관련하여 이 조사보고서를 발표한다.

1) 도꾜에서 감행된 조선인강제로동범죄

이미 널리 알려진것처럼 무력으로 조선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는 군사적강제수단으로 1937년 중일전쟁발발이후만 하여도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청장년들을 랍치, 련행하여 침략전쟁에 소요되는 병력과 로동력을 충당하였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도꾜에 랍치, 련행되여 노예와 같은 비인간적인 취급을 강요당한 조선사람들의 경우도 결코 례외로 될수 없었다.

일제의 군사적강점통치로 말미암아 모든것을 빼앗기고 일본 도꾜에 끌려간 조선사람들의 대부분은 사람 못살 곳에서 빈민굴을 형성하고 살았으며 군관련기업소나 군수공장, 군사시설공사장들에서 참혹한 노예로동을 하였다.

일본의 패망말기에 도꾜에는 10만명이상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이 있었던것으로 추산된다.

조선은행경성총재조사과가 1942년에 발표한 자료 《내지, 지

나재주 반도인의 활동상황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1941년말에 도꾜의 혼죠구와 후까가와구에 2만명, 아라까와구와 죠또구에 3만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이 살고있었다고 한다.

도꾜의 혼죠구, 후까가와구, 죠또구 등에는 제강소와 조선소, 전기공장 등이 집중되여있었으며 바로 여기에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끌려가 혹사당하였다.

1944년 5월 20일에 나이가이제강소주식회사 스나마찌공장장이 경시청에《함경남도에서 온 반도로무자 37명중 4명이 발진티브스에 걸려 꼬마고메병원에 수용》하였다고 보고한 자료를 통해 당시 우리 나라 북부지역에서도 많은 청장년들이 이곳에 끌려와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1995년에 발행된 일본도서인《도꾜의 조선거리》에는《이시가와지마조선소에는 강제련행된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일하고있었다.

1944년 10월과 11월에만 하여도 1 710명이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서 강제련행되였다. …》라고 기록되여있다.

도꾜에 강제련행된 조선사람들은 일제의 혹심한 민족차별정책에 의하여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위험하고 고된 로동을 강요당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리창순(1925년 11월 22일생, 남자, 평양시 대동강구역 청류2동에서 살다가 2007년 8월에 사망)은 1942년에 도꾜의 시바우라제강소에 끌려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이 제강소는 군함건조에 필요한 강철과 부속품을 생산하였는데 종업원은 2 000명정도였고 그중 조선사람은 500여명이였다. 제강소둘레에는 철조망이 쳐있었고 일본군대가 보초를 섰다.

하루에 12～14시간 일하는것은 보통이였고 때로는 밤을 꼬박 밝히며 일하는 날도 많았다. 힘든 일은 모두 조선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에게 주는것이란 콩깨묵과 멀건 소금국에 절인 무우 몇쪼박이였다. 우리가 평양에서 끌려갈 때에는 200여명이였는데 고향으로 돌아온것은 20명밖에 되지 않았으며 가지고 온 유골은 3구뿐이였다.》

조선사람들은 일제의 특별한 감시와 통제를 받으면서 아무런

로동보호대책도 없는 고역장들에서 노예로동을 하였을뿐아니라 그 과정에 병들어죽거나 사고로 죽고 매맞아죽었으며 나중에는 미군의 공습으로 하여 무리죽음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2) 도꾜대공습에 의한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들의 참상

1945년 3월 10일 0시 8분 미군은 325대에 달하는 대형폭격기 《B－29》를 동원하여 도꾜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하였다.

미군폭격기들은 저공비행으로 이 지역에 날아들어 소이탄을 비롯한 폭탄들을 미친듯이 퍼부었다.

불과 30분만에 도꾜의 35개 구역가운데서 29개 구역이 불길에 휩싸였다.

이 공습으로 하여 많은 조선사람들이 불에 타죽거나 일산화탄소중독과 산소의 급속한 감소로 질식되여 죽었으며 물에 빠져죽고 심장마비로 죽는 대참사가 빚어지게 되였다.

이에 대하여 이시가와지마조선소에서 일한 에가와 데이지는 공습이 시작되자마자 자기 집으로 가던 길에 숙소로부터 도망쳐오는 조선사람의 한 집단과 만났다고 하면서 《그들은 3월 9일에 조선에서 온 사람들이였다. 얼굴과 손은 화상이 심했고 옷도 다 해지고 한심하였다. 숙소에는 900명정도가 있었는데 250～260명밖에 살아남지 않았다고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일본사람 야마다 쯔네는 피난처였던 어느 한 학교강당에서 본 광경에 대하여 《온몸이 물집으로 퉁퉁 부어올라 다 죽어가는 사람들속에서 조선녀성이 울음을 터뜨리고있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던 녀성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채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숨을 거두었다.》고 하였다.

일본《도꾜공습을 기록하는 회》가 1973년에 출판한 도서인《도꾜대공습전재지》 제1권에는《피해는 주로 도꾜의 낮은 지대에 집중되였으며 특히 혼죠구, 후까가와구, 죠또구, 아사구사구의 4개 구역은 거의다 전멸되다싶이 결정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기록되

여있다.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쎈터 기관지 《전쟁책임연구》 제53호에는 공습당시 조선사람들의 피해상황에 대하여 《도꾜재주 조선인 9만 7 632명중 전재자는 4만 1 300명이다. 사망자는 이가운데서 적어도 1만명을 훨씬 넘을것으로 보인다.》고 씌여져있다.

일제는 공습이 있은 후에 왜왕이 이 지역을 행각한다는것을 구실로 조선사람들을 비롯한 사망자들에 대한 신원조사조차 하지 않은채 67개소의 공원과 사원, 학교마당 등에 토장하였다가 다시 파내여 합장함으로써 억울하게 숨진 조선사람들의 유골마저도 제멋대로 마구 처리하는 반인륜적인 만행을 감행하였다.

제반 사실들은 도꾜대공습으로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희생된것은 전적으로 구일본정부와 군부의 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에 기인된것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3) 일본의 태도와 립장

일본정부는 마땅히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유골을 사망직후에 인차 그들의 부모처자에게 보냈어야 하였으며 특히 일제의 패망과 함께 이 문제를 과거청산의 한 부분으로 철저히 해결했어야 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패망한지 60년이 넘도록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을 모두 찾아 보낼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나 이 문제를 은페하면서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회피해보려고 갖은 오그랑수를 쓰고있다.

일본에서는 흔히 후생로동성이 관리하고있는 유골들 즉 구일본군의 군인, 군속징발과 《우끼시마》마루폭침사건 등에 의하여 희생된 사람들의 유골만이 조선인유골문제의 대상인것처럼 간주되고있다.

조선인희생자들의 유골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일제의 군사적강점시기에 모집과 관알선, 징용을 비롯한 여러가지 미명밑에 일본

과 그 강점지역들에 끌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과 일본에서 갖은 천대와 멸시속에서 고역살이를 하다가 간또대지진과 공습, 로동재해, 원자탄투하 등으로 희생된 모든 조선사람들의 유골을 말하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도꾜대공습에 의한 희생자들을 비롯한 모든 조선인희생자수를 극력 축소, 왜소화하려 하고있다.

현재 도꾜도위령당에 도꾜대공습의 수많은 희생자유골이 있다고 하지만 그중 이름이 확인된것은 4 000여명이며 조선사람이라고 볼수 있는 이름은 50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조선인희생자들의 유골마저도 대부분이 큰 단지에 합장되여있어 어느것이 누구의 뼈인지 분간할수 없으며 거기에 희생자의 이름이 씌여져있다고 하여도 그의 뼈가 확실한지 구분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일본당국이 이미 발굴된 조선인희생자유골들에 대한 의학적감정을 실시하여 유골을 찾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

도꾜대공습으로 희생된 조선사람들의 경우 현재 일본당국과 도꾜도, 관련기업들에 당시의 후생년금자료, 공탁금명부, 매장 및 화장인가증, 호적접수장 등이 보관되여있는 조건에서 먼저 그에 대한 조사를 심도있게 하여 정확한 사망자수를 자료와 함께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유골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내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있다.

올해(2008년) 1월 일본당국이 도꾜의 유텐지에 있는 1 100여명의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가운데서 101구를 남측에 반환하였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유골함에는 희생자의 뼈가 아니라 유물이나 손톱 등이 들어있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이와 관련한 추도식에서 일본후생로동성 사회원호국 외사실장이란자는 일본의 침략전쟁기간에 태평양의 여러섬에서 목숨을 잃은 조선인희생자들의 유골을 유가족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일본에 가져왔다느니 1971년부터 유텐지에 정히 보관

하여 제사를 지내왔다느니 뭐니 하고 떠벌인것이다.

지난 기간 일본당국은 조선인희생자들의 유골문제를 가지고 북과 남을 차별하면서 우리에게는 단 1구의 유골도 돌려보내지 않았을뿐아니라 심지어 공화국북반부출신희생자의 유골까지도 남측에 제멋대로 넘겨주는것과 같은짓을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최근년간 일본당국은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을 비롯한 민간단체들이 조선인희생자유골과 관련한 자료와 명단들을 열람하거나 제공해줄것을 요청할 때마다《개인적인 문제》,《실무적인 수속》등을 구실로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있다.

그리고 도꾜의 유텐지에 내버려져있는 유골을 찾아 일본을 방문하려던 우리 나라 강제련행희생자유가족들과 관계자들의 입국을 거듭 가로막는 무례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일본당국은 야스구니진쟈에 있는 명부에 억울하게 숨진 2만여명의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들과 일본의 극악한 수급전범자들의 이름을 함께 새겨넣고 과거침략사를 미화하며 전범자들을 찬양하는데 악용하고있다.

또한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이 일본의 바다밑과 폐갱들에 그대로 묻혀있고 각지 절간들에 내버려져있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고있을뿐아니라 오히려 나고야시의 유물보관소에 있던 유골들을 신원확인과 유가족측에 대한 사전련락도 없이 망탕 처리해버리는것과 같은 비인도적행위를 공공연히 감행하였다.

일본당국의 이러한 그릇된 처사의 리면에는 어떻게 하나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문제를 유야무야해버림으로써 저들의 범죄에 대한 증거물들을 없애버리고 나아가서 과거의 반인륜적범죄에 대한 배상의무를 털어버리려는 속심이 깔려있다.

이것은 사망자를 가능한 정중히 매장하고 그들의 묘를 존중하며 국적에 따라 구분하고 항상 분간할수 있도록 표시할데 대한 조항을 명기한 국제인도법과 시체, 유골 및 관에 있는 물건을 파괴, 파기하거나 훔친자에게 형벌을 가할데 대한 조항을 쪼아박은 일본의 형법을 비롯한 국제법과 국내법에 위반되는 엄중한 인권침해죄로 된다.

유골마다에는 희생자들의 원한이 서려있고 애타게 기다리는 유가족들이 있다.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유골문제는 일제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의 피맺힌 원한을 풀어주고 유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서 더이상 미룰수 없는 인권문제로, 인도적문제로 나서고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그 무슨《랍치문제》,《유골문제》,《인권문제》같은것을 대고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에 광분할것이 아니라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와 희생자들의 유골문제와 관련한 진상을 공개하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철저히 사죄하며 배상하는 등의 실천적조치를 하루빨리 취해야 할것이다.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 유가족협회는 앞으로도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와 인권을 귀중히 여기는 세계 여러 나라 해당 단체들과 굳게 련대하여 일제가 감행한 몸서리치는 조선인학살만행에 대한 진상조사사업을 계속 심화시키며 응당한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다.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 유가족협회

주체97(2008)년 5월 24일 평양

6. 우리 나라 원자탄피해자문제와 관련한 진상조사보고서

[《로동신문》 주체95(2006)년 5월 1일부]

일본의 반인륜적과거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는 과거청산에 대한 일본정부의 그릇된 태도와 립장으로 하여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의연히 회복되지 않은채 그냥 내버려져있다.

그가운데는 과거 일제가 우리 나라를 불법강점하여 실시한 악독한 군사적지배와 강제련행정책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히로시마시와 나가사끼시에 끌려가 노예로동을 강요당하고 마지막에는 억울하게 원자탄피해의 고통까지 겪지 않으면 안되였던 피해자들도 있다.

조선원자탄피해자협회는 우리 나라 원자탄피해자문제가 국제법적견지에서 보나 인륜도덕적견지에서 보나 일본정부가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초미의 문제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이 조사보고서를 발표한다.

1) 우리 나라 원자탄피해자문제의 발생경위

다 아는바와 같이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이 명백해지고있던 1945년 8월 6일과 9일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일본의 히로시마시와 나가사끼시에 원자탄을 투하함으로써 수십만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살륙하고 2개 도시를 순식간에 재더미로 만들어놓았다.

당시 히로시마시와 나가사끼시에 살던 약 70만명의 주민들이 원자탄피해를 입었는데 그중 사망자가 히로시마시에서 15만 9 000여명, 나가사끼시에서는 약 7만 3 000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원자탄피해자들속에는 외국인들도 포함되여있었는데 조선사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원자탄투하에 의한 조선인피해실태에 대하여서는 지난 기간 일본정부는 물론 지방자치체들에서도 그에 대한 조사확인사업을 똑똑히 하지 않았기때문에 오늘까지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있으나 민간급단체들의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어느 정도 그 진상이 밝혀지고있다.

남조선의 원폭피해자협회는 당시 조선인원자탄피해자총수가 약 7만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약 4만명에 달하였다고 추정하고있다.

일본에서 활동하고있는 시민단체인 《나가사끼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은 세밀한 조사를 진행하여 나가사끼시에서 원자탄피해를 입은 조선사람은 모두 21 384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0 278명으로 추정된다는 조사자료를 발표하였는데 이 내용은 일본도서인 《조선인피폭자－나가사끼로부터의 증언》(샤까이효론사 1989년)에도 수록되여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은 당시 히로시마시와 나가사끼시에서 원자탄피해를 입은 일본사람과 조선사람의 비률이 10대 1로서 얼마나 많은 조선사람들이 히로시마시와 나가사끼시에 끌려가있었는가를 보여주고있다.

명치유신이후 《부국강병》정책을 실시한 일제는 1905년 무력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우리 나라를 불법강점하고 야만적인 략탈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생활기반을 잃게 된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제는 1931년의 만주사변에 이어 19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1941년에 태평양전쟁을 도발하는 등 침략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해나갔으며 동시에 조선에서의 인적 및 물적자원략탈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특히 일제는 1938년부터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강제련행정책을 실시하면서 우리 나라에서 840만여명에 달하는 청장년들을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로 끌어가 로동노예, 전쟁노예로 만들었다.

청일전쟁당시 일본침략군의 최고통수부가 자리잡고있던 히로시마시는 일본의 아시아침략확대와 함께 일본에서 손꼽히는 군사도시로 변하였다.

1944년부터 미쯔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 약 2 800명

에 달하는 조선청장년들이 강제련행된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히로시마시내의 륙군부대와 군사시설, 군수공장들에 징병, 징용으로 끌려가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다.

또한 중요한 군사도시의 하나였던 나가사끼시에는 일본에서 제일 큰 군함제조소인 미쯔비시조선소가 있었으며 일제는 그곳에만도 7 000여명에 달하는 조선청장년들을 강제로 끌어갔다.

그들은 낯설은 일본땅에서 혹심한 민족차별정책밑에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다 못해 나중에는 원자탄에 의해 순식간에 귀중한 목숨까지 빼앗기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후과로 중병을 앓다가 사망하였다.

현재 우리 공화국에 살고있는 원자탄피해자들은 일제패망후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거나 1959년말부터 실시된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실현조치에 따라 공화국의 품에 안긴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다.

2) 원자탄에 의한 피해정형

히로시마시와 나가사끼시에 핵폭탄이 투하된 결과 지상에서는 강력한 폭풍과 열선, 방사선에 의하여 각종 건축물과 살림집들이 모조리 파괴되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동식물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생물체들의 세포가 파괴되였다.

히로시마시와 나가사끼시에 투하된 원자탄피해에 의한 사망자중 약 60%가 열선과 화재에 의하여, 나머지 40%는 방사선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방사선은 인체에 강한 침투성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조직세포에까지 장애를 준다.

원자탄이 투하된 직후부터 약 4개월동안에 방사선에 오염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설사, 구토, 식욕부진, 머리아픔, 탈모, 무기력, 출혈, 발열 등 여러 증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며 겨우 살

아남은 사람들조차도 그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켈로이드, 백내장, 백혈병, 빈혈, 무력증후군 등 각종 질병으로 하여 정신적 및 육체적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피해자 박문숙(1943년 9월 2일생, 평양시 락랑구역 거주)은 《나는 2살도 채 안되던 1945년 8월 9일 나가사끼에 투하된 원자탄의 폭발중심지로부터 4㎞이내인 오후나그라에서 원자탄피해를 직접 입었다. 원자탄투하당시 가족과 친척 모두 8명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중 현재 살아있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 당시 임신중이던 어머니는 원자탄폭발의 충격으로 류산하여 파괴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어머니는 그후 3～4년동안에 7번이나 수술을 받았으며 위와 소화기, 관절계통의 질병 등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다가 1999년 1월에 위암으로 돌아갔다. 오빠도 원자탄피해의 후유증으로 위궤양 등을 앓으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59살이 되던 1999년 5월에 세상을 떠났다. 나는 애기때에 입은 원자탄피해때문에 평생 위와 소화기, 관절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고있으며 심장까지 나빠져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있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려일숙(1933년 5월 19일생, 평양시 서성구역 거주)은 《나는 남동생을 데리고 1945년 8월 6일 원자탄이 투하된 직후 히로시마 아끼군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 집가까이의 강기슭과 소학교마당에서는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20여일동안 화장을 하였는데 그때 우리도 방사선피해를 많이 입은것 같다. 남동생은 그후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심하게 앓았고 나도 체온이 40℃까지 올라가면서 설사와 빈혈까지 겹쳐 고통을 겪었다. 나는 1973년 3월에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기였는데 아직도 높은 혈압으로 심하게 앓고있다. 일본에서 낳았던 6명의 아이들가운데서 맏딸은 1996년에 빈혈로 쓰러진 후 현재까지도 일어나지 못하고있으며 둘째 아들은 24살의 젊은 나이에 죽었다. 원자탄피해를 입은지 60년 지났지만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고통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변금영(1933년 10월 25일생, 평양시 선교구역 거주)은 《나는 13살때 히로시마의 오나가마찌에서 원자탄피해를 입었다.

1945년 8월 6일 아침 나는 굉장히 큰 폭음을 들으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의식을 차려보니 우리 집은 완전히 무너졌고 시내는 온통 불길과 연기로 뒤덮여 말그대로 수라장이였다. 당시 우리 가족은 부모와 자식들 5남매가 한꺼번에 원자탄피해를 입었는데 나와 녀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암으로 앓다가 사망하였다. 물론 지금 남아있는 나와 녀동생도 후유증으로 계속 앓고있다.》고 하였다.

현재 우리 나라 원자탄피해자들이 앓고있는 질병을 분석해보면 순환기계통의 질병이 제일 많으며 뇌신경, 소화기, 감각기, 말초신경, 호흡기, 피부, 비뇨 및 생식기계통의 질병, 암, 타박 및 화상후유증, 조혈장애로 인한 질병 등의 순위로 되고있다.

제반 사실들은 원자탄피해로 인한 질병들이 고질적이고 만성적인것으로서 단기적인 치료로 고쳐질수 없는 병들이며 원자탄피해자들이 겪고있는 정신적 및 육체적고통이 얼마나 크고 우리 나라 원자탄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지원이 얼마나 긴급한 문제로 나서고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3) 일본정부의 태도와 립장

1951년 9월 《쌘프런씨스코강화조약》에서 일본이 련합국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데 따라 일본정부는 미국의 원자탄투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가해자대신 그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국제적의무를 지니고있다.

이로부터 일본정부는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서 원자탄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1957년에 《원자폭탄피폭자의 의료 등에 관한 법률》(《원폭의료법》)을, 1968년에 《원자폭탄피폭자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원폭특별조치법》)을 각각 제정하였으며 1994년에는 이것들을 합쳐 《원자폭탄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이라는것을 만들고 원자탄피해자 원호에 관한 여러 시책들을 실시하여왔다.

《피폭자원호법》은 국적에 관계없이 일본에서 살거나 일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피해자라면 누구나 의료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규정한 법으로서 일본의 전쟁희생자원호법가운데서 유일하게 일본사람과 외국사람을 평등하게 취급하고있다고 하지만 실지 이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는 수많은 차별조치들이 실시되고있다.

일본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세계에서 《유일한 원자탄피해국》,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자》라는것을 인정받기 위해 자국내 원자탄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고있다.

히로시마시와 나가사끼시에 원자탄피해자들의 이름을 새긴 평화위령비를 건립하였지만 거기에는 수만명에 달하는 조선인피해자들의 이름이 새겨져있지 않으며 원자탄피해를 보여주는 평화박물관 같은것도 세워졌다고 하지만 그 어디에도 조선사람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자료나 해설은 거의나 없다.

일본정부는 자기 나라 원자탄피해자들에 대해서는 1960년부터 10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들에게 건강수당금을 지불하는 등 적극적인 의료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있다.

1997년에 발표된 《원폭피폭자대책사업개요》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1997년에만도 국내에서 《피폭자건강수첩》을 소유한 31만 7 633명의 원자탄피해자들을 위한 예산총액을 1 628억￥으로 정하였는바 그중 337억￥(1인당 11만 9 000￥)을 치료비로, 1 094억￥(1인당 34만 4 000￥)을 수당금으로 할당하였다.

한편 일본정부는 남조선에 있는 수많은 원자탄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피해자들과 사회계의 거듭되는 항의와 비난에 못이겨 차별적이기는 하지만 여러차례에 걸쳐 원호비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실례로 일본정부가 《원폭의료법》에 따라 1980～1986년에 남조선의 원자탄피해자 349명에게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의 원폭병원에서 1인당 2개월씩 입원치료를 받도록 해주었고 1989년과 1990년에 4 200만￥씩 도합 8 400만￥을 의료비로 지불하였으며 1990년부터 1998년까지 피해자들의 의료비와 복지회관건설에 한정하여 40억￥을 지출하였다.

현재 북남조선과 중국, 미국, 카나다, 브라질 등 30여개 나라

들에 원자탄피해자들이 살고있다고 한다.

일본후생로동성은 2002년말현재 재외원자탄피해자수를 약 4 500명으로 추산하고있으며 그중 《피폭자건강수첩》의 소유자를 2004년말현재 약 3 530명으로 보고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우리 나라 원자탄피해자들에게는 한번도 사죄한 일이 없으며 우리 나라와 국교가 없다는것을 리유로 그들에게 아무런 원호조치도 취하지 않고있다.

일본의 이전 수상 오부찌 게이조를 비롯한 정치인들과 정부관계자들은 2000년 3월 우리 협회대표단의 일본방문시 우리 나라 원자탄피해자문제를 속히 해결하여야 한다는것을 인정하였고 2001년 3월에 늦게나마 원자탄피해자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적인 조사단을 우리 나라에 파견하여 그 실태를 료해하였으며 후생로동상(당시)은 2004년 7월에 기자회견에서 우리 나라 원자탄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에서 국가의 차별을 두지 않고 해나가겠다고 발언도 하였다.

그러나 모두가 빈말뿐이고 오늘 이 시각까지도 문제해결을 위한 실제적인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있다.

2005년 4월 일본당국이 재외대표부들에서 외국인원자탄피해자들을 상대로 건강관리수당금지불을 위한 신청을 접수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지만 오늘까지도 우리 공화국에는 어느 경로로도 이에 대해 정식 통보해온것이 없으며 원자탄피해자원호시책과 관련한 정보조차도 보내오지 않고있다.

일본에서 패전후 원자탄피해자들을 원호한다고 하면서 제정하였다는 《원폭의료법》, 《원폭특별조치법》, 《피폭자원호법》들은 일본정부의 철저한 사죄와 국가배상에 기초하고있는 법률이라고 말할수 없다.

이 법률들에는 수십만의 무고한 평화적주민들에게 원자탄피해를 초래한 근본죄행에 대해 성근히 사죄하고 배상한다는 문구가 그 어디에도 없으며 더우기 이미 사망한 원자탄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있다.

1994년 12월 19일에 자민당과 사회당의 타협으로 제정되였다고 하는 《피폭자원호법》만 놓고보아도 여기에는 일본의 원자탄피

해자들과 해당 단체들이 강력히 요구해왔던 《국가배상》이라는 문구대신 《국가의 책임》이라는 문구를 새김으로써 법문의 목적을 애매하게 바꾸어놓았으며 조선인원자탄피해자원호에 대한 조문이 제외되였을뿐아니라 조의금, 유가족년금, 원자탄피해자년금과 관련한 조문도 배제되여있다.

특히 이 법률은 《피폭자건강수첩》을 소유한 원자탄피해생존자들에게만 건강수당금을 지불하다가 그들이 사망하게 되면 그 지불을 중지하게 되여있는것으로서 이것은 《피폭자건강수첩》을 소유한 피해생존자들이 다 사망하면 이 법률의 사명이 끝나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우리 원자탄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일부러 증인과 증거를 찾아 일본의 해당 지방자치체에 제시하는 등 복잡한 수속과 오랜 시간을 거쳐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받아 건강수당금을 지급받을수 있도록 제정한 일본의 원자탄피해자원호와 관련한 법률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품고있는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정부가 진실로 자기의 죄행을 반성하고 원자탄피해자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하려는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있지 않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일본은 《쌘프런씨스코강화조약》에 의하여 원자탄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지고있으며 일본헌법에 따라 모든 국제법들을 존중하고 준수하게 되여있다. 뿐만아니라 1978년 3월에 있은 원자탄피해자에 대한 소송과 관련한 일본최고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일본정부가 국내외의 원자탄피해자들에 대한 전쟁책임을 지며 재외원자탄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국가적도의로 간주할데 대한 문제가 강조되였다.

우리 원자탄피해자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일제의 조선강점과 군사적지배가 빚어낸 산물로서 일본의 과거청산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우리 나라 원자탄피해자문제를 발생시킨 자기의 죄행을 놓고 응당한 책임을 인정하여야 하며 모든 원자탄피해자들에게 철저히 사죄하고 배상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원자탄피해자들은 일본정부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민족차별정책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원자탄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피폭자건강수첩》을 받지 못하였거나 스스로 그 수첩을 받기를 거절하고 공화국의 품에 안긴 사람들과 그 자녀들이다.

그중 이미 많은 사람들이 원자탄피해의 후과로 고통을 받다가 사망하였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70~80살의 고령으로서 인생의 마지막시기를 보내고있으며 2세, 3세들도 유전학적영향으로 하여 많은 고충을 겪고있다.

조선원자탄피해자협회는 일본정부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마땅히 우리 나라 원자탄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일본정부는 조선인원자탄피해자들과 관련한 일체 자료를 공개한데 기초하여 우리 나라에 살고있는 원자탄피해자들을 원호하기 위한《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지난 60년이상 우리 공화국에 살고있는 원자탄피해자문제를 방치해온데 대한 책임을 포함하여 우리 나라 원자탄피해자들에게 철저한 배상을 해야 하며 이미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응당 그 유가족들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일본정부는 인륜도덕적견지에서 원자탄피해생존자들이 필요한 원호를 받을수 있도록 국가배상과는 별도로 하루빨리 원자탄피해자들의 치료에 필요한 의료설비나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우리 나라 원자탄피해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조치를 시급히 취하여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인간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반전평화애호단체들 및 대일배상요구활동단체들과의 련대투쟁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나라 원자탄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 인도주의적협력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해나갈것이다.

조선원자탄피해자협회

주체95(2006)년 4월 30일 평양

7. 일본 도꾜의 유텐지에 있는 조선인강제련행 희생자유골명단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로동신문》 주체94(2005)년 5월 28일부]

다 아다싶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지 60년이 되여오는 오늘까지도 일본땅 방방곡곡에는 지난날 일제에 의해 죽음의 고역장과 침략전쟁터에 끌려가 억울한 희생을 강요당한 수많은 조선사람들의 유골이 마구 내버려져있다.

최근 몇해동안에만도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이 일본 오사까에 있는 또고꾸지에서 1만여구, 효고현 아이오이시의 젠고지에서 60여구, 후꾸시마현에 있는 30여개의 절간에서 100여구, 도꾜의 유텐지(절간)에서 1 100여구, 혹가이도의 홍간지별원에서 100여구나 발견되였다.

조선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에서는 최근년간 도꾜의 유텐지에 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유골명단에 대한 조사과정에 구일본군에 의해 군인, 군속으로 침략전쟁터에 내몰리웠다가 희생된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을 찾아내고 일부 유골들에 대한 진상을 밝혀낸것과 관련하여 이 조사보고서를 발표한다.

1) 도꾜의 유텐지에 있는 조선인강제련행 희생자유골명단에 대한 조사경위 및 조사정형

조선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는 2004년초에 일본에 있는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으로부터 도꾜의 유텐지에 내버려져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유골명단을 넘겨받은데 따라 우리 나라의 해당 기관들과의 련계밑에 이 명단에 기입된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들의 유가족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유텐지의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유골명단에는 1 135명의 이름이 기입되여있는데 그중 430명이 공화국북반부출신자들이다. 430명중 구일본륙군의 군인, 군속으로 끌려간 사람은 315명, 구일본해군의 군인, 군속으로 끌려간 사람은 114명 기타 1명으로 구분된다.

그들은 거의다가 지난날 일제에 의하여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평안북도와 평안남도, 황해도, 강원도 등 우리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군인, 군속으로 침략전쟁터에 끌려가 군노예, 로동노예를 강요당하다가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로 추정된다.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지역출신자 430명가운데서 확인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지는 대상을 80명정도 선정하여 2004년 4월부터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유가족들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유가족들이 아들, 딸 등 자식세대의 사람들인 조건에서 일제에 의하여 강요된 창씨개명으로 인하여 일본성과 이름으로 기입되여있는 명단만 가지고서는 희생자들의 본명을 확인할수 없어 조사는 첫걸음부터 난관에 부딪쳤다.

또한 명단에 기입된 희생자들의 주소가 해방전의 지명이나 행정구역으로 되여있고 더우기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많은 사람들이 지역이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사정 등은 조사사업에 일정한 애로를 가져다주었다.

조건이 매우 불리한 속에서도 조사사업을 이악하게 벌린 결과 우리는 유골명단에 일본이름들로 기입된 731번 김정표(《가네시로 세이효》)의 아들 김두경과 김원경, 776번 림창보(《하야시 쇼후》)의 딸 림을심, 794번 김희수(《가네하라 기슈》)의 조카 김동일, 810번 김명학(《가네가와 메이가구》)의 조카 김선봉, 1082번 김을경(《가네하라 옷게이》)의 아들 김무기, 1088번 김길순(《가네자와 기치쥰》)의 동생 김길룡, 1090번 김룡균(《가네야마 류낀》)의 아들 김용호 등 명단에 있는 일부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을 찾아낼수 있었다.

또한 확인된 유가족들의 증언을 통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수 있었다.

○ 희생자 김정표의 아들 김원경은《우리 아버지는 6명의 집안식구를 먹여살리기 위해 함경북도 금야군 련동리에 있던 지주집에서 머슴살이를 하였는데 그후 지주집에서 뛰쳐나와 청진에 가서 어부로 일하였다. 아버지는 일제에 의해 1943년에 10여명의 동료들과 함께 청진부두로 끌려갔으며 그후의 아버지의 행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있다. 아버지와 생리별을 당한 이후 60년세월 아버지의 생사여부조차 알수 없었던 우리들은 한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오늘까지 제사 한번 지내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소식을 기다려왔다.》고 하였다.

그의 가족들은 아버지가 일본 도꾜의 유텐지에 유골로 남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억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 희생자 김을경의 아들 김무기는《나는 어머니를 통하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아버지는 일제경찰에 의하여 1943년경에 싱가포르에 끌려가 가혹한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다. 아버지가 놈들에게 여러번 반항하자 일본군은 아버지를 감옥같은데 가두어넣고 먹을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고문을 들이댔다고 한다. 일본군은 1945년 4월 적리에 걸린 아버지를 전염병에 걸렸다는 구실을 붙혀 불태워죽였다고 한다. 일제가 패망하자 아버지와 함께 끌려간 동료들이 아버지의 유골이라도 고향에 가져다주려고 배를 타고 일본으로 향하던중 강한 폭풍이 불자 일본사람들이 그 유골을 모두 바다에 던져 없애버렸다고 한다. 해방후 아버지와 함께 끌려갔다가 겨우 살아돌아온 동료들로부터 아버지가 일제에 의하여 무참히 학살되였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졸도하여 앓다가 1946년에 사망하였다. 그후에 우리들은 아버지의 제사를 유골도 없이 지내왔다.》고 하였다.

○ 희생자 김길순의 동생 김길룡은《당시 우리 집안은 식구가 9명이나 되는 큰 가정이였다. 아버지는 집안살림이 가난한 속에서도 형인 김길순만이라도 공부를 시키려고 소학교에 보냈다. 그런데 내가 8살이 되던 해인 1943년에 보천군 신흥리 산림조합장은 징병에 걸린 자기 조카대신에 소학교 졸업반에서 공부하던 우리 형을 징병에 내보냈다. 그 이후 형한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는데 1945년에 2명의 일본경찰이 형의 유골이라고 하면서 유

골함을 가지고와서 우리 집에 넘겨주었다. 그런데 도꾜 유텐지에 우리 형의 유골이 또 있다고 하니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이미전에 발굴된 김길순의 이름이 들어있는 또 다른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명단의 사망원인란에는 그가 1945년 2월 25일 일본 요꼬하마시 도쯔까구에서 디프테리아로 사망하였다고 기입되여있다.

이와 같은 증언자료들은 지난날 일제에게 강제로 끌려간 가족, 친척들의 생사여부도 확인하지 못한채 60년세월을 보내온 유가족들의 정신적고통이 얼마나 큰것이며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유골문제와 관련한 일본당국의 비인도적인 처사야말로 죄악에 죄악을 덧쌓은 범죄행위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2)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유골명단에 대한 조사사업에서 확인된 몇가지 문제

도꾜의 유텐지에 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유골명단에서 확인된 희생자들에 대한 추적조사와 그 유가족들의 증언청취, 일본후생로동성을 통하여 료해한 희생자들에 대한 관련자료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에 대해 확인할수 있었다.

첫째로, 일본각지의 여러 절간들에 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유골들의 보관취급상태가 확인되였다.

도꾜의 유텐지에는 8개의 단으로 이루어진 납골당에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함들이 놓여져있는데 1개의 단에 10개의 유골함이 있다.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유골명단에 있는 1 135명의 유골이 80개의 유골함에 들어있다고 가상한다면 1개의 유골함에 14.2명분의 유골이 들어있는것으로 된다. 이것은 희생자들의 유골이 이미 합쳐져있었다는것을 의미한다.

혹가이도 홍간지별원에 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

가운데서 일부는 이미 여러차례 합쳐지다나니 개별적으로 분간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1개의 유골함에 2명이상 지어 10여명의 유골이 들어있다.

일본의 다른 절간들에 내버려져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실태도 도꾜의 유텐지나 혹가이도의 홍간지별원에 있는 유골들과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유골을 합치는것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유가족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최종적인 안치방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유골이란 한 인간의 흔적을 유지하고 그가 속했던 가정의 혈통이 이어지게 하는 인간생활의 보편적인 유산인것만큼 세월이 흐르거나 안치장소가 제한되였다고 하여 또 유가족을 찾지 못했다고 하여 쉽게 합쳐 처리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일본의 절간들에 내버려져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이 해방전에 일제에 의하여 낯설은 이국땅들에 끌려가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로동노예로 내몰리웠다가 희생되였던 피해자들의 유골인것만큼 일본당국은 물론 절간측도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찾아 그들의 동의밑에 유골문제를 다루어야 할 법적, 인륜도덕적책임을 지니고있다.

다음으로 일본의 절간들에 내버려져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함에 희생자들의 뼈대신 여러가지 오물찌꺼기들이 들어있는것이 적지 않다는것이 확인되였다.

도꾜의 유텐지에 있는 희생자 김룡균의 유골함만 놓고보더라도 거기에는 그의 뼈가 아니라 지함쪼박들이 들어있었으며 혹가이도의 홍간지별원에 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함들에도 희생자들의 뼈대신 종이를 태운 재가루나 돌쪼각, 담배대 등이 들어있는것이 적지 않았다.

설사 유골함에 뼈가 들어있다고 해도 DNA(데핵산)감정을 하지 않고서는 실지 유골함에 이름이 씌여져있는 희생자의 뼈가 확실한지 분간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볼 때 일본의 다른 절간들에 내버려져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함의 전반적실태를 가늠하기

는 어렵지 않을것이다.

제반 사실은 구일본정부와 군부가 기업들과 결탁하여 전후처리문제를 어물쩍해서 넘기려는 속심으로부터 패망직전 저들의 침략전쟁터에 군노예, 로동노예로 내몰리웠다가 희생된 조선인강제련행자들의 유골을 수집하지 않고 내버리였으며 가짜유골함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그들의 뼈대신 다른 물건을 마구 넣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둘째로, 우리 공화국북반부출신의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의 위패가 야스구니진쟈에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난것이다.

지난해(2004년)말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텐지의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유골명단에 이름이 들어있는 김룡균의 유가족을 찾아냈으며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을 통하여 일본후생로동성에 그의 관련자료를 공개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일본후생로동성에서는 지난해 11월에 희생자 김룡균의 신분장이라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일본정부의 공적문서라고 할수 있는 신분장의 유골란에는 그의 유골이 없다고 표기되여있으며 1959년 10월 17일에 그의 위패를 야스구니진쟈에 가져갔다고 기록되여있었다.

이렇게 일본정부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과 관련한 구체적인 명단과 자료들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전후 60년이 지나도록 우리 공화국의 유가족들에게는 선친들의 유골에 대한 존재여부조차 알려주지 않았으며 저들의 죄행을 가리우기 위해 지합쪼박들을 집어넣은 가짜 유골함이라는것까지 만들어놓았던것이다.

그에 그치지 않고 도죠 히데끼를 비롯한 A급전범자들의 위패가 있고 일본군국주의의 상징으로 되고있는 야스구니진쟈에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위패를 가져다놓음으로써 그들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는 2중3중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신분장에 희생자 김룡균이 치렬한 격전장이였던 길버트제도 타라와섬에 끌려가 군사시설공사에 내몰리웠다가 희생되였다고 기록되여있는데 당시 일제가 조선인희생자의 유골을 그곳에서 본국으로 가져왔다고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것이다.

신분장을 통하여 중요하게 확인된것은 또한 구일본정부가 피해자유가족에게 넘겨주어야 할 유골접수비 270￥, 상제비 40￥, 부양비 900￥(당시의 시가)이 전후 60년이 되도록 청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거기에 기입되여있는 시바우라라는 회사이름은 당시의 조선인강제련행에 일본의 기업들이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우리는 이번에 유텐지에 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유골명단을 통하여 확인한 희생자들을 2003년말에 공개된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과 관련한 42만여명의 명단에서 찾아보았다.

희생자 김정표는 《피징용사망자(륙군) 함경북도》명단의 7번에, 김희수는 《피징용사망자(륙군) 함경남도》명단의 141번에, 김명학은 172번에, 림창보는 201번에 이름이 각각 기입되여있었다.

또한 《피징용사망자(해군) 함경남도》명단의 92번에 김을경, 21번에 김길순, 《피징용사망자(해군) 평안남도》명단의 188번에 김룡균의 이름이 기입되여있었다.

이 명단들에는 희생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본적지, 소속부대, 사망년월일, 사망원인, 사망장소, 가족관계 등이 적혀있다.

이 명단에 기입된 7명을 분석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수 있었다.

우선 희생당시의 나이를 보면 20살이 1명, 21살이 2명, 23살이 1명, 27살이 1명, 30살이 1명, 33살이 1명으로서 대부분이 20대의 청장년들이였다.

그리고 그 시기를 보면 1943년에 2명, 1944년에 1명, 1945년에 4명으로서 1945년에 가장 많이 희생되였다.

또한 그 장소를 보면 일본에서 1명, 세레베스섬에서 1명, 솔로몬제도에서 1명, 길버트제도 타라와섬에서 1명, 나우루섬에서 1명, 중국에서 1명, 먄마에서 1명이 희생되였다.

그들중 3명이 말라리아, 디프테리아와 같은 질병과 영양실조로 사망하였고 나머지 4명은 전병사, 전사로 되여있을뿐 사망원인조차 적혀있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들은 일제가 태평양전쟁말기에 20대를 전후한 수

많은 조선청장년들을 군인, 군속으로 대대적으로 강제징발하여 일제침략군의 발길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 총알받이로, 로동노예로 내몰아 무참히 학살하였다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3)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에 대한 일본의 태도와 립장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유골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과거 우리 나라를 무력으로 불법강점한 일제가 악독한 노예화정책과 민족말살정책의 한부분으로 감행한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의 산물이며 그 유가족들의 정신적고통이 과거에 이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시급한 해결을 기다리는 인권문제이다.

사실 이 문제는 법률적견지에서 보나 인륜도덕적견지에서 보나 지난 세기에 일본의 패망과 함께 일본정부가 과거청산의 한부분으로서 응당 해결했어야 하였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패전한 때로부터 6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문제에 대한 그 어떤 견해도 밝히지 않고있을뿐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아무러한 대책도 취하지 않고있다.

이와 반면에 일본정부는 피비린내나는 침략전쟁터에 나섰다가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했던 구일본군 군인, 군속들의 유골수집을 1952년부터 300여차에 걸쳐 진행하여 124만구의 유골을 수집하였다.

또한 1999년부터는 그 유가족들의 강한 요구에 따라 DNA감정도 실시하는 등 유골추적조사와 확인, 반환사업에만도 막대한 자금을 들이밀었다.

더우기 일본정부는 올해에 유골수집관련예산으로 2억 3 000만￥을, 유골의 DNA감정과 위령비건립 및 보수 등의 관련예산으로 5억￥이상을 예상하고있으며 구일본군 군인, 군속, 준군속과 그 유가족들에게 국가적인 조의를 표시한다는 명목으로 《전후 60주년

관계사업》이라는것을 계획하고 여기에 무려 579억￥의 자금을 지출하려 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1950년에 《국외거주외국인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공탁특례에 관한 정령》이라는것을 공포하고 미지불임금에 대한 청산업무를 진행하였는데 구일본군의 군인, 군속으로 끌려갔던 조선사람들에 대한 미지불임금만은 아직까지 청산하지 않고있다.

최근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에 의하여 그 공탁금이 도꾜법무국에 있다는것이 밝혀졌는데 그 금액은 109억 6 368만￥(1994년에 당시의 화폐가치를 현재의 시가에 맞게 120배로 환산한것)에 달한다고 한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일본정부가 패전후 남조선에는 정부적으로 보유하고있던 유골을 포함하여 남반부출신 희생자들의 유골 약 8 800여구를 넘겨주었으나 우리 북반부출신 희생자들의 유골은 단 1구도 반환하지 않고있는것이다.

일본외무성 외교기록관에서 발견된 자료 《조선출신군속의 유골반환에 관한 건》(북동아시아과 1957년 2월 5일)에는 《…일본사람에 대해서는 유골접수비 및 상제비로서 계 5 700￥을 지불하고 있지만 북조선측이 유골접수와 관련하여 그 어떤 지불을 요구하여도 그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으로…》라고 기록되여있다.

유골을 수집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려는 유가족들의 심정은 그 어느 나라나 다 같다.

그런데도 일본당국은 지난해말에 도꾜의 유텐지에 내버려져있는 선친의 유골을 찾아 일본을 방문하려던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유가족들과 관계자들의 입국을 가로막는 비인도주의적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그뿐만아니라 일본에서는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과거의 범죄력사를 부정, 미화한 력사교과서가 국가검정에서 뻐젓이 통과되는가 하면 정치가들에 의한 집단적인 야스구니진쟈참배놀음이 계속되고있으며 우리 나라의 고유한 령토인 독도에 대한 강탈책동이 묵인, 조장되고있는 등 제2차 세계대전전야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있다.

지금 우리 나라는 물론 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범죄적과거도 똑똑히 청산하지 않고 오히려 우경화, 군국화의 길로 줄달음치고 있는 일본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의 자리를 차지해보려고 발악하고있는데 대하여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지난 5월 5일 일본정부는 늦게나마 제2차 세계대전기간 일본기업들에 의해 징용되여 사망한 조선반도출신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본국내의 100여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표를 보내고 그 결과를 8월까지 남조선측에 전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조선인강제련행범죄와 관련하여 말한다면 그 주범이 구 일본국과 군부이고 여기에 가담한 기업만 하여도 1 500여개나 되며 그 대상이 북남조선뿐아니라 중국, 대만 등도 포함되여있다는것을 고려해볼 때 과연 일본정부의 이번 《결정》이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유골문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공정하게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내려진것인지 의문시하지 않을수 없다.

올해(2005년)는 일본이 패망한지도 60년이 되는 해이다.

이제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가족들도 70고령에 이르고있으며 적지 않은 유가족들은 혈육들의 행처조차 확인하지 못한채 세상을 떠나는 기막힌 현실이 지속되고있다.

일본정부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유골문제의 진상을 전면적으로 철저히 조사규명하고 그 전모를 시급히 공개하며 그에 대한 국가적책임을 인정하고 모든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공식사죄, 배상하며 희생자들의 유해를 모두 찾아 유가족들의 희망에 따라 그들의 고향 또는 가족들이 사는 곳에 안장하게 하며 유골문제를 산생시킨 범행자들을 찾아내여 책임소재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여야 한다.

조선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세계 여러 나라의 진보적이며 량심적인 단체 및 인사들과 함께 초미의 인권문제로 나서고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반인륜적인 과거범죄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조선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주체94(2005)년 5월 27일 평양

8.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련대 협의회 제3차회의에 제기한 조선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 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주체94(2005)년 9월 22일, 23일]

바로 한달전에 우리는 일제의 패망 60년을 맞이하였다.

벌써 여러해전부터 수많은 일본의 과거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 국제사회는 일본정부가 더이상 과거의 반인륜범죄의 청산을 미루지 말고 일제의 패망 60년까지는 과거청산을 위한 실천적조치를 취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여왔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러한 절절한 기대와 요구를 무시하고 끝끝내 과거청산을 위한 단 한건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패망 60년을 맞으며 일본사회를 지배한것은 수많은 아시아인민들을 학살하고 짓밟은 과거의 침략과 반인륜적범죄행위에 대한 반성과 개준의 노력이 아니라 파렴치한 자기비호와 자화자찬뿐이였다.

이와 같은 일본의 기만적이고 도전적인 과거청산회피처사는 피해자들과 희생자유가족들을 비롯한 아시아인민들의 분노와 환멸을 극도로 증대시키였다.

더우기 2005년은 일본의 대륙침략전쟁의 서막으로 된 청일전쟁의 종결 110년, 로일전쟁의 종결 100년이 되는 해이며 또한 일제가 조선의 국권을 탈취하기 위해 무력으로 강압한《을사5조약》의 날조 100년이 되는것으로 하여 조선인민은 물론 아시아인민들은 한세기가 넘도록 죄악의 력사를 청산하지 않고있는 일본에 대해 깊은 혐오와 반감을 느끼고있다.

이번 회의에서 지금까지 일본의 과거청산운동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앞으로 이 운동을 더욱 강력하게 밀고나가기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들이 토의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회의의 보고를 제기하려고 한다.

1) 일본의 과거청산운동에서 이룩한 성과

전시에 국가의 폭력기구에 의해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에게 배상을 하는것은 제2차 세계대전후 전후처리의 중요한 국제적관행으로 되여왔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패국인 도이췰란드는 패전후 나치스피해국들에 대한 국가배상에 이어 개별적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사업을 수십년동안 꾸준히 진행해왔으며 지난해(2004년)말까지 로씨야를 비롯한 세계 80개 나라의 나치스강제로동피해자 151만 6 000여명에게 27억 3 800만€의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이러한 도이췰란드에 비추어볼 때 같은 전패국인 일본의 전후처리과정은 매우 비인도적이고 불충분하며 형식적이였다고 말하지 않을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후 여러 아시아피해국들과 저들에게 유리하게 전후처리협정을 맺은 일본정부는 조선전쟁에서 얻은 폭리로 급속히 회복장성한 경제력을 등대고 그 성격도 명백치 않은 얼치기 《배상》으로 여러 피해국들과의 전후처리를 굼때버렸다.

일본이 법적으로 다 해결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국 및 지역들과의 전후처리가 얼마나 피해자들의 존재와 권리를 무시한 일방적이고 파렴치한것인가 하는것은 최근에 공개된 남조선일본회담의 관련문서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는것이다.

1990년대초에 이르러 전후배상과 관련한 재판 등을 통하여 일본에 의한 과거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전해지기 시작하였으며 특히는 1991년 김학순피해자의 고발을 계기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참혹한 조직적성폭력범죄인 일본군성노예문제에 세계의 이목이 대번에 집중되였다.

확실히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의 고발은 일본의 반인륜적전쟁범죄와 그 전후처리과정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일본의 과거청산운동을 크게 앙양시키는 계기로 되였다고 말할수 있다.

이때부터 피해각국에서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을 찾아내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벌어졌으며 지금까지 조선의 북과 남

에서 434명[북측 219명, 남측 215명(2005년)], 중국에서 60명(2002년), 대만에서 66명(2005년) 등 수많은 피해자들을 찾아낼수 있었다.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일본군성노예범죄가 구일본정부와 군부에 의해 저질러진 인류사에 전무후무한 반인륜적범죄라는데 대해 증언하였으며 그 조직성과 계획성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자료들앞에서 일본정부도 구일본정부의 관여를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피해국들은 물론 가해국인 일본에서까지 량심적인 인사들과 시민단체들이 일본군성노예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운동을 활발히 벌리였으며 그 결과 1992년부터는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에서도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론의되게 되였다.

1993년에 국제법률가위원회가 조사단을 파견하여 북남조선과 필리핀, 일본에서 현지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어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에서 녀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자가, 인권소위원회에서 내전을 포함한 전시조직적강간, 성노예제 및 노예류사행위에 관한 특별보고자가 임명되고 일본군성노예범죄와 관련한 보고서들이 여러차례 발표되였다.

특히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는 1996년에 일본정부가 일본군성노예범죄의 법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 배상하며 범죄와 관련한 모든 문서와 자료들을 공개하고 그것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며 범죄자들을 철저히 처벌할것을 권고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자의 보고서를 그대로 채택하였다.

또한 국제로동기구전문가위원회도 1996년과 1997년, 1999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5년의 년차보고들에서 일본군성노예행위를 강제로동조약에 대한 위반으로 규정하고 일본정부가 시급히 대책을 세울것을 요구하였으며 1999년 국제로동기구총회 기준적용위원회는 일본정부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국제기구들을 통하여 이룩한 이와 같은 성과들은 여러 나라와 지역의 관련단체들과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련대와 협력밑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인것이다.

2000년 12월 일본 도꾜에서 진행된 일본군성노예제를 심판하

는 녀성국제전범법정은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운동에서 분수령을 이루었다고 말할수 있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온 305명의 보도관계자들과 연 4 800여명의 방청자들이 지켜보는 속에서 국제적으로 명망있는 법률가들로 법정판사단을 구성하여 1주일동안 진행한 법정에서는 북남조선과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네데를란드, 동부띠모르 등에서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을 대표하여 모여온 64명의 피해녀성들이 일본군성노예범죄의 야만성과 포악성, 반인륜성을 낱낱이 폭로하였으며 각국의 검사단은 과학적인 론거와 증빙자료를 가지고 피고로 기소된 일본 쇼와 왜왕과 일본국가의 책임을 여지없이 까밝히였다.

일본군성노예제와 관련하여 법정에서 내려진 일본 쇼와 왜왕에 대한 유죄판결, 일본의 국가적책임선언이야말로 피해자들이 안고 살아온 한생의 원한과 고통, 국제사회의 정의가 내린 철추였다.

특히 이 법정에서 북남조선은 공동검사단을 구성하고 일제가 20만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에게 감행한 일본군성노예범죄와 관련한 일본정부의 국가적책임을 철저히 추궁하였으며 일본의 과거청산운동에서의 북남련대의 힘을 과시하였다.

10여년에 걸치는 각국의 시민단체들과 피해자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활동, 국제기구들의 련이은 책임추궁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구태의연히 반인륜적인 과거범죄에 대한 책임리행을 계속 회피하였으며 이에 대처하여 여러 나라와 지역의 피해자들과 운동단체들은 련대와 단결을 강화하면서 보다 활동을 조직화해나갔다.

이미 1992년 1월 8일에 남조선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비롯한 관련단체들이 피해자들과 함께 일본대사관앞에서 시작한 일본군성노예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수요시위가 올해(2005년) 9월로 670여차를 넘기였으며 지난해(2004년) 3월 17일에는 600번째의 수요시위에 련대하여 일본과 대만, 필리핀, 에스빠냐, 도이췰란드, 벨지끄, 미국 등지에서 세계동시수요시위를 진행하였다.

또한 2005년 8월 1일에 《전쟁과 녀성에 대한 폭력》일본네트워크를 비롯한 각국 관련단체들과 인사들의 헌신적인 지원과 노력에

의하여 도꾜의 한복판에 《녀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이 개관되여 아시아각국 성노예피해자들의 피해상과 고통에 대하여, 일본의 가해책임과 이 문제해결을 위하여 국제사회가 기울여온 노력에 대해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전해갈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게 되였다.

이밖에도 각국의 관련단체들과 연구자들의 진지한 연구조사에 의해 일본군성노예제의 범죄성과 불법성이 구체적으로 연구론증되였으며 일본군성노예제문제와 관련한 아시아련대회의가 7차에 걸쳐 진행되는 등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국제적인 회합들과 항의행동들이 수많이 진행되였다.

일본군성노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1990년대부터 1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급속히 전개되여왔다면 일제에 의한 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문제는 이미 1970년대부터 그 진상조사연구사업이 깊이있게 진행되여온 부문이라고 할수 있다.

1972년에 재일조선인들과 일본의 법률가, 학자, 문화인들로 조직된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은 수도 도꾜를 비롯하여 일본의 25개 도, 도, 부, 현에 지역조사단들을 조직하고 일본각지에서 일제에 의한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의 실태를 조사연구해왔다.

이 과정에 아끼다현에서 1만 4 470여명, 가나가와현에서 근 2만명, 지바현에서 6만 9 000여명, 오사까부에서 약 2만여명, 효고현에서 약 1만 8 000여명, 시즈오까현에서 8 000～1만여명, 고찌현에서 8 600여명, 에히메현에서 4 100여명, 야마구찌현에서 근 5 000명, 가가와현에서 근 2 000명 등 조선사람들이 일본에 끌려간 지역과 강제련행자수의 일부가 밝혀지게 되였다.

물론 일본 전국의 549개 지하구조물공사장과 1 500여개의 기업체, 수많은 군사기지건설장들과 지어는 농촌들에까지 수백만의 조선사람들이 끌려간것을 생각할 때 이 수자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이와 함께 야마구찌현, 히로시마현, 오까야마현, 아이찌현, 기후현, 나가노현, 시즈오까현, 도야마현, 가나가와현, 효고현 등지에서 그곳에 끌려갔던 중국인강제련행자들의 강제로동실태가 밝혀지고 가나가와현과 지바현에서 대만의 강제련행자들이 혹사당한

작업장들이 확인되였다.(《조선인강제련행의 조사기록》)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범죄와 함께 간또대지진시 조선인학살사건, 《우끼시마》마루폭침사건 등 조선인대학살사건들의 진상을 밝혀내기 위한 사업에서도 일정한 전진이 이룩되였다.

조선의 북과 남, 해외의 관련단체들은 지난 2003년 9월에 평양에서는 《우끼시마》마루폭침사건진상규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많은 연구자료발표와 생존자들의 증언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이 일본정부가 말하듯이 련합군이 설치한 기뢰에 맞아 일어난 우발적인 폭발사건이 아니라 일본군부가 계획적으로 조직한 조선인학살음모였다는것을 다시한번 확인하였으며 또한 사건이 있은지 60년이 되도록 수장된 희생자들의 유해를 구제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조치도 취하지 않은 일본정부의 비인도적인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 《우끼시마》마루사건은 일제가 패망하여 얼마 지나지 않은 1945년 8월 24일 아오모리현의 군사기지건설장에 강제로 끌려와 고역을 치르다가 해방을 맞이하여 조국으로 돌아가는 7 000~8 000여명의 조선사람들을 태운 일본해군선박 《우끼시마》마루가 마이즈루앞바다에서 원인모르게 폭발, 침몰되여 수천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다.

일본의 권위있는 법률가조직인 일본변호사련합회는 간또대지진시의 조선인학살만행과 관련하여 지난 2003년 7월 늦게나마 일본정부에 조선인학살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그 진상을 조사할데 대한 권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것은 조선인학살만행의 진상을 밝힐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 시민단체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투쟁이 있었기때문이다.

2004년 조선의 북과 남에서는 조선인강제련행자들과 관련한 42만 7 129명분의 명부가 공개되였다.

명부가 공개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전시장을 찾아왔는데 그중에는 강제련행체험자들이 자기의 이름을 확인하려 오거나 특히 돌아오지 못한 가족친척, 친우들을 찾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다.

일제의 창씨개명책동으로 하여 명부에 기입된 련행자들의 이름이 대부분 일본이름으로 되여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급히 명부를 번역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찾기 위한 사업을 벌렸으며 이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행방불명되여 소식을 모르던 가족친척의 행방을 알게 되였다.

일제의 강제련행, 강제로동범죄조사과정에 발견한 강제련행자들에 대한 미지불임금관련문서들과 수많은 절간들에 주인없이 쌓여있는 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들, 강제련행자들이 참을수 없는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으면서 가혹한 노예로동에 시달린데 대한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증언 등은 일본의 강제련행, 강제로동범죄가 《헤그륙전법규》나 《제네바협약》, 《노예금지협약》, 《강제로동에 관한 조약》 등 여러 국제관습법들을 란폭하게 위반한 전쟁범죄, 반인류범죄라는데 대해 여실히 보여주었다.

새 세기를 전후하여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운동은 주제별로 분산적으로 벌어지던 지난 시기의 틀에서 벗어나 련대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보다 다각적인 운동으로 발전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다시말하여 각국의 운동단체들이 서로 련계를 긴밀히 하면서 일본군성노예제나 강제련행, 집단학살 등 일본의 과거범죄의 해결을 촉구하는 운동과 일본의 교과서외곡, 일본집권자의 야스구니진쟈참배,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진출책동을 반대하는 운동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면서 운동을 폭넓게 조직전개한것이다.

특히 2003년 중국 상해에서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일배상요구단체들과 인권옹호단체들, 활동가들, 연구자들을 망라하는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련대협의회가 결성된 후 대일과거청산운동과 일본의 군국화반대투쟁이 국제적규모에서 더욱 힘있게 전개되게 되였다.

국제련대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태평양전쟁이 발발한지 63년이 되는 지난 2004년 12월 8일 북남조선과 일본, 중국, 필리핀, 네데를란드, 미국의 48개 단체들과 인사들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기자회견에서 발표하였다.

평양과 서울, 도꾜, 로스안젤스, 헤그 등지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는 옳바른 과거청산도 없이 유엔안전

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진출을 서두르는 일본의 온당치 못한 처사를 규탄하면서 일본이 반인륜적인 과거범죄를 청산할 때까지 상임리사국진출을 끝까지 반대하여 투쟁할 굳은 의지를 표명하였다.

특히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된 일본의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진출을 반대하고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서명운동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수백수천만명의 적극적인 참가를 이룩함으로써 강력한 국제적여론을 형성하였다.

국제련대협의회의 대표들은 지난 4월에 있은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 제61차회의에 참가하여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비롯한 과거범죄청산을 거부하고있는 일본정부에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가 필요한 권고를 제기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게 북남조선과 일본,미국, 네데를란드, 필리핀, 카나다, 영국, 뉴질랜드 등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각계 인사 40여만명이 수표한 서명문을 제출하였다.

이어 지난 6월 30일에도 재미조선인 및 화교, 미국과 네데를란드 등의 인권단체대표들이 유엔청사를 방문하여 세계 41개 나라 정계, 사회계의 저명한 인사들을 비롯하여 4 200만명이 서명한 서명문을 유엔사무총장의 특별고문에게 전달하면서 일본의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진출을 반대하는 의사를 강력히 표명하였다.

이밖에도 국제적인 규모에서는 물론 각 나라들과 지역안에서 일본의 과거범죄를 규탄하고 력사외곡과 군국화 등을 반대하는 운동이 여러가지 형태와 방법으로 끊임없이 진행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종결 60년을 맞으며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적분위기는 전례없이 높아졌다.

2) 과거청산을 거부해온 일본의 전후 60년

그러나 과거책임을 기어이 회피하려는 일본의 비렬한 책동으로 하여 일본의 과거청산문제의 해결전망은 더욱더 어두워지고있다.

패망 60년을 맞으며 발표한 담화라는데서 일본의 현집권자는 평화라는 말을 12번이나 외우며 마치도 일본이 국제평화와 번영을 위해 커다란 기여를 한듯이 요란히 광고하면서 일본의 전후력사는 전쟁에 대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준 평화의 60년이였다고 꺼리낌없이 말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납득되지 않는 기만이고 뻔뻔스러운 자화자찬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이 보여주었다는 반성의 행동이란 결코 가해에 대한 사죄와 배상, 패권주의, 지배주의에 대한 개심이 아니라 범죄흔적의 은페와 제국주의, 국수주의의 재생부활이였다.

지금까지 전후배상문제에 림해온 일본정부의 행적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일본정부는 일제의 침략정책의 참혹한 피해자들에게는 한푼의 배상을 하는것도 거부하면서 그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목숨을 빼앗은 가해자들에게는 일찍부터 상금과 같은 은급을 주는 제도를 내오고 극진한 대우를 해주고있다.

일찌기 1952년에 《전상병자, 전몰자유가족 등 원호법》을 제정한 일본정부는 련이어 《미귀환자부재가족원호법》(1953년), 《전상병자특별원호법》(1959년), 《전몰자 등의 유가족에 대한 특별조위금지급법》(1965년) 등 15개이상의 원호법을 제정하고 과거 일제의 침략전쟁정책수행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지금까지 수십조¥의 원호금을 지출해왔다.

여기서 문제로 되는것은 이 원호법들이 모두 부당한 국적조항을 설정하고 일제가 군인, 군속으로 끌어다 혹사시킨 조선인, 대만인 등에 대해서는 현재 일본국적이 아니라는 리유로 법적용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하고있는것이다.

저들이 식민지로 지배하고있을 때에는 《황국신민》이라고 하면서 수백만이나 징병, 징용으로 끌어다 희생시키고 일본군인으로 전범재판까지 받게 하고는 배상을 할 때에는 일본사람이 아니라고 배척하고있는것이다.

말하자면 일본의 《전쟁희생자원호》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을 군사적으로 직접 맡아수행한 일본민족성원들에게 감사와 경

의의 뜻으로 주는 배타적이고 극우민족주의적인 특혜이지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사죄와 배상이 아니라는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자기가 저지른 반인륜적인 전쟁범죄, 침략행위를 죄악으로 인정하지 않고있다는것을 말해주며 피해자들의 사죄와 배상요구를 무자비하게 묵살해버리는 일본정부의 처사가 그것을 현실로 증명해주고있다.

그 대표적실례로 지금 일본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있는 전후배상관련재판을 들수 있다.

1972년 손진두피폭자수첩재판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일본의 과거피해자들이 일본재판소들에 제기한 피해소송건수는 약 70건(일본인의 소송은 제외), 모두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소한것이며 그중 6건은 일본정부와 강제로동관련기업체들을 함께 제소한것이다.

30여년동안 계속되여온 이 수십건의 배상청구소송중에서 3심까지 승소한것은 겨우 1건(원자폭탄피해)에 불과하며 2심에서 승소한 2건(원자폭탄피해, 강제로동)과 1심에서 승소한 2건(원자폭탄피해, 강제로동)까지 합해야 겨우 5건, 전체의 7%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의 재판소들에서는 일본군성노예나 강제련행, 강제로동, BC급전범문제 등 어느 류형의 재판에서나 피고로 제소된 일본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있으며 일부 원고의 피해사실을 인정한다 해도 시효와 제척기간 특히는 전후 량국간협정에 의해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였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넘기면서 피해자들의 제소를 기각시키고있다.

그리고는 피해자들의 항의에 피해구제와 관련한 현행법이 없으므로 어쩔수 없다는 구실을 대고있다.

국가와 사회의 법규범과 질서를 통제감독하는 사법기관이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것은 결국 피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것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일본이 진실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할 의지만 있다면 립법같은것은 문제로도 되지 않을것이며 관련단체들과 피해자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노력에 의하여 마련된《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 해결 촉진법안》이 지금과 같이 6년동안이나 계속 국회심의에서 보류되는것과 같은 일도 없을것이다.

일본군성노예문제가 거론된지 20년이 되여오고 다음해이면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 특별보고자의 첫 권고가 나온지 10년이 되지만 그동안 일본정부가 성노예피해자들을 위해 해놓은 일이란 그들을 더욱 괴롭혀온것뿐이다.

일본정부는 성노예범죄에 대한 구일본정부의 관여를 보여주는 론박할수 없는 당시의 문건들앞에 마지 못해 정부의 관여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어설프기 그지없는 두차례의 조사보고서(1차 1992년 7월 6일, 2차 1993년 8월 4일)를 냈을뿐 지금까지 아무런 구제조치도 취하지 않고있다.

그리고는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5년 7월 《녀성들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이하 《국민기금》)이라는것을 조직해냈는데 이것은 민간인들에게서 거두어모은 얼마간의 《자선금》, 《위로금》으로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한 국가배상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국민기금》관계자들은 일본국가명의의 배상을 요구하는 여러나라의 피해자들에게 《기금》에서 주는《위로금》은 그대로 받고 국가배상도 따로 받으면 된다고 하면서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어려운 생활형편을 거들며 집요한 설득과 회유 지어는 협박의 방법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또한 피해자들과 운동단체들을 분렬시키기 위한 비방중상도 서슴지 않았다.

많은 피해자들이《국민기금》의《위로금》을 거절하고 또《위로금》을 받았던 피해자들속에서도 그것을 되돌려보내는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국민기금》으로 일본군성노예문제가 다 해결된듯이 여론을 오도하고있다.

지난 8월에도 일본외무성은 패망 60년에 즈음하여 일본군성노예문제는 관계국들과의 일괄처리협정에 의해 법적으로 다 해결되였다는 립장을 다시금 밝히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범죄의 실상을 가리우려고 비렬하게 책동하고있는데 그 가까운 실례가 바로 올해(2005년)초에 알려진

NHK방송에 대한 일본우익정치가들의 압력사건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이 사건은 지난 2001년 1월 NHK방송이 만든 녀성국제전범법정을 다룬 련속편집물《전쟁을 어떻게 재판하겠는가》의 속편 《따져지는 전시성폭력》의 내용이 방영직전에 우익보수정객들의 압력에 의해 일본의 전쟁책임을 가리우는 방향에서 대폭 수정된 사건이다.

사건의 장본인들인 현 자민당간사장대리 아베 신조와 경제산업상 나까가와의 압력에 의해 편집물은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한 이전 일본군인의 가해증언과 피해자들의 증언은 물론 왜왕 히로히또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일본의 국가적책임을 선언한 장면까지 빼버리고 《법정》을 비난하는 우익반동들의 발언을 첨가한 얼뜨기 작품이 되버리고말았던것이다.

이 우익보수정객들은 사건의 책임을 따지는 사회적여론이 높아지자 나중에는《법정》에 참가한 우리 단체 성원들이《북의 공작원》이라느니, 《법정이 북을 피해자로 만들기 위한 큰 모략》이라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망발까지 늘어놓았다.

이것은 일본의 반인륜적인 조직적성폭행범죄의 국가적책임을 선언한 국제법정의 권위와 위상을 훼손시킴으로써 일본사회에 과거범죄의 책임을 추궁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전달되는것을 막고 일본국민들속에서 반공화국적대감정을 유발하여 그들의 과거청산의식을 마비시키려는 정치적타산이 깔린 의도적인 망발이 아닐수 없다.

최근 일본의 절간들에 수많은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이 내버려져있는 사실이 크게 문제시되면서 일제의 강제련행, 강제로동정책에 의한 피해의 연장으로, 희생자들에 대한 2중3중의 인권침해로 사회적여론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 유골문제로 말하면 일본정부와 기업체들이 저들이 관권과 군권을 동원하여 전쟁마당과 고역장에 끌어다 희생시킨 수많은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을 제대로 분류도 하지 않은채 봉환하였으며 그나마 제때에 고향과 가족들에게 송환하지 않고 전후 60년이 지나도록 일본 각지에 있는 절간들의 구석에 내버려두고있은 심각한 인권침해문제이다.

수천수만의 유가족들이 수십년세월 소식없는 혈육을 기다리며 안타까움속에 해를 넘기고 또 유해도 없는 제사를 지내며 눈물을 흘리고있을 때 희생자들의 유골은 가족들의 애달픈 추모의 정마저 받지 못한채 만리타향에서 그 형체마저 사라져가고있는것이다.

2004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본 도꾜 유텐지에 보관되여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명단을 입수하고 그 유가족들을 찾는 사업을 진행하여 7명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을 찾아냈으며 그들이 혈육의 유골이라도 찾아보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일본당국은 반세기이상이나 지나 찾아와 선친의 넋이나마 만나보고싶어하는 유가족들의 소원을 짓밟고 비렬한 방법으로 그들의 일본입국을 차단해버림으로써 유가족들의 가슴에 칼질을 하는 용납할수 없는 비인간적행위를 저질렀다.

조사에 의하면 일본 방방곡곡의 절간들과 진쟈들에 이런 수많은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이 쌓여있는데 대표적인것만 보더라도 일본 효고현 아이오이시 젠고지에 60여구, 후꾸시마현내 30여개 절간에 100여구, 도꾜 유텐지에 1 100여구, 홋가이도 홍간지의 별원에 100여구나 있다고 한다.

이런 유골들은 대부분이 여러명 혹은 10여명씩 합장되여있어 개별성을 상실하였으며 어떤것들은 명단상으로는 10여명분으로 되여있지만 실지로는 2명분밖에 되지 않거나 지어는 유골함에 돌이나 종이쪼박같은것들이 들어있는 등 매우 한심한 형편이다.

뿐만아니라 일본 나고야시내에 있는 유골보관소에서는 유가족들을 찾기 위해 노력해보지도 않고 필요한 신원확인도 하지 않은채 조선인강제련행자들의 유골들을 제멋대로 분쇄처리해버리는 반인륜적망동을 부리였다.

사망자의 유골문제에 대해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떠들고있는 일본이 한두사람분도 아니고 과거 저들이 끌어다 희생시킨 수천수만명 희생자들의 유골을 되는대로 방치, 처리하고있는 이와 같은 2중적행동은 그대로 일본의 민족배타주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발현인것이다.

과거청산에 거부적인 일본정부의 묵인비호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우익세력에 의해 지금 일본에서는 과거범죄부정, 력사외곡이 급진적으로 추진되여 그야말로 돌이킬수 없는 지경에로 내닫고있다.

오늘 일본의 력사교과서들에서 일본군성노예나 강제련행문제에 대한 언급조차 사라지고있으며 백주에 남의 나라 령토가 일본땅으로 씌여지고 과거에 저지른 침략과 략탈, 범죄행위가 공공연히 찬미되고있는 형편이다.

일본정부가 올해 검정에서 합격도장을 누른 후소샤의 력사교과서에 일본군성노예문제는 아예 올라있지도 않고 강제련행사실은 징병, 징용제의 확대적용으로 씌여져있으며 일본의 식민지지배가 조선의 근대화를 가져왔다는 등으로 황당무계하게 외곡된것이다.

일본의 력사교과서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다름아닌 제국주의적사관으로 체질화된 일본의 우익정치가들 나아가서 일본당국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돌이켜보면 일본에서 력사교과서에 대한 1차(1955년), 2차(1982년), 3차공격(1996년)은 모두 자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국회에서부터 시작되였으며 그와 일체화된 문부과학성은 그때마다 교과서검정을 강화하여 일본의 침략과 가해사실을 약화시키거나 한때는 말살해버리기까지 하였다.

특히 1990년대에는 1～2년사이에 《밝은 일본 국회의원련맹》, 《옳바른 력사를 전하는 국회의원련맹》, 《일본의 전도와 력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들의 모임》 등 여러 우익정치인단체들이 조직되여 대기업체들의 후원밑에 공권력을 휘두르며 대규모적인 력사개악운동을 벌리였다.

특히 《성노예력사는 화장실력사》라는 망언으로 국제사회를 격분시킨 《새로운 력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100여명의 중의원 및 참의원 의원들이 참가하는 자민당의 력사검토위원회를 지지기반으로 하고있으며 이 모임이 만들어낸 가장 악질적인 후소샤의 력사교과서가 《매우 균형적이고 교과서로서 합격하기에 충분한것》(2001년)으로 문부과학상의 높은 《평가》를 받고있는것이 일본의 현실인것이다.

지난해(2004년)말에도 현문부과학상 나까야마는 《이전의 력

사교과서는 매우 자학적인것으로서 최근에야 겨우 성노예라든가 강제련행이라는 소리가 줄어들어 정말 좋다.》고 하면서 외곡된 력사교과서를 공공연히 찬양하였다.

지금 일본당국은 력사교과서외곡에 대한 아시아주변나라들의 경계와 항의를 내정간섭으로 일축하면서 들은척도 하지 않고있으며 문부과학성이 직접 나서서 교육현장에서 외곡된 교과서를 받아물것을 선동하고있다.

이렇게 우경화된 당국의 든든한 뒤받침밑에 우익분자들은 마음놓고 력사외곡에 박차를 가하고있으며 새 세대들에게는 《애국주의》라는 비단보자기에 감싼 위험한 민족배타주의, 국수주의가 합법적으로 주입되고있는 형편이다.

일본정치가들의 야스구니진쟈참배문제도 그렇다.

일제가 패망한 후 지금까지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한 일본수상은 14명이나 되며 그중에서 현 고이즈미수상은 임기중에 4번이나 방문함으로써 최고참배수를 기록하였다.

고이즈미총리는 야스구니진쟈참배에 대하여 전쟁에 가지 않으면 안되였던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경의를 담아 참배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곧 진쟈에 합사된 전몰자들과 전범자들을 잘못된 전쟁의 희생물이나 범죄자로 보는것이 아니라 애국적위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예로운 전사자》로 여긴다는것이며 수많은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한 전쟁도 결국은 《애국적인 정당한 전쟁》으로 본다는것을 의미한다.

지금 일본에서 야스구니진쟈참배가 애국심의 표현으로 인정되고 마치도 수상이 될수 있는 자격기준이라도 되는듯이 선거공약에까지 오르고있으며 수상의 참배를 공식화, 정례화하는 분위기가 굳어져가고있다.

이에 보조를 맞추어 《모두가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하는 국회의원의 모임》이라는것까지 만든 우익적인 정치가들은 패망 60년이 되는 지난 8월 15일에만도 50여명이 무리로 참배하는가 하면 후생로동상과 환경상을 비롯한 고위관료들도 뻔질나게 야스구니진쟈를 드나들고있다.

말하자면 지금 일본에서는 당국이 앞장에 서고 정계, 재계,

언론계가 일체화되여 우경화, 군국화를 다각적으로 광범위하게 급속히 추진하고있는것이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조장형성되고 강화되고있는 우경화의 기류를 타고 지금 일본에서는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민족적차별과 박해, 독도강탈움직임, 히노마루, 기미가요문제, 조어도분쟁 등 수많은 사회정치적문제들이 터지고있다.

대낮에 재일조선인학생들이 옷을 찢기우고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매일과 같이 벌어지고있으며 지난 1998년에는 지바현의 총련일군이 사무실에서 방화학살되는 끔찍한 만행까지 일어났다.

아시아인민들의 머리우에 침략과 략탈의 상징으로 나붓기던 히노마루를 학생들의 졸업식에서 게양하고 기미가요를 부를것을 강요하고있으며 그를 반대한 교원들에게 처벌을 가하고있는 형편이다.

그런가 하면 조선의 고유한 령토인 독도를 제멋대로 일본땅《다께시마》라고 하면서 그 무슨《다께시마의 날》이라는것까지 제정하는 아연실색할 놀음까지 벌리고있다.

력사적으로 볼 때 독도는 이미 1 500여년전에 벌써 조선의 령토로 되여있었으며 일본자체도 그를 인정하고 많은 고지도들에 독도를 조선의 섬으로 표기해왔다.

그런데 이제와서 독도가 1905년에 시마네현에 소속되였다고 하면서 재외일본대사관 성원들이 독도를 일본령토라고 선전하고 다니는가 하면 문부과학상이 어린 학생들에게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강연하고 지어는 국가의 최중요문건인 국방백서에 독도를 일본령토로 명기하는 등 국내외에서 여론을 조성해가며 본격적인 령토강탈에 나선것이다.

지금 조어도를 둘러싸고 이와 류사한 분쟁이 중국과의 사이에서도 일어났는데 이러한 령유권주장이야말로 명백한 령토침략행위로서 앞으로 일본이 어떤 길로 나갈것인가를 말해주는 청사진이라고 할수 있다.

이런 나라가 유엔기부금을 턱대고 자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이 되여야 한다고 떠들면서 그렇게 되지 못하면 유엔기부금을 삭감하겠다느니 뭐니 하고 국제사회를 위협해나서기까지 하고있다.

유엔을 출자몫에 따라 결의권을 배당하는 그 무슨 주식회사처럼 치부하는 이런 거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는 그대로 유엔에 대한 모독이고 세계인류에 대한 우롱이 아닐수 없다.

과거의 죄행에 대한 집요한 부정외곡과 청산회피, 광신적인 군국주의고취, 고속으로 추진되고있는 군사대국화와 령토강탈책동, 이 모든것은 일본이 또다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파괴하던 60여년전의 제국주의국가로 다시 되돌아가고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지금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일본인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건물들이 련이어 생기고 일본상품들이 구매자들의 배척을 당하며 재외일본대사관들앞에서 항의행동이 벌어지는 일이 더 자주, 더 많이 일어나고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일본에 대한 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가라고 말할수 있다.

일본은 객관적이고 리성적인 판단과 사고로 자국의 처지와 립장, 세계의 요구와 흐름을 똑바로 알고 시대착오적인 과거청산회피, 군국화책동을 당장 그만두어야 하며 일본의 과거피해자들을 비롯한 아시아인민들과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것이다.

부 록

2000년 녀성국제전범법정에 제출한 북남공동기소장

우리 나라의 조선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와 남조선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공동검사단을 구성하고 주체89(2000)년 12월 일본 도꾜에서 진행된 일본군성노예제를 재판하는 녀성국제전범법정에 북남공동기소장을 제출하였다. 《통일신보》 주체90(2001)년 2월호와 3월호들에 기소장의 요지가 련재되였다.

제1부. 개인의 형사책임

왜왕 히로히또와 다른 7명의 개별범죄자들에 대한 북남검사단의 기소

기 소 장

일본군성노예제를 재판하는 녀성국제전범법정(아래부터는 법정이라고 한다.)북남검사단은 본법정 헌장 제11조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따라 왜왕 히로히또와 도죠 히데끼, 미나미 지로, 이따가끼 세이시로, 오까무라 야스지,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끼찌, 마쯔야마 유조를 아래와 같이 전쟁범죄와 인도에 대한 죄로 기소한다.

배 경

구일본국과 군이 조선강점기간에 조선녀성을 기본으로 하여 벌린 일본군성노예행위는 일정한 사회력사적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감행된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성노예제였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무력강점

1.1 19세기 후반기에 이르러 조선봉건왕조는 조선을 근대국가로 만들기 위하여 여러모로 노력하였다. 한편 일본제국은 조선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확보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

당시 조선은 지리학적으로 볼 때 중국으로 통하는 길목에 자리잡고있었고 풍부한 인적 및 물적자원을 가지고있은것으로 하여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었다.

1.3 1868년 명치유신이후 일본제국주의는 무력으로 조선을 예속시킬것을 주장하는 《정한론》에 기초하여 조선에 대한 침략적인 팽창주의정책을 실시하여왔다. 일제는 《정한론》을 관철하기 위하여 《부국강병》의 구호밑에 국가실력배양을 위해 광분하는 한편 조선에 대한 침략행위를 공공연히 감행하였다.

1.4 일본은 1875년 《운양》호사건을 조작하고 일본에만 특혜를 주는 불평등한 《강화도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이어 조선과 서유럽렬강들사이에도 불평등조약들이 체결되게 되였다.

1.5 청일전쟁(1894년－1895년)이후 일본은 시모노세끼조약(1895년)으로 청나라로 하여금 조선에서의 일본의 지배적인 지위를 인정케 하였다.

일본은 1902년 1월 30일 영국과의 동맹협약과 1905년 미국과의 가쯔라－타프트 비밀협정들을 통하여 이러한 지위를 담보하게 하였다.

1.6 일본은 1904년 로일전쟁을 기화로 조선에 10만의 정규무력을 들이밀어 조선을 무력으로 완전히 강점하고 조선에서의 독점적지위를 확립하였다.

1.7 일본은 저들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거하여 1905년에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하고 1907년에는 《정미7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의 내정권까지도 완전히 빼앗았으며 1만명

도 안되는 조선군대마저 해산해버렸다.

조선의 외교권과 내정권, 무력을 장악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1910년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고 조선강점을 내외에 공식선언하였다.

1.8 일제는 조선강점후 권력불분립 군부독재를 조선통치의 기본방식으로 규정하고 왜왕의 칙령에 따라 일본 륙해군대장들을 조선총독으로 파견하였다.

일제는 조선에서 절대군주와도 같은 총독을 최고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의 권력지배체계를 세워놓고 조선인민에 대한 군정통치를 실시하였다.

일제는 조선에 수만명의 일본군을 고착배치하고 조선인민들에 대한 탄압에 수만명의 경찰뿐아니라 방대한 헌병무력까지 내몰았다.

1.9 일제가 조선에서 전횡적인 폭압통치를 실시하는동안 독립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국내외에서 계속 벌어졌다.

일제의 조선민족말살정책

1.10 일제는 조선강점시기 조선민족자체를 없애버리기 위하여 동화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였다. 일제는 《동조동근》에 대해 떠들면서 《내선일체》의 미명밑에 《창씨개명》, 《궁성요배》,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일제는 또한 《국어》라는 명목으로 일본말사용을 의무화하였다.

일제는 조선의 우수한 민족문화전통을 거세말살하기 위하여 반만년의 유구한 조선력사를 외곡서술하고 우리 나라의 귀중한 문화재와 유적, 유물들을 마구 파괴하고 략탈해갔다.

1.11 일제는 《국가총동원령》(1938년)의 미명밑에 저들의 리익과 전쟁수행을 위해 조선의 수많은 인적 및 물적자원을 략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일제는 840만여명의 조선인청장년들을 저들의 로동력으로, 군인, 군속으로 강제로 끌어갔다. 일제에 의해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강제로동과 노예생활을 강요당하였으며 지어는 일본군의 총알받이로 생죽음까지도 당하였다. 또한 헤아릴수 없이 많은 조

선의 혁명가들과 애국자들, 무고한 인민들이 비법적인 감금과 고문, 비인간적인 학대를 받았으며 지어는 즉결처형을 언도받거나 닥치는대로 살해당하기까지 하였다.

강제련행의 이러한 상황이 바로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어갈수 있은 배경으로 된다.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의 착취와 략탈

1.12 조선에 대한 일제의 경제적략탈에서 기본은 농촌경리에 대한 수탈이였다.

그것은 일제의 강점당시 락후한 봉건국가였던 조선에서 농촌경리가 경제의 기본명맥을 이루고있었던 사정과 관련된다.

1.13 일제는 《토지조사령》, 《산미증식계획》, 《량곡공출제》의 미명밑에 수많은 조선농민들에게서 토지소유권을 빼앗고 그들을 소작농으로 전락시켰다. 일제가 조선을 저들의 주요식량공급기지로 삼고 다량의 식량을 략탈해감으로써 조선의 식량형편은 더욱더 심각해졌다.

일제의 혹심한 경제략탈책동으로 말미암아 토지와 먹을것을 다 잃은 수많은 조선농민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 일자리를 찾아헤매거나 일본인지주나 조선인지주들의 소작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1.14 중일전쟁이 장기화되고 태평양전쟁이 박두하자 일제는 조선의 농민들뿐아니라 전체 조선인민에 대한 략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일제는 조선인로동자들에게 일본인로동자들의 1/2～1/3밖에 안되는 낮은 임금을 지불하면서도 보잘것없는 수입마저 절반이상을 각종 명목의 세금으로 강탈하였다.

1.15 일제는 태평양전쟁에 접어들면서 공출제를 더욱 강화하여 조선의 흰쌀을 비롯한 농토산물과 철, 석탄, 목재, 수산자원 등을 마구 략탈해갔다. 일제는 이에만 그치지 않고 전쟁에 리용할수 있는 것이라면 인민들의 기호품이나 생활도구마저 모조리 긁어갔다. 일제는 태평양전쟁이 본격화되자 1942년부터 매해 300만t의 송탄유를 생산, 략탈해감으로써 조선의 산과 들을 벌거숭이로 만들었다.

일제지배밑에서의 조선녀성들의 처지

1.16 일제지배밑에서 조선녀성들의 처지는 당시 조선의 정치적 및 경제적상황에 비추어 가정, 교육, 로동의 세가지 측면에서 분석될수 있다.

일제의 지배밑에서 당시 조선사람들은 선거할 권리와 정치에 참가할 일반적인 권리마저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조선녀성들도 매우 한심한 처지에 놓여있었다.

주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조선녀성들은 주로 조선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민족주의 및 사회주의운동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일제는 그 어떤 형태의 민족해방운동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으며 조선인민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시되였다. 따라서 조선녀성들이 조선사람으로서 또한 녀성으로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사회적운동의 공간은 말살당하였다.

1.17 1929년부터 시작된 대공황은 조선의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경제공황의 시작과 함께 일제는 중국을 침략하고 태평양전쟁을 일으켰으며 조선을 저들의 전쟁수행을 위한 군수물자보급기지로 만들고 조선의 경제를 위기에 빠뜨렸다.

특히 조선의 농업이 단일작물로서 쌀생산을 위주로 하고있던 조건에서 쌀값의 폭락은 조선의 농촌경리를 더욱 비참한 상태에로 몰아갔다.

일제가 저들의 전쟁수행을 위하여 조선에서 대량의 흰쌀을 닥치는대로 략탈해갔기때문에 전체 조선인민은 기아의 상태에서 허덕이였다.

1.18 이러한 혹심한 경제적상황은 녀성들에게 보다 많은 근심과 고통을 가져다주었다. 농촌녀성들인 경우 집안의 생계를 위해 로동강도를 더욱 높여야 하였다.

《농촌녀성은 소 한마리보다 더 낫고 힘도 세다》는 당시의 속담이 그때의 녀성들의 처지를 잘 반영하고있다. 녀성들은 농사일뿐아니라 가정일도 돌보고 집안의 끼니걱정도 해야 하였다.

녀성들은 쑥이나 감자, 조, 비지 등을 먹어야만 했으며 이런것조차 없는 경우에는 풀이나 나무잎, 나무껍질 등을 벗겨 식구들을 먹여살려야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돕고

입을 하나라도 덜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집을 떠나야 하는것은 다름아닌 처녀들이였다. 그것은 가부장적가족제도밑에서 녀성들이 가정의 가장 하찮은 존재로 치부되였기때문이다.

1.19 조선강점시기 일제는 이전에 조선에 존재하여오던 가부장적가족체계와 일본식의 호주제, 호적제를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통제체계를 강화하였다.

녀성들의 법적지위는 명백히 가정의 보조적성원에 불과하였다. 녀성들은 법적으로 무능하고 모든 법적활동에서 보호자를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가족제도는 그들을 가정에 얽매여놓고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머무르게 하였다.

1.20 당시 조선녀성들에 대한 교육은 완전히 침체상태에 놓여있었다.

1919년 조선녀성들의 초등학교입학률은 0.7%도 되지 않았다.(남성의 입학률은 5.3%)

1930년에 이르러 그 비률이 5.7%로 장성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였다. 특히 상급교육을 받는데서 녀성들은 상당한 제한을 받았다.

1931년까지 녀자중학교에 기록된 녀학생수는 5 000명을 넘지 못하였다. 심지어 상급교육을 받은 신식녀성이라 해도 당시의 정치경제적상황으로 하여 직업을 가질수 없었다.

일제의 식민주의적이며 군국주의적인 지배밑에서 사회활동에 참가할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이러한 녀성들 역시 결혼과 가정에 파묻혀버리고말았다.

1.21 일제의 강점과 경제공황으로 하여 녀성들은 직업을 구하는데서까지도 극도의 제한을 받았다.

일제는 조선에 녀성로동력이 기본으로 되는 로동집약적인 경공업을 끌어들이였다.

실례로 1934년 방직공장 녀성로동자의 비률은 전체 로동자수의 80～90%에 달하였다. 그들중 대부분은 12～15살밖에 안되는 어린 소녀들이였다. 조선인녀성로동자들이 하루 14～15시간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은 일본인 남성로동자의 4분의 1, 일본인녀성로

동자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1.22 조선녀성들이 극도의 경제적빈궁에 직면하고 녀성의 사회적지위가 낮았던 당시의 환경속에서 일제는 제마음대로 사기와 폭력의 방법으로 조선녀성들을 성노예로 강제련행해갈수 있었으며 이러한 체계적인 성노예련행은 오직 조선사회에 대한 정치적 및 군사적지배와 정보통치밑에서만 가능한것이였다.

침략전쟁과 일본군《위안소》의 지리적위치

1.23 1937년 중일전쟁이후 일제는 침략전쟁을 확대시켜 북쪽으로는 알류산렬도까지, 동쪽으로는 태평양의 솔로몬제도까지, 남쪽으로는 뉴기니아를 비롯한 중남태평양제도까지, 서쪽으로는 인디아양의 안다만과 니코바르, 먄마에까지 이르렀다.

련합군과 일본군이 작성한 문서에 의하면 일본군이 주둔한 곳이면 어디든지 《위안소》가 설치되여있었다. 또한 일본본토와 중일전쟁전에 일제에게 강점된 조선, 대만, 중국동북지방에도 《위안소》가 꾸려졌다.

1.24 일제는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위안소》를 위한 안전한 공급대상으로 삼았다. 일제의 발길이 닿는 모든 지역들에는 《위안소》가 설치되였으며 특히 조선녀성들은 최전방에까지 끌려다녀야 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생명이 위협당하는 장소들에서까지도 성폭행을 당했다는것을 보여준다.

피 고

2.1 히로히또(1901년－1989년): 1926년부터 1988년까지 왜왕

2.2 도죠 히데끼(1884년－1948년): 1937년 관동군 참모총장, 1938년 륙군차관, 1940년 7월부터 륙군대신, 1941년 9월부터 1944년 7월까지 총리대신, 륙군대신, 내무대신 겸임

2.3 오까무라 야스지(1884년－1966년): 1932년 상해파견군 참모부장, 1938년 6월부터 1940년 3월까지 중지나지역 제11군 사령관, 1944년 11월부터 패전때까지 중국파견군 사령관

2.4 미나미 지로(1874년－1955년): 1929년 8월 《조선군》사

령관, 1931년 4월 륙군대신, 1934년 12월 관동군 사령관, 1936년 8월부터 1942년 5월까지 조선총독

2.5 이따가끼 세이시로(1885년-1948년): 1936년 3월 관동군 참모총장, 1938년 6월부터 1939년 8월까지 륙군대신, 1939년 9월부터 1941년 7월까지 중국파견군 참모총장, 1941년 7월부터 1945년 4월까지 《조선군》사령관, 1945년 4월 제17군 사령관 겸임

2.6 우메즈 요시지로(1882년-1949년): 1936년 3월부터 1938년 5월까지 륙군차관, 1938년 5월부터 제1군 사령관, 1939년 9월부터 1944년 7월까지 관동군 사령관, 1944년 7월부터 패전까지 군참모부장

2.7 안도 리끼찌(1884년-1946년): 1938년 5월부터 11월까지 제5사단 사령관, 1938년 11월부터 1940년 2월까지 제21군 사령관, 1940년 2월부터 1940년 10월까지 남지나군 사령관, 1941년 11월부터 1944년 3월까지 대만군 사령관, 1944년 3월부터 제10군 사령관, 1944년 12월부터 패전까지 대만총독

2.8 마쯔야마 유조(1894년-1947년): 1939년 27사단보병련대 사령관, 1942년 12월부터 패전까지 먄마방면군 제56사단장

상관의 권한

3.1 1926년 12월부터 1989년 1월까지 히로히또는 왜왕이였다. 1926년부터 1945년까지 그는 일본국가의 대표자였고 일본제국의 헌법에 따라 사법, 행정, 립법 등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유일한 최고주권자였다.

3.2 히로히또는 일본륙해군의 총사령관이였다. 그는 방어 및 작전계획, 평화시기와 전시밑에서의 무력사용, 훈련, 부대 및 군인들의 내부조직 및 처벌규정들에 관한 지시 및 명령권한을 가지고있었다.

그는 파견부대들에 대한 지휘통제권한도 가지고있었으며 작전수행에 대한 책임을 직접 맡은 참모총장을 임명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있었다.

왜왕의 명령에 따라 매 파견부대들은 지정된 장소로 자리를 이동하였으며 또 군사행동에도 참가하였다.

3.3《위안소》는 일본군에 의해 설치되였으며 당시 성노예들은 한갖 일본군의 군수물자로 취급되였다. 히로히또는 일본군이 운영한《위안소》설치와 유지에 관한 총체적인 권한을 가지고있었다.

3.4 도죠 히데끼는 1941년 10월부터 1944년 7월까지 총리대신, 륙군대신, 내무대신을 겸임하였다. 그는 직무상 군행정과 관련한 모든 사업을 책임지고있었다. 그에게는 일본군이 운영한《위안소》설치와 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

3.5 미나미 지로는 1936년 8월부터 1942년 5월까지 조선총독으로 있었다. 조선총독의 권한은 원칙상 왜왕으로부터 위임받은것이였다. 위임받은 권한내에서 총독은 륙해군에 대한 명령 및 통제권한을 가지고있었으며 모든 정치적문제에 관한 책임을 지고있었다.

총독은 또한 왜왕에게만 책임을 지는 립법, 행정, 사법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였다. 총독은 례외적으로 척무대신의 통제와 감독에서 제외되는 절대적인 권력의 소유자였다.

3.6 이따가끼 세이시로는 1941년 7월부터 1945년 4월까지《조선군》사령관이였다.《조선군》은 히로히또의 직속부대였다.《조선군》사령관은 군행정에 관한 륙군성의 지시와 군작전에 관한 참모총장의 지시밑에 조선헌병대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있었다.

3.7 이따가끼 세이시로, 오까무라 야스지,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끼찌, 마쯔야마 유조는 일본군 사령관으로서의 직책상 자기 관할밑에 있는 부대들을 통제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있었다. 각 부대 사령관들로서 그들은 저들의 직위상 권한과 의무를 전부 행사하였다. 그들은 저들의 명령과 통제밑에 있는 군병영과 지역들에서 운영된《위안소》설치와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일반적주장

4.1 본 기소장에 언급된 내용들은 조선의 전 령토가 일제의 군사적강점밑에 놓여있던 시기에 감행되였다. 조선과 일본사이의 전쟁은 실지 1904년부터 시작되였다.

4.2 로일전쟁시기(1904년－1905년) 조선이라는 땅덩어리는 하나의 전쟁마당이였다. 일본군은 조선에 무력을 들이밀어 조선

을 강점하였다.

조선인민은 일제의 군사적강점에 항거하여 결연히 일떠섰으며 일제를 반대하는 강력한 무장투쟁을 벌렸다. 의병투쟁, 독립군의 활동, 1919년 3.1인민봉기, 1926년 6월 10일 반일시위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투쟁들이 일어났다.

특히 1930년대초부터 국내외의 넓은 지역에서 강력하게 전개된 조선인민의 조직적인 항일무장투쟁은 일제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타격을 주었으며 일제의 패망을 앞당겼다.

4.3 조선강점기간 일제의 군정부의 형식과 내용에서는 일련의 변화가 있었다. 초기에는 조선에 일본군을 고착배치하고 조선의 전 지역에 계엄령을 실시하였다. 일제의 통치방식은 통감제로부터 총독제로 이전되였는바 총독제는 1945년까지 존재하였다. 조선이 일본의 한부분으로 되였었다는 론의도 있으나 당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가 국제법적으로 볼 때 명백히 군사적강점이였다는데 대하여서는 의심할 여지도 없다.

4.4 본 법정헌장 제2조 1항에 지적된것처럼 모든 전쟁범죄와 그에 대한 행위는 조선과 일본이 교전상태에 놓여있을 때 감행되였다. 도꾜헌장에 지적된 전쟁범죄를 이미 1951년 강화조약체결당시 일본이 인정하였다는데 대해서 명기하는바이다.

4.5 본 기소장에 지적된 일본군성노예제의 피해자들인 모든 조선인성노예들은 일본의 강점밑에 있던 조선의 주민들이였다.

4.6 본 기소장에 기소된 피고들은 1907년 헤그 제4협약을 포함한 전쟁법과 관습을 준수하여야 하였다.

4.7 아래에 언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 기소장에 지적된 모든 행위와 묵인은 1937～1945년사이에 감행된것들이다.

4.8 본 기소장에 기소된 피고들은 또한 본 법정헌장 제2조 1항에 지적된 인도에 대한 죄를 범하였다.

4.9 인도에 대한 죄를 구성하는 행위와 묵인은 민간인들 특히는 조선인민에게 감행된 광범하고 대규모적이며 체계적인 공격의 한 부분에 해당된다.

4.10 히로히또는 일본군성노예제와 관련하여 법정헌장 제2조 1항에 따라 전쟁범죄와 인도에 대한 죄에 대한 개인적인 형사책

임을 진다.

개인의 형사책임에는 아래에 지적된 행위와 묵인의 계획과 준비, 실행에 참가하였거나 그에 대한 계획, 선동, 명령, 실행, 협조, 추동에 대한 책임이 포함된다.

도죠 히데끼, 미나미 지로, 이따가끼 세이시로, 오까무라 야스지,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끼찌, 마쯔야마 유조 역시 이에 대한 개인책임을 진다.

4.11 히로히또는 또한 법정헌장 제3조 2항에 따라 부하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 최상급관리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명령에 대한 형사책임은 부하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려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저질렀다는것을 알고있었거나 알만 한 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부하들을 처벌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말한다.

기소사실

일본군《위안소》정책의 계획과 실행(기소사실 1, 2)

5.1 당시 국가의 최고권력자였던 히로히또는 참모총장과 륙군대신, 《조선군》사령관, 대만군 사령관, 관동군 사령관, 중국원정군 사령관, 남해지역군 사령관, 먄마주둔군 사령관이 집행한 일본군 《위안소》정책의 정점에 놓여있었다.

5.2 히로히또는 1942년 3월 30일 《기타 복지》라는 명목밑에 《위안소》와 관련한 문제들을 은상과의 권한안에 두도록 륙군성의 기구를 수정할데 대하여 도죠 히데끼가 총리대신 겸 륙군대신의 자격으로 서명한 칙령 300호를 비준, 날인하였다.

5.3 히로히또는 비록 자기자신이 이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안소》정책과 관련한 일본정부의 해당 기관들의 계획과 집행을 사전에 저지시키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진다.

5.4 1941년부터 1944년사이 총리대신 겸 륙군대신이였던 도죠 히데끼는 일본외무성을 비롯한 정부의 여러 기관들과 함께 일본군《위안소》정책의 계획과 집행에 직접 가담하였다.

5.5 대만군 사령관이였던 안도 리끼찌는 당시 륙군대신이였던 도죠 히데끼에게 직접 전신을 보내여 남태평양지역으로 성노

예들을 이송시켜줄것을 요청하였다. 도죠는 이러한 제의에 긍정적으로 화답하였다.

5.6 도죠 히데끼는 《위안소》의 유지와 관련하여 해외령사관들과 일본인들을 통제한 일본외무성아래 조직들의 행위와 그의 묵인에 대하여 수상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실례로 대만총독부는 외무성에 제출한 1942년 1월 10일부 《남태평양점령지역에서의 〈위안소〉설치에 관한 건》이라는 문건에서 군대의 요청에 따라 《위안소》의 설치를 목적으로 도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한 지시를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외무대신인 도고 시게노리는 1월 14일부로 되여있는 《남태평양점령지역내의 성노예이송에 관한 건》이라는 문건에서 군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지참한 려행자들에게만 도항을 허가하라는 지시를 내리였다.

5.7 령사관이 외무대신에게 녀성의 이동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거나 조선이나 대만 등 일본점령지역내의 령사관이 성노예들의 상황과 《위안소》업자들에 대한 조사와 보고를 한 실례도 있다.

외무성 아메리카국의 제3과 관리는 1940년 9월에 대만총독부의 외무부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았다. 그 통지에 따르면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항목적을 명기한 증명서를 지참해야만 하며 《위안소》일과 관련한 도항은 긴급성으로 보아 즉시 허가해줄것을 요구하고있다.

5.8 도죠 히데끼는 륙군성의 《위안소》행위를 묵인한데 대하여 수상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수상은 1942년 4월 《위안소》관리와 성노예들의 이송과 관련하여 인사국 은상과에 지시를 내렸다. 1942년 3월 26일부 회람에는 일본국민이 바친 방위비로 하급병사들을 위한 위안시설을 설치할것을 희망한다고 한 구라모또 게이지로과장의 말이 언급되여있다. 그때로부터 6개월후인 9월 3일부 회람문서에는 당시 북중국에 《위안소》가 100개, 중지에 140개, 남지에 140개, 남방에 10개, 싸할린에 10개 등 모두 400개가 존재하고있었다고 지적되여있다. 륙군대신은 정기적으로 고위관료회의에 참가하였다.

5.9 군《위안소》체계는 성노예제형태였다.

5.10 히로히또, 도죠 히데끼, 안도 리끼찌는 《위안소》에서 조선인녀성들에게 감행되는 범죄에 대하여 명백히 알고있었다.

이러한 행위에 가담한것으로 하여 히로히또와 도죠 히데끼, 안도 리끼찌는 법정헌장 제2조 1항(성노예제)에 지적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법정헌장 제2조 1항(노예화)에 지적된 인도에 대한 죄를 저질렀다.

조선인성노예들에 대한 강제련행(기소사실 3, 4)

5.11 《위안소》설치에 이어 일본정부의 하급관리인들과 민간업자들은 수많은 조선녀성들을 강제적으로 련행하여 일본군의 《위안소》정책실현의 근본희생물로 만들었다.

5.12 김군자(1926년생)는 일본군성노예제의 조선인피해자중의 한사람이다. 1942년 3월 16살이 되던 해에 군복을 입은 사나이에 의해 중국북부 훈춘에 있는 깅가꾸라는 《위안소》로 끌려갔다. 그때 그는 강원도 철원에서 경찰노릇을 하던 양아버지 최철지의 심부름을 가는것으로 생각하고있었다.

5.13 박영심(1921년생)도 지방경찰의 협력밑에 강제련행된 사람들중의 하나이다. 1938년 3월 16살 나던 그는 공장에 일자리가 하나 있으니 거기에 가서 일해보라는 일본인경찰의 속임수에 넘어가 평양으로부터 남경에 있는 《위안소》로 끌려갔다.

5.14 최봉선(1925년생)은 14살때 함경북도 은산군 북진의 한 부자집에서 아이보개노릇을 하고있었다. 어느날 일본인경찰과 헌병이 그를 찾아와 잘 먹으면서 살수 있는 곳에 데려다주겠다고 꾀드겼다. 그가 거절하자 경찰과 헌병은 강제로 그를 끌어다 마을에서 5km나 떨어져있는 민가에 가두었다. 거기에는 벌써 17명의 다른 처녀들이 와있었다.

그다음 모두 기차를 타고 중국 흑룡강성 사평으로 가기 두 정거장앞에서 내리였다. 그들은 《명월관》이라는 간판이 나붙은 건물로 끌려갔다.

5.15 이외에도 일본경찰들은 보다 폭력적인 방법들을 리용하였다.

일본경찰은 서울－함흥행 렬차에서 조순덕(1921년－1999년)을

체포한 후 원산에 있는 경찰소에 끌고가 심문하였다. 그들은 조순덕에게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부대(에이세이따이 혹은 헤이세이따이)에 가서 일할것을 강요하였다. 그가 거절하면서 집으로 보내줄것을 요구하자 경찰은 강제로 그와 다른 3명의 녀성들을 끌고갔다.

1928년생인 윤두리가 16살때인 1943년에 남부경찰소에 속해있는 경찰이 부산진 역사에서 그를 발견하고 일본병사에게 넘기였다. 그다음 그는 일본으로 끌려갔다.

5.16 군부와 경찰의 협조밑에 지방행정관리들이 이러한 련행에 관여한 실례도 있다.

김복동(1926년생)은 15살 되던 해인 1941년에 자위단장과 마을구장이 별을 단 일본군인과 함께 나타나 군복만드는 공장에서 데이신따이(《정신대》)로 3년간 일할것을 강요했다고 증언하였다.

처음에는 중국의 광동에 끌려갔다가 다음에는 아시아의 다른 곳들로 끌려다녔다. 심지어 11살 나는 소녀까지도 이와 비슷하게 끌려간 실례가 있다.

5.17 1921년생인 김덕순은 16살 나던 해에 저들이 시키는데로만 하면 맛있는 음식과 훌륭한 옷도 살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주겠다는 마을구장의 꾀임수에 속아 끌려갔다.

그가 전주에 도착하니 같은또래의 10명의 처녀들이 벌써 거기에 와있었다. 마을구장은 그들을 한 일본인에게 넘겨주었다. 그다음 그들모두는 부산으로 갔다가 배편으로 니이가다항과 중국의 한 항구를 거쳐 중국과 몽골의 국경가까이에 위치하고있는 히라루에 도착하였다.

5.18 련행자들은 조선인녀성들을 성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직업을 구해주겠다는 감언리설과 거짓목적지를 알려주는 등 사기와 협잡의 모든 방법을 다 리용하였다.

1924년에 경상남도 하동에서 출생한 손판임은 1941년에 좋은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는 사또미라는 40대의 일본녀자의 꾀임수에 속아 부산에서 다른 40명의 녀자들과 함께 배를 탔다. 그는 태평양의 라바울, 뉴기니아, 보르네오 등의 섬에서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여러 지역의 《위안소》로 끌려다녔다.

1926년 전라남도 장진에서 태여난 김태선(가명)은 1944년 9월 처녀들을 끌어가니 피신해있으라는 아버지의 분부대로 약 1주일동안 숨어지냈다. 어느날 가족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있는데 조선인과 일본인이 나타나 돈벌이를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끌고갔다.

인천을 지나갈 때 그는 일본에 있는 공장으로 가게 된다는 대장놈의 말을 들었다. 오사까에 도착한 그는 사이공으로 가는《아라비라》마루에 실리였다. 그다음 만마로 끌려가 랑군에서 성노예생활을 시작하였다.

5.19 장수월(1924년－1996년)이 서평양신발공장에서 일하고있을 때였다. 하루는 일본인감독이 와서 좋은 일자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가면 지금 받는 월급보다 3배나 더 받을수 있다고 하였다. 그의 기억에 의하면 그것은 1941년 9월경이였다. 불쌍한 가족을 생각하여 그는 감독을 따라 평양역에 도착하여 다른 7명의 처녀들과 함께 일본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중국의 치치하루로 끌려갔다.

5.20 1928년에 태여난 하상숙은 1944년에 2명의 조선인불량배들에 의해 련행되였다.

그는 자신이 군대를 위한 연예부에서 일하게 될줄로 믿고있었다. 그는 중국의 한구 적경리에서 성노예로 될것을 강요당하였다. 그는《기미꼬》라는 일본식이름으로 불리웠다.

간호부자리가 있다고 하는것도 녀성들을 사기적방법으로 끌어갈 때 자주 쓰인 구실이였다.

5.21 정송명은 1924년에 출생하였다. 1943년 8월 마에다라는 일본인이 《녀자근로정신대》에 가서 6개월만 일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고 하면서 원산을 거쳐 부산으로 그를 끌고갔다. 마에다는 부산에서 그를 한 일본인에게 넘기였다. 그후 40명의 다른 처녀들과 함께 대만과 싱가포르를 거쳐 랑군에서 수㎞ 떨어진 메크테라《위안소》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그는 성노예생활을 강요당하였다.

5.22 랍치와 폭력의 형태들도 널리 리용되였다.

심달연(1927년생)이 12～13살 나던 해에 언니와 함께 나물을 캐고있는데 2명의 사나이가 트럭을 몰고와 그들을 강제로 차에 태웠다. 차안에는 이미 공부를 끝내고 집으로 가던 여러명의 소녀들이 있었다. 소녀들이 소리를 지르기만 하면 사나이들은 그들을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군 하였다.

5.23 흔히 강다짐으로 가족의 동의를 받아 녀성들을 끌어간 것은 단지 강제모집의 성격을 감추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였다.

5.24 성노예들에 대한 강제적인 모집은 흔히 련행자들과 일본군인들에 의한 고문과 기타 폭력행위, 강간, 집단강간 등의 성폭행을 동반하였다.

5.25 강덕경(1929년－1997년)은 14살때 담임선생으로부터 《녀자근로정신대》에 가서 일할것을 강요당하였다. 그는 일본의 도야마현에 있는 후지꼬시비행기회사에 끌려갔다.

거기에서 그는 도주를 시도하였으나 인차 일본인병사에게 붙잡히고말았다. 일본인병사에게 끌리여 화물차에 몸을 싣고보니 거기에는 일본인헌병과 운전수가 앉아있었다. 일본헌병은 한밤중에 차를 세우더니 그를 산속으로 끌고가 강간하였다.

5.26 김영숙은 1924년에 황해북도 은파군에서 태여났다. 그가 사리원에 있는 도립병원에서 간호부로 일하고있던 어느날 사노 슈지라고 하는 일본인이 찾아와 그에게 《인차 처녀공출이 시작된다. 거기에 걸리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 나를 따라오면 살수 있고 또 돈도 많이 벌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일본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다른 20명의 처녀들과 함께 려객선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사노 슈지는 배안에서 처녀들을 한명씩 강간하였다.

5.27 우에서 본바와 같이 성노예련행방법은 모두가 국제법과 당시 조선에서까지 적용되던 일본국내법에도 위반되는것들이다. 다시말하여 성노예련행과정은 하나의 노예사냥이나 다름이 없었다.

5.28 우에서 언급된 모든 실례들에 성노예련행에 직접 가담한 자들의 개별적이름을 언급하지 못했다. 일본의 전시문서에 의하면 련행자들자체가 바로 《위안소》의 경영자들이였으며 이들은 필요에 따라 지방헌병이 파견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주로 일본헌병이 직접 선발하였거나 혹은 각 원정군의 요구에 따라 선정된 지역의 해당 경찰본부에 의하여 지명되군 하였다.

5.29 일본경찰이나 헌병, 행정당국이 녀성과 어린이매매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거나 또 그러한 행위를 묵인하지 않았더라면

성노예들에 대한 강제적인 련행이 광범하게 그것도 10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 진행될수 없었을것이다.

이것은 당시 련행자들이 경찰이나 해외령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가지고 이미 잘 알고있는 지역이나 혹은 안면이 있는 지역에 가서 성노예모집활동을 해야 했던 사실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그들은 할당된 성노예모집지역들에서 일반적인 행정기관들이나 혹은 커다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들에 의거하여 모집활동을 벌렸다.

이들은 또한 큰 도시들에 직업소개소망을 설치하고 이를 통한 모집활동도 벌렸다. 이러한 망의 리용은 인간매매조직체나 다름이 없었다.

다음의 단락들에서도 알수 있겠지만 경찰이 발급하는 도항허가증명서는 당시 감시와 정보분야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 경찰의 허가가 없이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지참할수 없었다.

5.30 일본당국과 군은 조선에서 조선인민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조선녀성들에 대한 성노예모집행위는 조선총독부의 리해와 직접적인 가담이 없이는 완전히 불가능하였다.

왜왕이 직접 임명한 조선총독은 경찰부문을 담당해보는 경무국과 각 지방들에서 해당 경찰부서들을 통해 매 지역의 경찰소들을 맡아보는 지방관리인들을 자기 관할밑에 두고 정부적활동을 담당처리하는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있었다.

조선총독부와《조선군》참모장의 관할밑에 있던 행정 및 군, 민간경찰기구들은 모두 조선인성노예모집에 체계적으로 리용되였다.

미나미 지로는 1936년부터 1942년까지 조선총독으로 있었으며 그후 고이소 구니야끼(1942년－1944년), 아베 노부유끼(1944년－1945년) 등이 조선총독으로 있었다.

5.31 조선에서의 성노예강제모집을 계획, 조사, 명령, 방조, 추동하고 또 이러한 행위에 직접 가담한 일본군의 모든 사령관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5.32 첨부하여 일본군은 종종 조선주둔 일본군대와《조선군》사령부에《위안소》에 보낼 조선녀성들과 처녀들을 모집할것을 위임하였다. 이것은 관동군이 1941년에 특종연습을 계기로 조선총

독부에 2만명의 조선녀성들을 모집해줄것을 요청한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당시 관동군 참모였던 하라 젠시로는 관동군의 성노예모집계획에 따라 참모부가 조선총독부에 녀성들을 요청하였다고 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중국 동북지방에 수천명의 조선녀성들을 보내주었다.

우메즈 요시지로는 1939년 9월부터 1944년 7월까지 관동군 사령관이였다. 그의 후임은 야마다 오또조였다.

5.33 조선총독부는 군성노예수송에 필요한 자금조달에도 직접 가담하였다.

5.34 일본륙군과 해군은 당시 최고권력자였던 히로히또의 명령밑에 있는 해당 기구들의 지시에 따라 《위안소》들을 건설하였다.

5.35 1941년 11월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남방군사령관이였던 데라우찌 히사이찌가 이끈 군대가 1942년에 먄마를 강점하였을 때 일본의 여러 단체들이 강점된 동남아시아지역들에서 성노예봉사에 필요한 조선녀성들을 모집하러 조선에 발을 들여놓았다. 《조선군》사령부는 민간업자들에게 성노예모집을 요청하였으며 또 적극 후원해주었다. 이에 호응하여 기따무라 에이분과 기따무라 도미꼬가 《조선군》사령부에 성노예모집허가를 신청한 후 승락을 받았다 그들은 1인당 300～1 000원의 가격으로, 17～29살난 22명의 처녀들을 모집하였다.

《조선군》사령부는 이들에게 모든 일본군부대들이 수송, 식량, 의복류 등 성노예모집에 필요한 방조를 제공할것을 지시하는 편지를 주었다.

5.36 이따가끼 세이시로는 1941년 7월부터 1945년까지 《조선군》사령관이였다.

5.37 녀성들에게 가해진 행위의 성격을 알고있는 히로히또, 도죠 히데끼, 미나미 지로, 이따가끼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끼찌는 조선인성노예모집과정에 감행된 모든 범죄행위와 그에 대한 묵인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러한 행위에 가담한것으로 하여 히로히또, 도죠 히데끼, 미나미 지로, 이따가끼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끼찌는

법정헌장 제2조 1항(적군에서의 강제봉사, 불법감금, 인질, 강간, 고문, 비인간적인 학대, 민간인공격, 어린이련행)에 지적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법정헌장 제2조 1항(노예화, 강간, 고문, 박해)에 지적된 인도에 대한 죄를 저질렀다.

일본군《위안소》에로의 조선인성노예강제수송(기소사실 5, 6)

5.38 조선녀성들과 처녀들은 강압적이며 체계적인 방법으로 고향에서부터 대부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많은 나라들에 설치된 일본군《위안소》들에 끌려갔다.

5.39 김군자는 련행자에게 끌려 화물차에 몸을 실었다.

거기에는 7명의 다른 처녀들과 군복을 입은 40살가량의 조선청년이 있었다. 그의 진술에 의하면 하루종일 달리던 차가 밤이 되서 멈추어서더니 이미 서서 기다리고있던 다른 화물차에 사람들을 다시 태웠다는것이다. 이 차 역시 한동안 잘 달리더니 만주 훈춘에 있는 《깅가꾸위안소》라는 간판이 씌여진 2층짜리 낡은 려인숙앞에 멈춰섰다. 당시 그 지역은 관동군 71사단의 관할밑에 있었다.

5.40 로현화(1922년생)가 18살 나던 해인 1940년 10월 어느날 룡강군 지사리에 사는 지주와 일본사람이 함께 와서 그의 어머니에게 딸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겠으니 저들에게 맡기라고 하였다.어머니가 거절하자 일본놈은 어머니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앞이발 두대를 꺾어놓고 로현화를 강제로 유개차에 태웠다.

렬차에는 20개의 화차들이 련결되여있었고 매 화차마다에는 조선처녀들이 가득차있었다. 모든 화차들에 쇠를 잠그고 식사시간때마다 작은 구멍으로 주먹밥 한덩어리씩 던져주군 하였다. 3~4일이 지나 중국동북의 목단강에 도착하여 4㎞ 떨어진 일본군병영에 끌려갔다.

5.41 련행된 녀성들에 대한 강제적인 수송은 일본당국의 철저한 통제와 감시밑에 진행되였다. 일반군대나 현지에서의 전투군대의 요청에 따라 일본령사관, 조선총독부, 대만총독부, 내무성, 내각이 직접 구체적인 수송계획을 작성하였다.

5.42 강제수송계획 역시 체계적으로 실행되였다. 중일전쟁이

후 해당한 증명서가 없이는 중국에 마음대로 드나들수 없게 되였다. 중국으로 가자면 경찰이 발급한 다시말하여 국가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나 려권을 지참하여야 하였다.

미나미 지로의 통제밑에 있었던 조선총독부 경무부 보안과가 1937년 9월 17일에 발행한 회람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지적되여있다.

5.43 중국 한구에로의 려행과 관련한 1939년 3월 10일 각서에서 조선총독부 외무부서는 녀성들이 끌려가는 군《위안소》로 행선지를 제한하자는 명령을 내렸다.

군사부대주둔지대나 혹은 먼 지방에로 려행하자면 주둔군이나 현지 헌병이 직접 발급한 려행서를 지참하여야 하였다.

5.44 중국에로의 려행과 관련한 1940년 5월 7일부 내각결정에 따라 중국에 있는《위안소》업자들은 중국령사부 담당경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지적된 수의 《고용》녀성들을 들여올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5.45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인하여 성노예들은 일본륙군성의 전적인 통제밑에 남방으로 이송되였으며 륙군성은 1942년 4월 성노예수송과 《위안소》관리를 은상과에 위임하였다.

5.46 기따무라부부와 22명의 조선녀성들은 1942년 7월 10일 703명의 다른 조선처녀들과 90명의 일본인《위안소》업자들과 함께 먄마를 향해 부산을 떠났다.

5.47 문옥주(1924년생)가 먄마를 향해 부산을 떠난것도 같은 날이다. 1924년 대구에서 태여난 그는 식당일자리를 얻기 위해 친구와 함께 부산으로 떠났다. 2명의 불량배 조선인남자들이 역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있었다. 그들은 이 두 녀성들을 카페로 끌고갔다. 거기에는 이미 16명의 처녀들이 와있었다.

1942년 7월 10일 18명의 녀성들이 부산항에서 배를 탔다. 그 배는 6~7개의 다른 배를 거느린 군함이였다. 이 군함에 탄 300~400여명의 조선녀성들은 몇개 조로 나뉘여져있었다. 다른 처녀들에게 물으니 그들 역시 식당일자리를 찾아 길을 떠난 몸이라고 하는것이였다. 배는 한두달가량 항행한 후 랑군에 도착하였다.

5.48 기따무라부부 역시 대만을 거쳐 8월 20일에 랑군에 도착

하였다. 랑군으로 가는 길에 대만에서 22명의 녀성들을 싣고 싱가포르로 갔다. 그들은 랑군에서 녀성들을 20～30명씩 조를 무어 먄마의 여러 지역들에 주둔하고있던 련대나 부대에 각기 배치하였다. 기따무라는 114련대에 소속되였다. 몇달동안 여러 지역들에서 생활한 후 1943년 1월 미트키나에 도착하였다. 기따무라가 운영한 《위안소》는 《교에이》라고 불렀으며 그 지역에는 교에이《위안소》외에 2개의 《위안소》가 더 있었다.

5.49 문옥주는 화물차에 실려 먄마중부지역에 있는 만달라이에 끌려갔다. 군대는 만달라이에 있던 건물 하나를 새로 개조하여 《위안소》로 만들었다. 여기에는 다께우찌 히로시사령관(1941년 4월－1942년 11월)의 55사단 사령부가 위치하고있었다. 여기에서 그는 《후미하라 요시꼬》라는 일본식이름으로 불리웠다.

5.50 일본군은 조선녀성들과 처녀들을 완전한 전쟁물자처럼 취급하였다. 그들은 수송 전기간 비인간적인 학대와 노예같은 대우를 받았다.

1928년생인 홍애진은 속임수에 넘어가 련행된 후 군함에 실려 상해로 끌려갔다. 하루는 일본장교가 나타나 그를 작은 방으로 강제로 끌어가려고 하였다. 홍애진이 거절하자 장교는 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칼로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그를 강간하였다.

5.51 히로히또, 도죠 히데끼, 미나미 지로, 이따가끼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끼찌는 당시 저들이 차지하고있던 정부나 군의 지위와 직위에서 련행된 조선녀성들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여러 지역들에 강제수송하는데 직접 가담하였다.

이러한 행위로 하여 히로히또, 도죠 히데끼, 미나미 지로, 이따가끼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끼찌는 법정헌장 제2조 1항(불법추방과 수송)에 지적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법정헌장 제2조 1항(추방)에 지적된 인도에 대한 죄를 저질렀다.

《위안소》에서 감행된 범죄

강간(기소사실 7, 8)

5.52 강간은 바로 저들의 실지 련행동기와 목적에 대해 알지 못한 조선인녀성들에게 강요된 첫번째 만행이다. 련행된 대다수

조선녀성들은 성생활경험이 없는 미혼처녀들이였다.

이렇게 시작된 강간은 엄격한 통제를 동반한《위안소》안에서 몇달이고 몇년간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였으며 지어는 하루에도 수십번이나 반복되였다.

일본군은《위안소》출입과 관련하여 날자, 시간, 지불, 기타 등 구체적인 규정을 내놓고 그를 엄수하도록 하였으며 또 개별적인 사람들이 운영하는《위안소》들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였다.

5.53 1942년 김군자는 훈춘에 있는《위안소》에 도착한지 2~3일이 지나서부터 일본군병사들의 강간대상으로 되였다. 처음 강간당할 때 그는 거절한탓으로 귀를 얻어맞았다. 오른쪽 귀벽이 찢어져 피가 나왔다. 상처를 치료받지 못한채 그냥 두다나니 오른쪽귀가 잘 들리지 않았다.《위안소》에서 그는《기미꼬》혹은《9호실》로 불리웠다. 오늘 그는 절대로 일본말을 하지 않는다.

일본병사들은 일요일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지어는 일요일에도《위안소》를 찾아왔다.

장교들은 주로 밤에 왔다. 병사들은《위안소》앞에 줄지어서 자기 차례를 기다렸다. 줄지어 서있는 병사들의 수가 대체로 100명정도였다고 한다. 병사들이 특별히 많을 때에는 하루에 평균 40명을 대상해야 하므로 그 고통이란 이루 말할수가 없었다.

《위안소》경영자는 성노예들을 자주 때리군 하였다. 김군자는 한 처녀가 도망을 시도하였다가 끔찍하게 죽는것을 본 후로는 도주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다.

5.54 1938년 10월 27일에 중지나 제11군 사령관인 오까무라 야스지는 그의 상관인 중지나파견군 사령관 하따 슌로꾸와 제11군 참모장 등과 결탁하여 한구의 제11군부대에《위안소》를 설치할것을 지시하였다.

5.55 송신도(1922년생)는 1938년 말경에 중국 무창의《세까이관》(세계클럽)이라고 불리우는《위안소》에 속히워 끌려간 피해자들중의 한사람이다. 의료검진을 마친 후 그는 일본병사들을 대상해야 하였다.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몰라 몹시 당황해있다가 큰소리로 울면서 자기 방으로 뛰여들어갔다.

그의 일본식이름은《가네꼬》였다. 그는《위안소》주인에게 자

주 매도 맞으며 굶주리고 감금된 생활을 하였다. 일본병사들은 그를 위협하기 위하여 몸에 칼질을 하여 여러 상처를 남기였다. 그는《위안소》에서 위생실소독에 쓰는 크레졸을 병채로 들이마셔 자살하는 녀성들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당시《위안소》에는 임신된 녀자들이 많았다. 임신한 경우에도 휴식없이 성《봉사》를 하여야 했고 또 일부 임신부들은 조용히 내다버려졌다. 자기자신이 임신상태라는것을 아는 속에서도 그는 성《봉사》를 해야 하였다. 임신 7개월만에 검붉은 아이를 류산하였다.

이《위안소》에는 사령관 오까무라 야스지가 이끄는 제11군 6사단과 9사단소속 장교들과 병사들이 주로 다녔다.

5.56 1944년 11월 하상숙은 40명의 다른 처녀들과 한구 적경리에 있는《위안소》에 도착하였다. 3일간 휴식한 후 무서운 공포속에서 일본인 의사의 성병감염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그가 처녀이라는것을 알았으나 그에게 피임주사를 놓았다. 그다음 군위안담당부서의 지시에 따라 영국조계지에 인디아인들이 건설한 장항관으로 갔다.

처음에는 3명의 일본군병사들을 대상하던것이 그후로는 하루에 보통 10～15명씩 대상해야 하였다. 그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우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 지역 역시 오까무라 야스지의 지휘하에 있던 중국파견군의 점령지역이였다.

5.57 박영심은 남경에서 성노예생활을 할 때 하루에 평균 30～40명의 병사들을 대상해야 하였다. 어느날 너무 몸이 말째서 성《봉사》를 거절하자 장교는 그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그다음 그의 목에 칼질을 하면서《황군》의 맛을 보라고 위협하였다. 장교는 피투성이가 된 박영심을 끝내 강간하고야말았다.

5.58 김영숙(1927년생) 역시 속임수에 넘어가 일본군성노예제의 희생물로 되였다.

그는 12살 나던 해인 1939년에 중국 심양에 끌려갔다. 하루는 나까무라라는 장교가 나타나 그를 1층짜리 건물(《위안소》)로 끌고가《오다까》라는 일본식이름을 지어주었다.

군대병영안에 위치하고있던《위안소》는 사방 철조망으로 둘

러막혀있었고 항상 개와 보초병의 감시밑에 있었다. 《위안소》에서 첫날밤 나까무라는 김영숙이 너무 어려 자기의 성욕을 채워주지 못한다는것을 알자 그 부위를 넓히려고 거기에 칼질을 하였다. 순간 김영숙은 의식을 잃었다. 상처자리가 부풀어오르고 피가 계속 흘렀으나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병사들에게 성《봉사》를 하였다.

5.59 황선옥은 강제로 화물차에 실려진 후 2시간 달려 일본병영에 도착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성《봉사》에 내몰리였다. 《위안소》는 병영으로부터 좀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있었으며 사방 철조망으로 둘러막혀있었다.

그는 《첫 2～3일간 우리는 일본병사들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그놈들은 총으로 우리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허리와 잔등을 발로 걷어차고 지어는 가죽혁띠로 우리의 손을 때리였다. 그리고도 성차지 않아 낮과 밤이 따로없이 계속 우리를 강간하였다.》고 증언하였다.

5.60 히로히또, 도죠 히데끼, 미나미 지로, 이따가끼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끼찌, 오까무라 야스지와 마쯔야마 유조는 일본군병사들이 《위안소》를 방문하도록 허락하고 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주었고 그러한 《위안소》방문을 군인생활의 한부분으로 제정해놓은것으로 하여 강간행위에 가담한것으로 된다. 또한 일본인병사들의 강간행위를 적극 추동하였다.

5.61 히로히또, 도죠 히데끼, 미나미 지로, 이따가끼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끼찌, 오까무라 야스지와 마쯔야마 유조는 성노예들에 대한 체계적인 강간행위를 계획, 조사, 명령, 추동, 방조하였거나 혹은 그러한 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다.

이러한 행위에 가담한것으로 하여 히로히또, 도죠 히데끼, 미나미 지로, 이따가끼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끼찌, 오까무라 야스지, 마쯔야마 유조는 법정헌장 제2조 1항(강간,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대우)에 지적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법정헌장 제2조 1항(강간, 비인간적인 대우)에 지적된 인도에 대한 죄를 저질렀다.

고문, 절단, 고의적인 신체부상(기소사실 9, 10)

5.62 홍강림(1922년생)은 한 늙은 일본인녀성에게 속히워 1938년에 중국 봉천에 있는 《위안소》로 끌려갔다.

일본군병사들에 의한 강도높은 성폭행으로 인하여 그는 심한 고통을 겪었다. 하루는 일본군의가 정기검진을 하던 도중 질이 작다고 하면서 마취제도 놓지 않고 그 부분을 칼로 찢어놓았다.

5.63 대부분의 조선인성노예들 역시 오래동안 수없이 반복되는 강간으로 하여 생식기가 파괴되고 성병에 전염되였다. 결과 대부분이 아이를 낳을수 없게 되였다.

이러한 사정은 살아남은 피해자들의 영원한 고통으로 남았다.

5.64 그들은 이외에도 신체에 손상을 주는 고문, 공격과 같은 다른 형태의 폭행도 입었다.

우에서 언급한 실례에 보충적으로 1927년생인 조화선의 증언을 첨부하려고 한다.

1944년경 어느날 밤 한 일본장교의 요구를 거절하자 그는 조화선의 입에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다. 그 녀자가 이발로 그의 성기를 깨물자 악에 받친 장교는 그를 호되게 때리기 시작하였다. 한바탕 세차게 때린 후 그것도 성차지 않아 보초를 불러 그더러 매질을 계속하도록 하였다. 보초는 그 녀자를 밖으로 끌고나가 곤봉으로 그의 머리를 휘둘러쳤다. 이틀동안이나 의식을 차리지 못한채로 창고에 갇혀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니 오른손이 부러진 상태였다. 물론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였다.

5.65 김대일은 1916년에 태여났다. 1934년경에 그는 오사까에 있는 텐노지병원에서 간호부노릇을 하고있었다. 그가 18살 나던 어느날 밤 병원원장이 그를 겁탈하였다. 자기의 죄행이 알려질가바 겁을 먹은 원장은 일본군 도쿄 제12사단의 성노예명단에 넣었다.

장춘에 위치하고있는《위안소》에서 그는 일본이름《이시까와스지에》혹은《12호실》로 불리웠다. 매일 아침 성노예들은《위안소》마당에 한줄로 서서《황궁요배》를 하여야 하였다. 그들은 아침 6시부터 다음날 2시까지 매일 30~40명의 일본인병사들을 대상해야 하였다.

그가 6사단으로 옮겨갔을 때였다. 거기에는 《하나꼬》라고 불리우는 처녀가 있었다. 어느날 임신된 그가 다나까라고 하는 술에 취한 일본군병사의 요구를 거절하자 그놈은 칼로 그의 배를 쭉 갈라 태아를 꺼내여 란탕질한 다음 모든 성노예들을 모이게 하고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튀여나온 그 녀성의 밸을 성노예들의 목에 걸어놓았다.

그다음 바닥에 떨어진 그 녀성의 피를 입으로 핥게 하였다. 많은 녀성들이 기절하거나 심장마비로 죽기까지 하였다.

어느날 다나까는 개를 끌고 《위안소》에 나타났다. 그는 개의 목끈을 풀어주며 《나도 했으니 너도 한번 해라.》고 지껄였다. 개는 김대일녀성에게 사정없이 달려들더니 이발로 그를 물어뜯기 시작하였다.

그는 끝내 의식을 잃고야말았다. 그런데도 다나까는 그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더니 야수같이 달려들어 자기의 성욕을 채우고야 말았다. 일본군병사들은 또한 그의 입과 코, 아래부분을 담배불로 지져 온몸에 끔찍한 상처를 남기였다.

5.66 정옥순(1920년-1998년)은 광주에서 일본군성노예생활을 강요당하였다. 그는 17살 나던 해에 도망을 한번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일본군병사들에게 다시 잡히였다. 곧 그에게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고문이 가해졌다. 한 일본군병사가 쇠곤봉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가 의식을 잃자 그놈은 고무호수를 그의 입에다 대고 물을 부어넣었다. 배가 차츰차츰 불어나자 배우에 널판자를 올려놓고 그우에 올라가서 쾅쾅 밟기 시작하였다. 그의 입과 코로 물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다른 형태의 고문을 본다면 일본군병사들은 《조선년들은 고통속에 죽어야 한다.》고 지껄이면서 그들의 몸에 입묵을 새겼다. 그들은 정옥순녀성의 입을 강제로 벌려 입술에 온통 입묵을 하였다. 이러한 입묵자리는 그의 입술뿐아니라 가슴, 배, 잔등 심지어 그의 아래부위에까지도 새겨져있다.

5.67 리춘화(1920년-1998년)는 수양에서 성노예생활을 강요당하였다.

그는 성《봉사》실적이 낮다는 리유로 엄한 처벌을 받았다. 그

는 10kg나 되는 무거운 철덩어리를 머리우에 높이 들고 서있는 벌을 받았다. 너무 무거워 팔이 조금씩 아래로 떨어질 때면 회초리로 심하게 얻어맞군 하였다. 너무도 고통스러워 때로는 의식을 잃기까지 하였다.

일본군은 성노예들에게 전기고문도 들이대였다.

《사다꼬》라고 하는 조선인성노예가 성《봉사》를 거절하자 일본군병사는 그에게 무서운 고문을 들이댔다. 그놈이 어찌나 세차게 그의 뒤통수를 걷어찼는지 대번에 한쪽 눈알이 튀여나왔다. 그후에도 강간은 계속되였다.

5.68 1945년 김복동을 포함한 여러 성노예들은 싱가포르에 주둔하고있는 일본군 제10사단병원에 끌려갔다.

거기에는 이미 300여명의 다른 처녀들이 와있었다. 일본군은 련합군이 도착하기 전에 저들의 범죄적인 《위안소》체계를 숨기고 은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간호훈련을 주었다. 그들은 여기에서 자주 수혈을 강요당하였다. 수혈후에는 귀에서 멍－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심한 어지럼증을 느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5.69 이러한 폭력행위들은 개개의 사건들이기보다는 일본군《위안소》정책의 총체적산물이다. 하지만 이러한 잔인한 행위를 감행한자들이 처벌된 례는 아직 없다.

5.70 히로히또, 도죠 히데끼, 미나미 지로, 이따가끼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끼찌, 오까무라 야스지, 마쯔야마 유조는 일본군병사들에게 조선인녀성들을 강간할것을 적극 추동하였고 또 이러한 행위에 대한 사전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책임있는자들을 처벌하지 않았으므로 우에서 언급한 고문행위에 가담한것으로 된다.

5.71 히로히또, 도죠 히데끼, 미나미 지로, 이따가끼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끼찌, 오까무라 야스지, 마쯔야마 유조는 성노예고문행위를 계획, 조사, 명령, 방조, 추동하였거나 혹은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행위에 가담한것으로 하여 히로히또, 도죠 히데끼, 미나미 지로, 이따가끼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끼찌,

오까무라 야스지와 마쯔야마 유조는 법정헌장 제2조 1항(고문, 고의적인 고통주기, 절단, 인간의 존엄에 대한 폭행)에 지적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법정헌장 제2조 1항(고문)에 지적된 인도에 대한 죄를 저질렀다.

노예화(기소사실 11, 12)

5.72 조선인성노예들은 노예나 다름없는 저들의 처지를 참고견디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들은 인간의 존엄과 자결권을 송두리채 빼앗긴채 계속 강간당하였다.

그들은 군인의 감시밑에 실지 감금된 생활을 하였다. 활동의 자유란 전혀 없었고 위생실에 갈 때도 보초병과 함께 가야만 하는 신세였다. 혹심한 처벌, 때로는 도망을 시도한 죄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목을 잘리우는 끔찍한 벌까지 받군 하였다.

물론 일련의 목적으로 군표가 사용되였지만 성노예들의 성《봉사》가 자원적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단 한푼의 돈도 지불되지 않았다. 언제나와 같이 조선인성노예들은 몸이 말째거나 말건, 임신했거나 말건 일본군병사들을 받아야만 하였다. 규정상 일본군병사들은 《위안소》에서 제공하는 고무주머니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되여있었다.

조선인성노예들은 이외에도 부엌일, 삯빨래, 간호와 같은 강제로동을 강요당하였다.

이러한 폭행의 방법과 함께 일본군은 성노예들에 대한 통제수단의 하나로 그들이 진 《빚》을 리용하였다. 일부 경우 《빚》이 생겨나게 된것은 성노예로 련행되기 전에 벌써 그 대가로 지불한 돈과 시간의 흐름과 함께 그 리자가 늘어났기때문에 생긴 《빚》이다. 많은 경우 《위안소》로 끌려온 후에 《빚》이 생겨났다.

성노예들에게 차례진 방들은 대부분 벽이 없는 작은 단칸방들이였다. 전선지대들에서 성노예들은 군대병영에까지 가서 혹은 그들의 림시천막안에서 지어는 여우굴에서까지도 성《봉사》를 할것을 강요당하였다. 많은 경우 먹을것과 입을것이 심히 부족하였다.

5.73 노예나 다름없는 처지의 성노예들 특히 이동식《위안소》에서 생활한 조선인성노예들은 항상 위험을 안고 전선지대들에까

지 끌려다녔다. 결국 성노예들은 순수 노예생활만 강요당한것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일본군의 처분여하에 달려있었다.

5.74 일본군부의 최고위관리들은 성노예체계에서 최대의 리익을 얻을 목적으로 성노예들과 저들의 병사들을 위한 《지침》을 내놓았다. 오끼나와의 제24사단, 제3475산악부대의 내무규정에 관한 조항들중 1944년 12월 20일부 《위안소》규정이 그 실례의 하나로 된다.

당시 지휘관은 륙군중장 아마미야 구쯔미였다. 그 규정에 의하면 병사들은 공동소유의 개념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점유(개인의 소유)의 형태는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는것이다. 한편 성노예들은 《손님》들의 심정을 충분히 리해하며 그들을 공평하게 대하는것을 첫째가는 《도덕》으로 간주하고 그들에게 최대의 《봉사》를 제공하며 몸이 파괴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돌려 성《봉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웠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목적은 인간의 감정폭발을 방지하고 성노예들을 순수 성노예대상으로만 국한시키자는데 있었다.

이러한 실례는 당시 성노예들이 어느 정도의 비참한 노예적처지에 있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5.75 김복동은 광동으로부터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까지 끌려다니며 성노예생활을 강요당하였다. 우에서 본바와 같이 그는 전쟁이 끝나갈무렵 간호부훈련을 받고있었다. 당시 광동지역은 안도 리끼찌중장이 지휘하는 제21부대의 관할밑에 있었다.

이 부대는 광동점령을 전후로 하여 내무성과 대만총독부에 《위안소》설치에 필요한 성노예모집을 요구하였다. 1939년 4월 제21부대 총사령부는 광동에 《위안소》가 설치되였으며 당시 부대의 관리밑에 있은 성노예의 수가 850명이였다고 보고하였다.

5.76 문옥주는 1944년에 만달라이에 있던 사단사령부가 아끼야브로 옮겨갈 때 강제로 이송되였다. 당시 제55사단 사령관은 하나야 다다시(1943년 10월－1945년 7월)였다.

그후에 그는 다시 프롬으로, 랑군으로 끌려가 랑군가이칸《위안소》에서 성노예생활을 강요당하였다. 그때로부터 3달후 또다시

동료들과 함께 기차로 타이에 이송되였다. 그후에도 군용화물차에 실려 아유따야로 끌려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부상병들을 간호하여야 하였다.

5.77 박영심은 1938년부터 남경의 킨수이로《위안소》에서 4년간이나 노예생활을 강요당하였다. 그《위안소》는 군대병영으로부터 500m 떨어져있는 건물이였으며 건물주변은 온통 쇠살창으로 둘러막혀있었다. 그의 일본식이름은《우따마루》였다. 당시 그 지역은 사령관 하따 슌로꾸가 지휘한 중국원정부대의 통제밑에 있었다.

5.78 2명의 일본군병사들의 감시를 받으며 박영심은 상해를 거쳐 먄마의 라시오에 있는《위안소》로 이송되였다. 당시 사령관 마쯔야마의 지휘하에 있는 먄마주둔 제56사단사령부가 라시오에 위치하고있었다.

깊은 산악지대에 설치된 잇가꾸로《위안소》주변에는 민가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거기에서 그는《와까하루》라는 일본식이름으로 불리웠다.

5.79 2년후 그는 먄마의 라멩 혹은 마쯔야마라는 곳으로 이송되였다.

거기에는 일본군 제56사단 113련대가 주둔하고있었다. 그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련합군의 맹렬한 공격이 시작되였다. 그와 다른 성노예녀성들은 폭탄속을 뚫고 싸우는 일본군병사들에게 밥을 날라다주어야 하였다. 처음에는 12명이던것이 8명이 죽고 4명이 남았다.

일본군의 패망과 함께 박영심과 다른 3명의 조선인성노예들은 중국군대에 포로되였다. 포로된 당시 그는 임신상태였다.

5.80 송신도가 두번째 아이를 임신하자 일본군은 그를 세까이간에서 한구의 해군《위안소》로 보냈다. 거기에서 그는 삯빨래를 비롯한 여러가지 강제로동에 시달렸다.

일본군은 그에게서 첫 아이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그후 그는 다시 가꾸슈《위안소》로 끌려갔다. 그는 안니, 조안, 호킹 등의 여러《위안소》들에 끌려다니였는바 상기《위안소》들은 모두 전투현장에 있는 특수부대들이 리용한《위안소》들

이였다.

그가 두번째 아이를 낳자 일본군은 이번에도 아이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그는 언제인가 처벌이 두려워 민간료법으로 임신된 아이를 류산하기까지 하였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중국인포로들에 대한 대량학살도 직접 목격하였다. 일본군병사들은 중국인포로들을 칼로 찔러죽였고 또 생매장하여 죽이였다. 이러한 학살후에는 종종 연회를 차리군 하였으며 그때마다 성노예들은 그들의 술시중을 하여야 하였다. 성노예들은 종종 보초병노릇도 하였다. 물론 이에 대한 보수는 전혀 없었다. 일본군은 어쩌다 손에 넣은 보잘것 없는 돈까지도《국방헌금》의 명목밑에 깡그리 빼앗아갔다.

5.81 김영숙은 1924년에 태여났다. 그는 일본에 끌려가 나고야, 오끼나와에서 한달가량 성노예생활을 강요당하였다. 그다음 다시 상해에 끌려가 야외천막에서 일본군병사들에게 《봉사》하였다. 그후 대련을 거쳐 서주에 이송되였다.

일본군은 그들을 인적없는 곳에 끌고가 5명당 천막 한개씩 배당해주었다. 여기에서 그는 《도미꼬》라는 일본식이름으로 불리웠다. 성노예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일본군병사 100명을 대상할데 대한 명령을 받았으며 또 이를 무조건 집행할것을 강요당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토요일을《죽음의 날》로 부르기 시작하였으며 의식을 잃은 후에조차 계속 강간당하였다.

5.82 히로히또, 도죠 히데끼, 미나미 지로, 이따가끼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끼찌, 오까무라 야스지, 마쯔야마 유조는 조선강점시기에 이러한 노예행위를 계획, 추동, 지시, 협조, 선동하였거나 직접 참가하였다. 이 행위들은 일본제국군대의 병영안이나 그 부근에서 감행되였다.

《위안소》들은 히로히또, 도죠 히데끼, 미나미 지로, 이따가끼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끼찌, 오까무라 야스지, 마쯔야마 유조가 다른 고위급장교들과 하급장교, 병사들의 협조밑에 지휘한 군대의 직접적인 통제와 감독속에 있었다.

이러한 행위에 참가한것으로 하여 히로히또, 도죠 히데끼, 미나미 지로, 이따가끼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끼찌,

오까무라 야스지, 마쯔야마 유조는 법정헌장 제2조 1항(노예화, 비법적인 감금, 비인도적인 대우, 고의적인 큰 고통주기, 민간인에 대한 공격, 대량학살, 손상 또는 손해)에 지적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법정헌장 제2조 1항(노예화)에 지적된 인도에 대한 죄를 저질렀다.

박해(기소사실 13, 14)

5.83 히로히또, 도죠 히데끼, 미나미 지로, 이따가끼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끼찌, 오까무라 야스지, 마쯔야마 유조는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정부와 군부의 여러 직무에서 활동하면서 저들의 지시와 통제밑에 있는 군과 정부의 관리인들과 결탁하여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일본군《위안소》들에서 조선인녀성들과 처녀들을 마구 박해하였다.

5.84 박해의 일부로서 히로히또, 도죠 히데끼, 미나미 지로, 이따가끼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끼찌, 오까무라 야스지와 마쯔야마 유조는 다음의 공동계획을 작성하고 추동하였으며 지시, 협조, 선동하거나 참가하였다.

가) 일본의 조선강점시기에 장기간에 걸쳐 조선녀성들을 체계적으로 강제모집하여 《위안소》들에 련행

나) 모집된 조선녀성들에 대한 《위안소》에서의 지속적인 감금

다) 《위안소》들에서 조선녀성들에 대한 반복적이며 체계적인 강간, 고문, 구타

라) 《위안소》들에서 조선녀성들에 대한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노예화

마) 《위안소》들에서 조선녀성들에 대한 대량학살

바) 《위안소》들에서 조선녀성들에 대한 비인간적조건들의 조성 및 유지

5.85 히로히또, 도죠 히데끼, 미나미 지로, 이따가끼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끼찌, 오까무라 야스지, 마쯔야마 유조는 왜왕, 총리대신, 륙군대신, 사령관 등의 직무에서 일본의 정치지도자들과 군사령관들, 조선총독부와 협력하여 일본군《위안소》체계를 위임하고 허가하고 용인하였으며 《위안소》들과 기

타 성노예시설들을 제공하고 성노예들에게 강간, 노예화, 지속적인 심리적 및 육체적공격, 강제로동 및 비인간적인 학대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생활조건을 강요함으로써 우에서 지적한 행위에 참가하였다.

5.86 그들은 일본군성노예제의 한 형태를 수립함으로써 일본군과 당국, 민간업자로 하여금 조선인녀성들을 강제로 련행하여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일본군강점밑의 지역들과 군대병영들에 끌고가 《위안소》들에서 그들에 대한 성노예생활을 강요하도록 하였다.

5.87 일본군성노예제는 또한 조선민족을 말살하기 위한 일본의 정책실현의 한 고리이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강간으로 하여 녀성들의 생식기가 파괴되였다.

녀성들은 성병에 시달렸고 때로는 저도 모르게 임신을 하고 그것이 알려지면 끔찍한 대가를 치르군 하였다. 조선녀성들의 처지는 전시에 될수록 많은 아이를 낳을것을 장려당한 일본인녀성들과는 근본적인 대조를 이루었다.

5.88 성노예총수는 20만명으로 추산되고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성노예들의 대부분이 일제통치밑의 조선녀성들이였다. 이와 같이 조선인성노예들에 대한 강제련행과 성적학대는 조선민족말살정책의 한 부분으로 자행되였다.

이러한 행위에 참가한것으로 하여 히로히또, 도죠 히데끼, 미나미 지로, 이따가끼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끼찌, 오까무라 야스지, 마쯔야마 유조는 법정헌장 제2조 1항(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에 지적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법정헌장 제2조 1항(박해)에 지적된 인도에 대한 죄를 저질렀다.

살해(기소사실 15, 16)

5.89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살해행위도 매우 많았다고 한다. 성노예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학대는 때로 처벌형식으로 그들을 살해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일본군은 성노예살해를 아무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성노예

들은 심지어 일본군을 따라 전선지대나 전투현장에까지 끌려다니였으므로 그들에게는 항상 안전한 지대에로의 피난의 기회보다도 죽음의 기회가 더 많았다.

련합군의 폭격이 계속되고있던 당시 성노예들은 일본군의 강요에 못이겨 방어진지도 차지하는 한편 그들의 성적요구도 들어주어야 하였다. 일본군은 성노예들을 전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았다. 일본군모두가 조선인성노예들을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전쟁소비물자처럼 취급하였다.

5.90 매독과 같은 성병에 감염되여 많은 성노예들이 생명을 잃었고 또 일부는 말라리아와 결핵으로 죽었다.

5.91《위안소》에서의 강간행위와 한심한 노예적취급에 못이겨 많은 성노예들이 우에서 언급한것처럼 자살을 시도하였다.

김복동도 광동위안소에 도착한 첫날 자살을 시도하였다. 군의가 먼저 와서 성병검사를 진행하였다. 김복동은 숨을 곳을 찾아 뒤뜰안으로 뛰쳐나갔다. 그러자 군의는 뒤쫓아와 그의 가슴팍을 내리치고 심하게 구타하였다. 피가 흐르면서 심한 아픔을 느꼈다. 다음날 그는 다른 2명의 처녀들과 함께 자살을 결심하였다. 그들은 중국인청소부에게 독약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중국인은 그들에게 독약대신 중국차를 가져다주었다. 그후에도 자살할 결심을 버리지 않고 여러 기회를 노렸다.

5.92 정송명은 먄마의 메크테라《위안소》에서 일본군병사들에 의해 강간을 당한 후 자살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는 강기슭에 가서 바께쯔를 목에 걸고 물속으로 뛰여들었으나 다른 성노예들에 의하여 구원되였다.

5.93 리경생이 16살에 임신하였을 때 일본인이 검으로 그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꺼내 탕을 쳐서 강에 던져버렸다. 그놈은 또한 자궁을 꺼내서《이것은 네가 다시는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것이다.》고 말하였다. 김영숙(1924년생)이 아이를 낳았을 때 일본인이 그 아이를 짓밟아죽이였다.

5.94 성노예들이 임신을 하면 그에 대한《벌》을 주군 하였다.

황금주(1922년생)도 그것을 경험하였는바 자신이 임신하였다는것을 모르는 상태에서《606호》주사를 맞았는데 몸이 붓고

아래에 피가 흐르면서 랭기를 느꼈다. 그다음 군대병원으로 후송되여 자궁을 드러냈다. 이와 같은 방법이 서너번 반복됨으로써 그이후의 임신은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였다. 유아살해의 경우도 많다.

5.95 히로히또, 도죠 히데끼, 미나미 지로, 이따가끼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끼찌, 오까무라 야스지, 마쯔야마 유조는 성노예살해를 계획, 추동, 지시, 선동하였거나 이러한 행위에 참가하였다.

이러한 행위에 참가한것으로 하여 히로히또, 도죠 히데끼, 미나미 지로, 이따가끼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끼찌, 오까무라 야스지, 마쯔야마 유조는 법정헌장 제2조 1항(고의적살인 살해)에 지적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법정헌장 제2조 1항(살인)에 지적된 인도에 대한 죄를 저질렀다.

기타 비인간적인 행위들(기소사실 17, 18)

5.96 일본군은 전쟁 전기간 전문적인 성병방지목적으로 조선인성노예들에게 《606호》로 알려진 약을 정상적으로 주사하였다. 이것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성노예들의 산아기능을 거의나 마비시켰다.

5.97 김군자는 매독에 걸려 《606호》주사를 3일동안 맞았다. 그는 한번 임신하였으나 류산하였다.

5.98 일본군병사들은 아편, 모르핀과 기타 다른 흥분제를 사용하였다.

5.99 우에서 언급된 행위들은 모두 비인간적인 행위에 속한다.

5.100 히로히또, 도죠 히데끼, 미나미 지로, 이따가끼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끼찌, 오까무라 야스지, 마쯔야마 유조는 성노예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행위를 계획, 추동, 명령, 방조, 선동하였거나 이러한 행위에 직접 참가하였다.

이러한 행위에 참가한것으로 하여 히로히또, 도죠 히데끼, 미나미 지로, 이따가끼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끼찌, 오까무라 야스지, 마쯔야마 유조는 법정헌장 제2조 1항(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대우와 강제불임)에 지적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또

한 법정헌장 제2조 1항(비인간적인 대우)에 지적된 인도에 대한 죄를 저질렀다.

전쟁패망이후 감행된 범죄(기소사실 19, 20)

5.101 패망후 일본은 수많은 조선인성노예들을 아무런 생존수단도 없이 전장에 내버리고 저희들끼리 도망쳤다.

이들중 많은 녀성들이 전쟁의 혼란속에서 죽었고 또 일부는 련합군에 포로되였다. 또 일부는 걸어서 고향에 돌아왔다.

다른 나머지 녀성들은 낯설은 이국땅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며 본국으로 송환되기를 애타게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5.102 김군자는 1943년 훈춘에서 옮겨간 후 1년 6개월동안 있은 고까시《위안소》에서 해방을 맞이하였다. 그 지역은 고가 류따로사령관이 이끈 관동군 127사단의 통제밑에 있었다.

《위안소》경영자는 그에게 단 한푼의 돈도 주지 않으면서 성노예들에게 가고싶으면 가라고 하였다. 7명의 성노예들은 2주일동안 걸어서 백두산에 도착하였다. 그후 걸어서 때로는 차도 얻어타면서 1달 8일만에야 서울 북쪽에 위치하고있는 철원에 도착하였다.

5.103 정송명 역시 메크테라《위안소》에서 해방을 맞이하였다. 전쟁이 끝나가고있던 어느날 저녁 일본군은 먹을것을 전혀 남기지 않고 성노예들 몰래 도망쳐버렸다. 그를 비롯한 19명의 조선인성노예처녀들은 풀과 잎사귀로 끼니를 에우며 수림속을 헤매다가 한달후에야 목적지에 가닿았다. 그때로부터 6개월이 지난 1947년에야 배를 타고 고향에 돌아갈수 있었다.

5.104 일본군은 성노예들을 낯설은 타향에 그냥 버리는데만 그친것이 아니라 수만에 달하는 그들을 꺼리낌없이 집단살해하였다. 괌도, 팔라우, 트럭 등 태평양상의 섬들과 련합세력과 대항한 전선지대들에서 감행된 대중학살과 관련한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다.

중국의 텅충에 주둔하고있던 일본군은 저들의 패망을 예측하고 성노예대학살을 자행하였다.

오끼나와에 있던 조선인성노예들은 련합군의 맹렬한 폭격으로 이미 로출되였던 수비대와 함께 있을것을 강요당하였다. 오끼나와

의 섬들에서 살아남은 성노예는 거의나 없다.

5.105 이러한 살해의 목적은 일본정부와 군부가 특히 성노예들에게 감행한 범죄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없애버리자는데 있었다.

5.106 1945년 8월 15일 이찌가야다이에서 있은 륙군련락회의에서는 주요비밀문건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라는 륙군대신의 구두명령이 하달되였다.

5.107 히로히또, 도죠 히데끼, 미나미 지로, 이따가끼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끼찌, 오까무라 야스지, 마쯔야마 유조는 성노예들에 대한 살인, 살해, 집단학살행위들을 계획, 추동, 명령, 협조, 선동하였거나 이러한 행위에 참가하였다.

이러한 행위에 참가한것으로 하여 히로히또, 도죠 히데끼, 미나미 지로, 이따가끼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끼찌, 오까무라 야스지, 마쯔야마 유조는 법정헌장 제2조 1항(고의적인 살해, 살인, 집단학살)에 지적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법정헌장 제2조 1항(살인, 살해, 집단학살, 박해)에 지적된 인도에 대한 죄를 저질렀다.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의 피해상황과 고통

6.1 일본군성노예제는 성노예들중에서도 조선인성노예들에게 보다 극심한 육체적, 생식적피해와 질병을 가져다주었다. 임신중절과 수많은 일본병사들의 체계적인 강간으로 초래된 성병으로 하여 많은 녀성피해자들이 임신을 할수 없게 되였다.

지어는 임신부들까지도 성병방지를 위한 《606호》주사를 맞았으며 비소에서 추출한 이러한 약물사용으로 인하여 성노예들에게서는 부종, 급격한 구역감, 배아픔, 근육의 경련, 피설사, 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출혈을 하는 임신부도 많았다. 심한 고문의 후과로 많은 녀성들이 오늘까지도 만성적인 머리아픔, 소화장애, 수면장애, 불면증, 심계항진과 같은 증상으로 하여 고통을 받고있다.

6.2 일본군성노예제의 피해생존자들은 피해후과로 인한 심한 심리적고통을 겪고있다.

즉 언어장애, 식별장애,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의 상실,

진통제와 기타 신약에 대한 지나친 의존, 담배, 알콜중독, 계속되는 악몽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있다. 이러한 장애는 생존자들의 일반적인 적응능력, 감정상태, 사회관계를 맺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심각한 우울증, 비관, 불안, 생에 대한 의욕상실 등의 증상들도 체험하고있다. 또한 편두통, 고혈압, 류마치스와 같은 증상도 가지고있다.

일본의 책임회피행위는 생존자들에게 더한 고통과 피해를 가져다주고있다.

6.3 강제적인 성노예생활로 인한 후과와 그 피해과정은 일본군성노예제생존자들에게 영원히 계속되는 피해와 고통을 가져다주었다.

가정파괴가 그 실례의 하나이다. 강제적인 련행에 의하여 녀성들은 하는수없이 고향과 집을 떠나 낯설은 이역땅에서 살지 않으면 안되였다. 많은 피해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갈수 있는 아무런 수단도 없이 버림받은채로 이역땅에 남아있게 되였다. 설사 고향에 돌아간 일부 녀성들도 가족모두가 징병이나 징용으로 끌려갔으므로 자기의 집과 가족들을 찾을수가 없었다. 그들은 뿌리뽑힌 집 잃은 고아였다.

가족성원중의 한명이 성노예인 경우 그 가정은 불명예와 수치를 면할수 없었다. 귀국한 많은 녀성들은 저들의 과거생활로 하여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가봐 두려워 가족도 피해다녔다. 그들은 이렇게 할 때만이 자기 가족을 수치와 불명예로부터 해방할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제2부 국가책임

일본국가에 대한 법적용

1. 일본군성노예제에 관한 녀성국제전범법정 북남검사단은 법정헌장 제11조가 부여한 권한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제출한다.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북남검사단의 법적용

Ⅰ. 사실진술

2. 국가는 자기의 기관들에 의한 그 어떤 국제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국제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 일본의 국제적책임은 왜왕, 총리대신, 내각의 기타 대신들,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의 관리들과 경찰관들, 륙군대장들을 비롯한 일본제국군대의 장교들과 군인, 군속들이 일본군성노예제의 수립 및 유지와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행위로부터 산생된다.

3. 더우기 성노예를 모집하고 《위안소》를 관리하는 사업에 가담한 민간인들의 행동도 사실상 국가를 대표하여 한것이므로 역시 일본국가가 책임지게 된다. 일본정부와 군부는 이 모든 행위들을 총괄적으로 장악통제하였다.

4. 법정에 제출될 사실자료들과 증거자료들을 놓고보면 일본정부와 군부가 늦어도 1937년부터 《위안소》의 수립과 유지 그외에도 성노예강제모집과 수송에 가담하였다는것을 부정할수 없다.

국가적 및 제도적인 후원속에서 이 녀성들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와 감독이 실시되였다.

일본정부는 오래동안 이에 대하여 부인하여오다가 마침내에는 구일본제국이 일본군성노예제에 가담하였다는것을 인정하고야말았다. 따라서 일본국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 당시에 존재한 국제법을 놓고보아도 이러한 행위와 묵인은 국제적의무를 위반한것이므로 일본국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일본군성노예제가 수립되고 유지되던 당시에도 적용할수 있는 협약과 관습에 관한 국제법규범들이 존재하였던것만큼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 발전되여온 국제법을 소급적용할수 없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는 더 론의할 여지조차 없다.

6. 일본은 피해자들로부터 강력한 항의가 계속되고 민간사회가 그와 관련한 사실자료들을 련속 공개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성노예제를 수립하고 유지해온 사실을 계속 부정하여왔다.

일본정부는 1993년 8월 4일에야 비로소 제2차 세계대전시기

《위안소》로 불리운 강간수용소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직접 관여하였으며 성노예들이 강제로 모집되였다는데 대하여 인정하였다.

7. 일본정부는 이러저러한 기회에 저들의 군성노예제범죄에 대하여 《사과》한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사과》는 법적책임을 전제로 한것이 아니였다. 일본정부는 오늘날까지도 《위안소》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법적책임을 부인하고있다.

Ⅱ. 일본정부의 책임회피

8. 일본은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법적책임을 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주장하고있다.

— 최근에 발전 또는 진보한 국제형사법을 소급적용할수 없다.

— 노예범죄가 《위안소》체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있으며 노예제금지는 제2차 세계대전당시 적용가능했던 국제법상 관습규범으로 확립되여있지 않았다.

— 무장충돌시의 강간행위는 1907년 헤그협정 4협약에 밝혀진 규칙이나 제2차 세계대전당시에 효력을 가진 적용가능한 국제관습법규범에도 금지되여있지 않았다.

— 전쟁법은 일본이 교전국의 국민에게 저지른 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조선인민들에 대한 일본군의 그 어떤 행위도 법적구속을 받을수 없다.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당시 조선은 일본에게 합병되여있었기때문이다.

9. 따라서 일본정부는 인도주의적견지에서의 위로금이나 정착금 등에 대한 지급을 제외하고 저들에게 그 어떤 배상책임도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본정부는 성노예와 관련한 그 어떤 민사 및 형사사건도 이제는 시효규정의 적용으로 인한 시간적장애때문에 더이상 제기할수 없다고 주장하고있다.

10. 또한 일본정부는 시종일관하게 전후배상문제는 《쌘프런씨스코강화조약》의 체결과 그의 리행 그리고 그에 준하여 체결된 배상합의문들과 평화조약에 의하여 완전히 해결되였다고 주장하고있다.

11. 이러한 립장에서 일본정부는 《녀성들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설치하였다. 특히 일본정부는 성노예들을 《존중》한

다고 하면서 《녀성들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통하여 자국민들에게서 긁어모은 《위로금》을 그들에게 나누어줌으로써 저들의 《사죄》와 《배상》을 굼때려 하고있다.

Ⅲ. 일본군성노예제와 관련한 일본의 책임에 대한 법적근거

12. 일본군성노예제가 수립되고 유지되던 시기에 이미 관습법과 관련한 국제법들이 존재하고있었으므로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 발전된 국제법을 소급적용할수 없다고 하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는 더이상 론의할 여지조차 없다.

국제인도법의 위반행위

13. 일본이 1911년에 비준한 1907년 헤그제4협약과 륙전법 및 관습법의 조항들은 일본정부와 군부가 조선인성노예들에게 저지른 범죄행위에 적용된다.

본 기소장의 제1부에 지적되여있는바와 같이 조선은 1905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일본의 군사적강점밑에 있었다.

물론 조선이 1899년에 헤그협약에 가담하였으나 일본의 통치밑에서 상기 협약의 준수는 불가능하였다. 헤그협약의 조항들은 뉴른베르그 국제군사재판과 극동군사재판에서 확인된바와 같이 적어도 1939년까지는 국제관습법으로 성립되여있었다.

14. 국제륙전관습법은 강간, 노예, 란폭한 살해, 살인, 대중학살, 고의적인 고통주기, 손해, 불법적인 감금, 유괴, 국외추방, 개별적사람들의 존엄무시, 민간인들에 대한 비인간적이며 야만적인 행위를 철저히 금지한다.

15. 일본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전쟁범죄를 기소하고 처벌하여야 할 국제법적의무를 지니고있다.

노예제와 노예무역에 관한 국제법위반

16. 일본은 조선녀성들을 군성노예로 강제련행하고 그들에게 온갖 고통과 피해를 준것으로 하여 노예제철페와 노예무역의 금지를 규정한 당시 국제관습적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17. 1926년 노예제협약이 내린 노예제에 관한 정의가 널리 인정되고있다.

본 협약 제1조에서는 노예제를 《소유권에 따르는 일부 또는 전부의 권한이 행사되는 개인의 지위나 상태》로 정의하고 노예무역에는 《사람을 노예로 삼으려는 의도밑에 진행하는 포획, 취득 또는 처분과 관련된 모든 행위, 노예를 매매 또는 교환할 목적으로 하는 노예의 취득과 관련된 모든 행위, 매매 또는 교환할 목적으로 취득한 노예의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 모든 처분행위와 일반적으로 노예를 무역 또는 수송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있다.

18. 인간의 존엄과 자유에 관한 가장 오래된 인권규범의 하나로 정착된 노예제와 노예무역의 금지는 일본군성노예제가 실시되던 당시에 이미 국제관습법과 강행법규의 지위에 있었다. 또한 노예제는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에 벌써 전시나 평화시기의 국제범죄로 인정되고있었다.

19. 일본은 1872년초에 한 노예상인을 처벌한 례가 있으며 당시 일본형법도 랍치, 유인죄를 처벌하는 등 노예제와 관련한 국내립법을 부분적이나마 실시하였다. 따라서 일본이 1926년 노예제협약의 가입국은 아니지만 노예제금지와 관련한 국제관습법에 구속되는것은 명백하며 그와 반대되는 일본정부의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20. 피해자들이 법정에 제출한 증언들과 자료들을 놓고보면 일본은 명백히 조선녀성들을 노예처럼 취급하였다. 그들은 군《위안소》들을 설치하고 조선녀성들을 기만, 유괴의 방법으로 랍치하여 성노예로 만들었으며 그들을 인간으로가 아니라 노예처럼 취급하면서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강간하였다. 당시 조선녀성들의 인권, 생에 대한 권리는 완전히 무시되였다.

국가가 직접 성노예제도를 내오고 유지한 전대미문의 전례를 통하여 일본은 노예제금지와 관련한 국제법규범을 완전히 위반하였다. 더우기 일본정부와 군부가 강제련행된 성노예들을 전쟁마당과 《위안소》들에 수송하는데 직접 가담하였다는것은 일본국가

자체가 노예무역을 한것으로 되며 이를 금지하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것으로 된다.

부녀 및 아동매매금지조약에 관한 국제법위반

21. 일본은 녀성 및 어린이매매와 관련한 다음의 국제협약들을 위반하고있다.

(1) 1904년 3월 18일 백인노예매매금지에 관한 국제협정

(2) 1910년 5월 4일 백인노예매매금지에 관한 국제협약

(3) 부녀 및 아동매매금지조약

일본은 1925년 12월 21일에 이 협약들을 인정하였다. 최소한 성숙기에 이르지 못한 나이의 녀성들을 강제적방법으로 유혹, 주선, 유괴하여 성적행위를 감행하는것은 1930년대 국제법의 취급대상으로 되여왔다.

22. 일본은 일본군《위안소》에 필요한 조선인녀성들을 모집함에 있어서 국제법이 금지하고있는 방법에 매여달리였다.

강제로동에 관한 국제법위반

23. 일본군의 성노예제는 일본정부가 1932년 11월 21일에 비준하고 인정한 강제 또는 의무로동과 관련한 국제로동기구협약 제29호에 대한 위반이다.

24. 협약 제2조에는 《처벌과 위협공갈의 방법으로 강요되였거나 자원성이 부여되지 않은 모든 로동이나 봉사》를 강제로동으로 규정하고있으며 특히 협약 제11조에서는 녀성에 대한 강제로동을 금지하고있다.

25. 국제로동기구전문가위원회가 주장한바와 같이 일본의 성노예제는 강제로동이라고밖에 달리 될수 없다.

일본정부는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한 전문가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있다.

국제형사법 위반

26. 본 기소장 제1부에서 기소된 범인들과 관련하여 일본은 인도에 대한 죄를 금지할데 대한 국제형사법을 위반하고있다.

27. 극동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서는《전쟁전 또는 전쟁기간 모든 민간인들에 대해 감행된 살인, 잔혹행위, 노예적혹사, 강제이주 및 그밖의 비인도적인 행위 또는 범행시 국가의 국내법에 대한 위반여부를 불문하고 본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의 실행을 위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감행된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리유에 따른 박해행위》로 규정하고있다. 이 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이미 국제관습법의 한부분으로 성립되여있었으며 일본은 1951년 강화조약에서 자기의 의무를 인정하였다.

28. 법정헌장 제2조 1, 2항에 따라 일본의 성노예제는 전쟁범죄, 인도에 관한 죄로 된다.

29. 일본은 개인들이 저지른 인도에 대한 죄에 체계적으로 개입한 책임이 있다.

일본은 인도에 대한 죄를 저지른자들을 기소처벌할 국제법상 의무를 지니고있다.

계속되고있는 일본의 성노예제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유린

30. 일본은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만듦으로써 그들의 기본인권을 유린하였다.

기본인권에는 인간의 존엄, 생활, 육체적안전, 운동, 언론 등의 권리가 포함된다. 일본은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담보하여야 할 자기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있다.

31. 일본은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에게 완전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리행하지 않고있다.

32. 일본은 오늘까지도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주지 않음으로써 국제인권법의 근본원칙을 계속 위반하고있다.

1965년 남조선－일본 청구권협정문제

33. 남조선과 일본사이의 재산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은 일본군성노예제와 관련한 일본의 국제법적책임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34. 이 협정은 단지 쌍방사이의 재산청구문제와 상업관계에서 제기되는 의견대립을 해결하는것을 목적한것이다.

여기에 성노예문제와 관련한 청구가 언급된 조항은 전혀 없다.

35. 조약은 나라들간의 문제를 해결하는것으로써 이 협정은 일본군성노예제에 의해 산생되는 일본정부에 대한 개인들의 피해배상청구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36. 국가는 개인들의 피해배상요구를 포기할수 없다.

세계인권선언 제8조에도 명기된바와 같이 《효과적인 대책》을 요구할 권리는 국제법적으로 담보되여있다.

판결과 관련한 요구

37. 현 일본정부는 구일본정부의 계승정권으로서 구일본제국과 군부가 실시한 성노예제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8. 따라서 북남검사단은 이러한 적용을 수정보충할 권리를 가지면서 그리고 재판에 제출된 해당한 증거자료, 증언, 법적주장에 준하여 법정이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선언할것을 요구한다.

— 일본은 적어도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설치한 수많은 일본군《위안소》들에 조선녀성들을 강제적으로 련행, 이송하여 성노예행위를 강요함으로써 그리고 일본군병사들이 성노예들에 대한 헤아릴수 없는 범죄를 감행하도록 지시, 고무, 후원함으로써 1907년 헤그륙전법을 포함한 상용국제전쟁법들과 국제인도주의법의 근본원칙들에 의하여 규정된 자기의 법률적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 범죄에는 제1부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성노예제, 랍치, 비법적인 구류, 강제이송, 강간, 고문, 절단, 고의적인 고통주기, 강제불임, 사고로 인한 엄청난 죽음, 살해, 살인, 대중학살, 비인간적인 잔인한 대우, 개인의 존엄에 대한 폭행과 같은 행위들이 속한다.

— 일본은 노예제도, 노예무역금지에 관한 국제법의 전통적 원칙을 유린하였다.

— 일본은 녀성매매금지와 관련한 일련의 국제협약과 국제관습법들을 위반하였다.

— 일본은 강제로동과 관련한 국제로동기구의 협약에 따라 지니게 되는 법적의무를 위반하였다.

— 일본은 국제법상 전쟁범죄와 인도에 대한 죄로 되는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

북남조선검사단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일본은 일본군성노예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규명하고 사실을 그대로 공개하여야 한다.

일본정부는 성노예총수와 나라별 희생자수, 《위안소》가 설치된 지역과 《위안소》이름, 관리자이름, 성노예취급정형을 포함한 진상을 밝혀야 하며 일본군성노예제와 관련한 모든 문건을 공개하고 조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 일본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법적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일본정부는 군성노예피해자들에게 들씌운 육체적 및 정신적피해와 고통에 대하여 진심으로 공식사죄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죄는 정부의 개별적인물이 이러저러한 기회에 한두마디하는 발언이 아니라 국회결의나 정부성명과 같은 서면형식으로 표시되여야 한다.

— 일본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는것은 공인된 국제법적요구이며 국제적실무실천이다.

일본은 가해국으로서 《녀성들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과 같이 국민들로부터 모은 돈으로가 아니라 국고금으로 충분한 국가적배상을 하여야 한다. 배상은 피해자들뿐아니라 그 유가족들에게도 하여야 한다.

— 일본정부는 조선인성노예들의 존엄과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책임적이며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일본은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이 겪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일본정부는 그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키고 피해자들의 나라를 방문하며 생존자들을 귀환시키고 희생자들의 유골을 돌려보내는것과 같은 실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일본은 일본군성노예제와 관련한 국제적범죄를 기소하기 위한 필요한 대책을 취할 의무가 있다.

일본정부는 현행법제밑에서 상기범죄에 공모하거나 계획하고

명령한자, 고무추동한자, 감행한자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 가담한 자들을 처벌할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법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ㅡ 일본은 교양대책을 포함하여 성노예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일본은 현재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력사교과서수정놀음을 즉시 걷어치워야 하며 모든 력사교과서들에 일본군성노예행위의 진실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ㅡ 일본은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국제법에 맞는 실천조치를 전면적으로 취해야 할 자기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였고 아직도 위반하고있다.

2000년 12월 7일 도꾜

북남조선검사단

일제의 일본군성노예범죄와 조선인강제 련행진상규명문헌자료집

집필 황호남, 손철수, 김춘실
심사 후보원사 교수 박사 조희승,
리훈혁, 리명훈
편집 은경옥 장정 김기성
편성 주옥별 교정 오은별

낸 곳 사 회 과 학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6(2017)년 5월 25일
발 행 주체106(2017)년 5월 30일

ㄱ－75080

ISBN 978-9946-30-400-7